

2020  
통권 제13호

KOREAN NOTARIES ASSOCIATION



# 공증과 신뢰

공증 사무직원 연수교육 자료

국제회의 발표문

대한공증인협회 제·개정 회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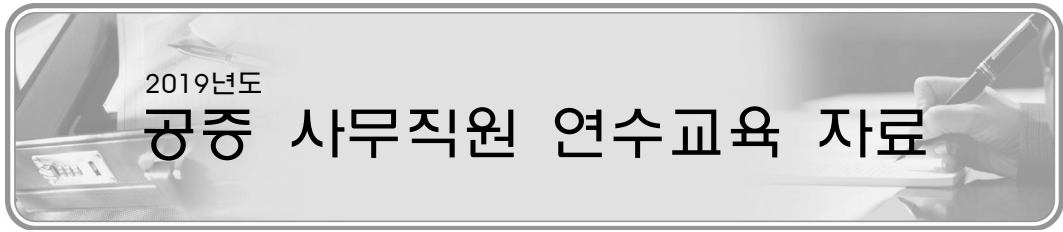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 2020 공증과신뢰 (통권 제13호)

공증사무직원 연수교육자료	●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내용 해설 / 박중욱	5
국 제 회 의 발 표 문	●	2019년도 UINL 제9차 CAAs 정기회의 협회 발표문	69
대한공증인협회 제·개정 회규	●	제정 회규	85
		개정 회규	88
대한공증인협회 주 요 회 무	●	I. 공증법령 제·개정 의견 제시	93
		II. 공증업무 질의·회신	119
		III. 공증업무지침 제정 등 법무부 건의	163
		IV. 공증업무 지침·지시 등 회원 안내	202
		V. 기타 주요 활동	211
		VI. 2019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222
		VII. 2019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230





##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내용 해설

강사 :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 박 중 옥

### I.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과정 설명

#### 가 공증실무상시자문단

##### 1. 운영 경위

(가) 종래 공증 업무 처리 중 발생하는 의문에 대하여 즉시 답을 얻고자 할 때, 실무 지침서인 대한공증인협회에서 발간한 「공증실무」를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공증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법무부 또는 협회에 서면 질의하여 해결하여 왔으나, 전자의 경우는 잘못된 정보가 전파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나)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 사무소에서 공증 업무 처리 중 생기는 의문사항을 협회가 지정한 공증상담위원으로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2017.7.1.부터 ‘공증실무상시자문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상담 신청 및 자문 방법

(가) 원칙적으로 협회에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동의한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의 공증대표번호사가 ‘공증사무소 명칭, 상담신청 공증인 또는 공증대표번호사 성명, 공증실 직통 전화번호, 상담 요하는 개괄적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적어서 매 요일별로 지정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송하여 신청합니다.

\* 매 요일별로 지정된 상담시간과 접수용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9. 현재 기준).

상담 요일	월, 화	수, 목	금
상담 시간	10:00 ~ 17:00	10:00 ~ 17:00	10:00 ~ 16:00
접수용 전화번호	010-3101-3476	010-9303-3476	010-9003-3476

(나) 상담신청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요일별 지정 공증상담위원은 원칙적으로 문자메시지 접수 후 20분 이내에 상담신청자가 적어보낸 공증실 직통 유선 전화번호로 상담전화를 걸어서 상담신청자로부터 상담 취지를 구체적으로 청취한 후, 이에 관하여 곧바로 자문을 실시합니다. 단, 이 경우 공증실 담당직원에게 질의 내용을 대신 설명하게 하고 대신 답변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공증상담위원이 즉시 자문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자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상담을 종료한 후 3일 이내에 공증상담위원 간의 논의를 거쳐 상담신청자에게 다시 자문전화를 걸어서 설명합니다. 다만, 공증상담위원 간의 논의 후에도 답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하여는 상담신청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회에 공식 서면 질의서를 접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1)

1) 협회에 접수된 서면질의는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교육위원회의 논의 후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상담신청자에게 답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나 공증실무포럼 등 밴드를 활용한 검증과 결과물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담한 내용을 당해 공증상담위원이 매월 정리하여 협회로 보내면 협회에서 하나씩 공증실무포럼<sup>2)</sup> 밴드에 올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합의된 결론이 나온 것 중에서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법무부 법무과 검사 등과 공증실무제요 편찬 작업을 맡고 있는 핵심 공증실무진이 함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밴드에 올려 다시 검증을 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에 대한공증인협회 밴드에 올려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 다음의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내용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한공증인협회 밴드에 오른 공증실무상담 내용과 결과물 중 선별한 일부를 각 공증사무소 실무진이 공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유익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2) 협회 상임이사회 구성원들과 법제교육위원회, 국제위원회 위원들이 회원입니다.

## II.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내용<sup>3)</sup>

### 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 관련

#### 1. (183)<sup>4)</sup>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합산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시 이자제한법 저촉 여부?

##### □ 질의내용

원금이 100원, 그 동안 발생한 변제기까지의 이자가 10원, 변제기 이후의 연체 이자가 24원일 경우, 위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금 134원을 다시 원금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자제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 □ 답변내용

##### (1) 현행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동법 시행령(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11.7. 개정, 2018.2.2. 시행>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7.25.>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3) 지난해에 정리하여 강의한 상담내용 뒷부분부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4) 양 괄호로 된 번호는 대한공증인협회 밴드에 올라와 있는 ‘공증실무 Q&A’ 번호 그대로입니다(이하 같음).



현행 대부업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8.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동법 제8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 (2) 일반적인 사인 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체이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되므로, 이자나 위 이자제한법 제4조의 간주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그 연체이자율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제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되어 법원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을 것임.

반면 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고,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체이자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됨.

따라서 현행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 또한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의 경우의 연체이자 역시 위와 같이 간주이자에 해당되므로 대부업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함.

- (3) 일반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사인 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함.

① 기존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다시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여기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경우

② 기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다시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여기에 이자 및(또는) 지연손해금을 다시 가산하는 경우

- (4) 일반적으로 종전의 채무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 따라서 종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채무 및 이자채무

등을 불이행하여 그 합계액을 차용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함. 다만,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명목 여하를 떠나 이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특별히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 (196)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시 보증인보호법상의 보증인이 아닌 경우?

### □ 질의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증인보호법상의 보증인이 아닌 경우, 보증인과 관련된 보증최고액, 보증기간을 공정증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 답변내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만 함)상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동법 제4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봄(동법 제7조제1항).

이에 따라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제8조에도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채무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보증인보호법상의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함(동법 제2조제1호).

-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 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보증인보호법상의 보증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증최고액과 보증기간을 기재 할 필요가 없음. 다만, 보증인보호법상의 보증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보증최고액과 보증기간을 약정한 경우(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포함)에는 공정증서에 보증최고액과 보증기간을 기재하여도 무방함.

**3. (197) 편무계약인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내용**

편무계약인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1) 쌍무계약이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편무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지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함. 이자부(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지만, 무이자부(무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임.
- (2) 그러나 공증 수수료는 계약이 쌍무계약인지 편무계약인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 촉탁에 의하는지 일방 촉탁에 의하는지와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에 따라 산정되는 것임.  
즉,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하고(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6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함(동 규칙 제5조).

여기서의 급부의 가액이란 그 급부 자체의 가액을 따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유상인 급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상인 급부라도 상관없음. 쌍무계약이냐의 여부는 공증인 수수료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음. 따라서 쌍무계약인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대가관계를 이루는 급부에 해당하지만 지급하는 이자는 부대목적인 과실에 해당할 뿐이어서 목적가액에 더하지 아니하는 반면 편무계약인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서로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똑같은 가액의 급부가 두 개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급부의 가액을 합산하여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공증실무 195면, 규칙 제12조 참조).

- (3) 따라서 편무계약인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에도 그 수수료는 쌍무계약인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당사자 쌍방의 급부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여 산정하면 됨.

#### 4. (213)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시 외국통화(달러)로 금액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질의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시 외국통화(달러)로 금액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 □ 답변내용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함(민법 제377조제1항, 제2항).

또한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음(민법 제378조).

따라서 당사자가 외화(달러)채권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증인은 외국통화(달러)로 금액을 표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5. (232) 채권자가 대부업자인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채권자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만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채권자가 대부업자인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채권자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받아야만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3조는 “집행증서 상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채무자의 의사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대리는 일반적으로 허용됨.

다만,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의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채무에 관한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침 제4조 각 호의 자(1. 대부업자등 2. 대부업자등의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대부업자 등의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여를 한 경우 그 대리인, 4. 자격 없이 수수료를 받고 업으로 집행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하는 사람)가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여야 하며(지침 제4조), 공증인은 제4조의 사유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함(지침 제5조). 또한 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을 면담하고 그 일시 및 소요시간, 촉탁대리인과 촉탁인의 관계, 촉탁대리인이 촉탁인을 대리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이를 공증촉탁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함(지침 제7조).

즉, 공증인은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을 면담하여 촉탁대리인과 촉탁인의 관계 및 촉탁대리인이 촉탁인을 대리하게 된 경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히 지침 제4조의 사유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필요에 따라서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지침 제4조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촉탁을 거절하면 될 것임. 따라서 공증인이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침 제4조의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촉탁대리인과 촉탁인의 관계 등에 대한 소명자료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이 전혀 무관하다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야만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6. (244) 물품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25%로 약정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물품대금에 관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지연손해금을 25%로 약정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 24%는 이자에 관한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법률적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

따라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도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다만,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sup>5)</sup> 지연손해금도 이자로 간주하므로(대부업법 제 8조제2항) 24%를 초과할 수 없음.

**7. (259) 어머니 명의로 대부업등록을 한 사람의 가족들이 자신들 명의로 집행증서 작성을 반복하여 촉탁하는 경우?**

**□ 질의내용**

어머니 명의로 대부업등록을 한 사람의 가족들이 자신들 명의로 집행증서 작성을 반복하여 촉탁하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촉탁을 거절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음.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에 대하여는 대부업법 제11조제1항에 특별규정이 있음 (2018.12.31.까지만 효력이 있음. 부칙 제2조제1항).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집행증서를 반복으로 촉탁하는 것은 대부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또한 집행증서 작성 사무지침에 따르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전대부계약(이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반복적으

---

5) 질의내용처럼 물품대금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울 것임.

로 촉탁하는 자'도 동 지침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자에 해당하는 자가 쌍방 대리 방식이나 자기계약 방식으로 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 공증인은 촉탁을 거절하여야 함.

따라서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증서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집행증서 작성 사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265) 조건부 지급 약정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여부?**

**□ 질의내용**

타업체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촉탁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금액을 달러로 기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조건부 지급약정의 경우에도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는 있음.

그러나 집행문 부여의 단계에서는 조건성취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음.

만일 서면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함. 타인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런 경우라면 가급적 약속어음공증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금액을 달러로 기재할 수도 있음.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대상청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집행할 수 있음.

**9. (290)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된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당사자가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월 200만 원)보다 증액된 양육비(월 300만 원)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된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됨(민법 제836조의2제4항,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그러나 당사자는 협의이혼 후 위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양육비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증액된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10. (293) 양육비 채무의 경우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으로도 가능한지?**

□ **질의내용**

양육비 채무의 경우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으로도 가능한지?

□ **답변내용**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계약 중 양육비에 대해서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공증인은 그 양육비 채무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함.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관련

11. (185) 채권자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분실하여, 제권판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해당 공증사무소의 발행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처리방법?

□ 질의내용

채권자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분실하여, 제권판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해당 공증사무소의 발행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답변내용

채권자는 촉탁인으로서 증서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법 제50조제1항), 채권자에게 등본 발급을 해주어 그 등본으로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약속 어음 공정증서를 채권자에게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케 하도록 함.

12. (206) 회사가 영업 활동을 안 해서 재무제표가 없다는 경우 어음공증 가부?

□ 질의내용

회사가 영업 활동을 안 해서 재무제표가 없다는 경우 어음공증 가부?

□ 답변내용

법인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함.

법인이 설립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제표가 없다면 설립당시의 자본금 총액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공증인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사 설립된 지 오래되었으나 단지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서 재무제표가 없다는 이유만 대고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어음 공증이 불가하다고 봄.

**13. (237) 약속어음 채도정보 분실 시에도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내용**

약속어음 채도정보 분실 시에도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보가 강제집행에 사용된 상태에서 다시 발급한 정보를 분실한 경우까지 제권판결이 필요한 것은 아님.

약속어음 원본이 붙어 있는 집행증서 정보가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제3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14. (238) 유한회사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처럼 제한되는지?**

**□ 질의내용**

유한회사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처럼 제한되는지?

**□ 답변내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함(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위 조항의 대상은 법인사업자이므로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도 적용됨.

**15. (239)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주식회사인 경우 발행인 표기 관련?**

**□ 질의내용**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주식회사로서 회사 명판을 찍었는데 명판에는 회사이름과 대표이사의 이름만 있고, 대표자격이 빠져 있음. 명판 옆에 날인된 법인도장에는 대표이사라는 표시가 있기는 함. 이러한 경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판례(1)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옆에 대표자격의 기재 없이 단지 이름만을 기재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하였다면 법인의 어음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59.8.27. 판결 4291민상287)

※ 판례(2)

법인의 명칭 뒤에 대표자의 명칭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격이 표시된 인감을 압날하는 등 대표자격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명날인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9.9.23. 판결 69다930)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글자가 표시된 도장 날인)이면 유효한 어음으로 볼 여지도 있음.6) 실무상으로는 대표이사의 표시를 보충하도록 한 다음에 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261) 약속어음 용지의 사본에 기재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도 무방한지?

□ 질의내용

약속어음 용지의 사본에 기재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도 무방한지?

□ 답변내용

어음의 발행은 법정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는 요식행위임.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서는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사본을 사용할 수도 있음.

17. (264)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수취인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6)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24626호 수표금 사건 판결에서도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그 재직기간 중 수표에 배서함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갑 주식회사, 을”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기명 옆에는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수표의 회사 명의의 배서는 을이 갑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함이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질의내용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수취인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불가함.

만일 채권자가 약속어음 발행인뿐만 아니라 수취인에 대하여도 집행권원을 얻고자 한다면 발행인과 수취인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게 할 필요가 있음.

**다 유언 공정증서 관련**

**18. (184) 유언공증 수수료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산정방법은?**

**□ 질의내용**

유언공증 수수료 산정 시 분할된 지 얼마 안 되어 개별공시지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산정방법은?

**□ 답변내용**

유언 공증의 목적물 가액 산정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목적물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실거래가 등)에 의하면 되고, 반드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또한 유언 공증의 목적물 가액 산정 시 당해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분할전 모면지 토지 등 가장 유사한 목적물에 대한 가액 산정자료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사안의 경우 분할된 토지에 대한 대출실행 시 그에 대한 은행의 감정평가자료가 있으면 그에 의하여도 됨.

**19. (219) 유언공증을 하는 인가공증인의 일반 직원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유언공증을 하는 당해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일반 직원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유언집행자에 대하여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는 결격사유 규정(민법 제1098조) 외에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음.

위 결격사유 여부는 유언집행자의 취임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 법무부는 유언 당시에 이에 대한 결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2017.9. 법무부 작성 ‘공증사무 감사 시 주요 지도사항’ 제25번 참조).

하여튼 당해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일반 직원도 위 결격사유가 없으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음.

**20. (228) 1개의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가 2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의 수 및 정보의 수?**

**□ 질의내용**

1개의 건물과 토지를 아들 2명에게 유증하는 경우 유언집행자로 1인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증자들이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하여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후자의 경우 작성하여 교부할 정보의 수는?

**□ 답변내용**

유언집행자는 1인이어도 무방하고, 수인이어도 상관이 없음.7)

각자 지분에 대하여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정보는 유언자에게 1통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

유언공정증서의 정보가 더 필요한 사유는 유언의 집행단계에서 생겨나므로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음.

굳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2통을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성은 없음.

특히 유언자가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

**21. (236) 유언 공증의 증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유언 공증의 증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함(민법 제1098조).

이와 같이 민법은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격을 별도로 요

---

7) 다만,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참조).

구하지 않음.

따라서 유언의 증인이 집행자로 지정될 수도 있음.

**22. (251) 미국 시민권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미국 시민권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에 신원조회를 하는 방법은?

**□ 답변내용**

유언집행자의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미국의 시민권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음.

유언집행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할 방법이 없음.

**23. (258) 타인 명의 부동산의 유증 여부 등?**

**□ 질의내용**

(1) 유언자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유증할 수 있는지?

(2) 수증자가 부동산을 유증을 받고 일정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유증도 가능한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한 경우도 있음.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음.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

만약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도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음(민법 제1087조제1항, 제2항).

즉, 유증의 내용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가 확정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 있어서는 사망할 때까지 취득하여 유증하려는 의사로써 타인이 소유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사망할 때까지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경우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음.

다만,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그 유증은 유효함.

예컨대 유언자가 타인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유증한다고 하면서 그 유언과 관련하여 만일 그 부동산이 유언자 사망시까지 유언자가 취득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유언한 경우에는 위 민법 제1087조 단서에 해당되나, 단순히 타인의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것만으로는 유증을 관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우므로 그 유증은 무효라고 할 것임(주석 민법, 김주수 저, 2002판 251면 내지 252면 참조).

따라서 유언자가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유증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지 여부를 명백히 확인하여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 내용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2)에 대한 답변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자기,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시키는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부담부유증이라고 함.

따라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유증받고 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증은 일종의 부담부유증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취지의 유증도 가능하다고 할 것 임.

## 24. (262)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필요 유무?

### □ 질의내용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이 반드시 필요한지?



□ 답변내용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은 수증자를 특정하고, 그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한 것임.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것은 아님.

25. (267)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권, 현금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권, 현금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유체물 등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권, 현금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

26. (268)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 질의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경기도 소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언자(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의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이는 직무집행구역안의 출장인지 아니면 직무집행구역 밖의 출장인지 여부 / 즉,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이 유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름.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함(법 제16조). 한편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집행이 가능함(법 제56조제1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서울특별시이므로, 공증인이 유언공증을 위하여 직무집행구역인 서울특별시를 벗어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유언자가 경기도 소재 병원에 입원해 있어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직무집행이므로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소지가 경기도인 유언자가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 입원해 있어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내에서의 직무집행이므로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즉, 유언자의 주소지는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과는 무관함.

**27. (284) 유언 공증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수증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등?**

**□ 질의내용**

- (1) 유언 공증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수증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 (2) 성년후견인이라고 하면서 대리촉탁하는 경우 대리권의 증명방법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유언(유증 포함)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므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허락 또는 대리가 필요 없고 법정대리인을 표시할 필요도 없음. 유언집행 단계에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문제와는 다름.

(2)에 대한 답변

성년후견인인 사실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에 증명하는 것이 원칙임. 법원의 심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판서 외에 확정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함.

**28. (292) 미성년자인 수증자의 법정대리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미성년자인 수증자의 법정대리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유언집행자에 대하여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

다는 결격사유 규정(민법 제1098조) 외에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음.  
하급심 판결에 따라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듯이, 수증자의 법정대리인 역  
시 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음.

## 라 인도집행 공정증서 관련

### 29. (285) 단기사용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차건물인도반환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 질의내용

임차건물인도반환공정증서 작성에 있어서 단기사용(3개월) 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 답변내용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에만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포함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나,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3개월이라는 일시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예컨대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을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에는 인도 또는 반환기일이 증서 작성일부터 6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임차건물인도반환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음.

**마 공정증서 작성 일반 관련**

**30. (208) 공정증서 작성 시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 질의내용**

공정증서 작성 시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 법인 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공정증서 작성 시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공증인법 제35조제2호에서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음.

다만, 실무상 대표자의 지위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있음.

‘공증실무(2013년 판)’ 제67쪽에는 ‘실무상 대표자의 지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오히려 법인의 특징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임.

**31. (274) 외국에 체류 중인 내국인의 위임장 확인 방식?**

**□ 질의내용**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내국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려고 하는 경우 위임장에 외국영사확인을 받으면 되는지?

**□ 답변내용**

위임장(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재될 필요가 있음)을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에 아포스티유 체결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그 체결국이 아닌 경우에는 재외 한국 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또 다른 방법은 외국에 체류 중인 내국인이 재외 한국 공관에서 영사관(총영사, 영사, 부영사)으로부터 위임장에 대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으면 됨(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제1항 및 제25조 등 참조).

**바 집행문 부여 등 관련**

**32. (192) 승계집행문 부여 후 송달에 따른 수수료는?**

**□ 질의내용**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조의2의 의미와 관련하여 통지나 송달 시 우편요금의 실비를 받는데 승계집행문 등의 부여 시 하는 송달은 실비 외에 수수료로 4,000원을 받는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실비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보 또는 등본이나 승계집행문이나 조건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의 경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조의2제2항에 의한 그 증서 등본 등을 송달하는 수수료로 4천 원을 받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실비 즉, 실제 들어가는 우편요금(무게에 따라 다르나 보통 약 4,500원 정도)을 별도로 받아야 함.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각 마찬가지로 적용됨.

**33. (204) 집행문 부여 시 기한의 이익상실 등 변제기 도래 소명자료 필요 없는지?**

**□ 질의내용**

집행문 부여 시 기한의 이익상실 등 변제기 도래 소명자료 필요 없는지?

**□ 답변내용**

채무자가 1회 이상 이자금 또는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등과 같은 이른바 “실권약관”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 아님.

그러나 기한의 이익 상실이 ‘타인으로부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받은 때’, ‘영업을 폐지한 때’, ‘담보물건을 훼손한 때’ 등의 사유에 매인 때에는 그러한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문 부여의 조건에 해당됨(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 I ], 2014년, 187면 참조).

따라서 실권약관 등과 같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집행문 부여 시에 그 이행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나, 타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때 등과 같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시에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을 증명하여야 함.

참고로 조건성취집행문에 의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증서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39조제2항),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39조제3항).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며(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함(같은 조 제2항).

공증인이 수행한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공증인은 제15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불능증명서를 교부하며, 이때 송달할 서류(반송된 집행문 등본과 증명서 등본)도 함께 교부함.

채권자는 위와 같이 송달불능 등으로 공증인에 의한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송달을 위임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제2항), 집행권원 등을 송달한 집행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송달증명서)를 위임인(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제3항).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제5항).

**34. (214) 이른바 “실권약관”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만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

채무자가 분할변제금의 ○회 이상 연체 시 잔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실권약관”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만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 □ 답변내용

공정증서를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공증인은 채권자로부터 그 조건 성취의 증명서를 제출받고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제4호, 제30조제2항).

위 증명서도 그 등본을 강제집행 개시하기 전 또는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57조, 제39조제3항).

기한의 이익 상실이 ‘타인으로부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받은 때 등의 사유에 매인 때에는 그러한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문부여의 조건에 해당됨.

그러나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하여 사안과 같이 이른바 실권약관이 있는 경우(채무자가 분할변제금의 ○회 이상 연체 시 잔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에는 “채무자가 ○회 이상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문부여의 조건이 아님(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14년판, 187면 참조).

이 경우 공증인은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단순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함(공증실무 234면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증인은 채권자의 별다른 증명 없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함.

## 35. (220) 조건성취 집행문 등본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 □ 질의내용

조건성취 집행문 관련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처리 방법은?

## □ 답변내용

공증인이 조건성취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문의 등본과 증명서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57조, 제31조, 제39조제2항, 제3항).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며(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함(같은 조 제2항).

공증인이 수행한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공증인은 제15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불능증명서를 교부하며, 이때 송달할 서류(반송된 집행문 등본과 증명서 등본)도 함께 교부함.



채권자는 위와 같이 송달불능 등으로 공증인에 의한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송달을 위임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제2항), 집행권원 등을 송달한 집행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송달증명서)를 위임인(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제3항).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제5항).

**36. (226)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그리하여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음(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372면).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미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따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집행하는 경우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함.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예: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파산관재인과 파산자,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에는 실체법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함.

**37. (229) 분실로 인하여 정본을 재교부하면서 집행문을 최초 부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내용

분실로 인하여 정본을 재교부하면서 집행문을 최초 부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공증인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이미 집행문을 부여하였는데 다시 부여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함(민사집행법 제35조제2항).

위와 같은 통지는 집행문을 동시 수통부여하거나 재도부여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단지 정본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분실로 인하여 정본을 재교부할지라도, 집행문 1통을 최초 부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38. (279) 집행문 수통부여의 경우 필요한 소명자료는?**

□ 질의내용

집행문 수통부여의 경우 필요한 소명자료는?

□ 답변내용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하는 법적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59조임.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와 제59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에 따름. 그러므로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내지 제55조에 따라야 함.

법원사무관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지만(제35조제1항), 공증인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민사집행법 제32조와 제35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 공증인의 집행증서에는 재판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임.

그러므로 공증인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모두 변제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8조).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통부여 또는 제도부여 받을 수 있음. 수통부여에 대한 소명자료는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진실하다는 추측이 공증인에게 생길 수 있게 하는 자료(예컨대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들 등)임. 물론 채권자의 구두 소명으로 공증인에게 위와 같은 추측이 생길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 물적 자료 제출이 없더라도 수통 부여가 가능함.

**39. (296) 승계집행문 송달 시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가족의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승계집행문의 송달에 관하여,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상속인들 3명(채무자의 처, 큰 딸, 작은 딸)에게 송달하였음. 처와 큰 딸에게는 송달되었으나 작은 딸은 송달불능 되었음. 작은 딸의 송달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임. 채권자는 작은 딸의 주소가 따로 되어 있지만 주말에는 어머니 집에 온다면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로 다시 송달해 줄 것을 요청함.  
 어머니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작은 딸에 대하여는 송달불능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임.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이며,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본인의 주소지가 판명된 경우가 아니라면 어머니의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은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 한 송달로서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함.  
 단순히 채권자의 진술만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머니가 수령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송달이 될 수도 있음.

**40. (298) 폐쇄된 공증사무소에서 인수받은 공정증서 촉탁위임장에 채권자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정사항은 있으나 정정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질의내용

폐쇄된 공증사무소의 서류를 인수받았는데, 채권자 대리인 촉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촉탁위임장에 채권자의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일도 수정되었으나 정정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문 부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집행문 부여신청을 거절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증인이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① 집행권원 원본과의 대조

[신청인이 제출한 공정증서 정본이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정증서 원본과 일치하는 지 여부]

② 집행권원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판결의 경우에는 후에 소의 취하,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한 취소 등 실효사유가 없어야 함]

③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

[공증인은 집행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건물인도집행증서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채무 전부의 변제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사실이 증서의 원본에 부기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

④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을 것

[조건은 집행권원 자체에 표시된 것에 한하므로 집행권원만을 조사하면 됨]

⑤ 집행적격 및 피집행적격이 있을 것 등을 심사하여야 함.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어야 함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 2014년판(하드커버가 아닌 일반표지로 된 책) 200면 내지 203면 참조]

따라서 공정증서 원본과 그 원본이 작성된 원인서류인 공증촉탁위임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또는 그 위임장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까지 집행문을 부여하는 공증인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집행증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증서에 기재된 청구의 성립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그 집행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유효함. 법 제25조는 ‘공증인이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

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위반한 증서는 집행증서의 요건에 흠결이 있어 무효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지만, 이 규정은 공증인에 대한 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작성된 증서를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이 실제법상 불성립 또는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그 집행증서는 일응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 2014년판(하드커버가 아닌 일반표지로 된 책) 181면 참조)

따라서 집행문을 부여하는 공증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공정증서 정본과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정증서의 원본을 대조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집행권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위와 같이 심사하면 족하지,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원인서류인 촉탁위임장의 내용의 진정성 여부까지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위임장의 내용을 근거로 집행문 부여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물론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별개라 할 것임.

## 사 사서증서의 인증 일반 관련

### 41. (188) 문맹자도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문맹자도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증사무소에 출석한 촉탁인이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문맹자라고 하더라도 공증인은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음.<sup>8)</sup>

공정증서와 달리 사서증서의 인증에 있어서는 참여인을 사용한 경우 인증서에 그 사유와 참여인의 주소 직업 성명 나이를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으나, 실무상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도 이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음.

### 42. (200) 대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를 대리인이 와서 인증하는 경우 제출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질의내용

대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를 대리인이 와서 인증하는 경우 제출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내용

“갑”의 대리인 “을” (인)과 같이 대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를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와서 인증하는 경우 촉탁인은 “갑”이 아니라, “을”임.

따라서 인증촉탁에 대한 “갑”의 위임은 필요치 않음.

그러나 공증인은 위 사서증서상의 법률행위 주체인 본인 “갑”을 대리할 권한 (법률행위 대리권)이 실제 “을”에게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을”의 신분증 이외에 “을”이 사서증서상의 “갑”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를 제출받아야 할 것임.

8) 촉탁인이 문맹자이면서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함(공증인법 제28조 참조).

**43. (222) 유언서 일부를 수정액(화이트)으로 지우고 복사한 후 지워진 부분에 자필로 수정하여 인증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자필증서 유언 시 이미 자필로 작성된 유언서에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하여 화이트로 지워진 부분 위에 자필로 수정하여 인증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자필증서 유언을 인증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066조에 기재되어 있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임.

즉,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이 모두 유언자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유언자의 날인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그리고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한 곳이 있다면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자필증서 유언에 무효 사유가 없다면 일반 사서증서 인증 방식으로 인증해주면 될 것임. 다만, 유언을 대리로 할 수 없음에 비추어 자필증서 유언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에도 대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유언자 본인이 이미 자필로 작성한 유언서를 가지고와 촉탁하면서 보니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하여 화이트로 지워진 부분 위에 자필로 가필하여 수정하였다면 복사된 부분은 자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인증하여 줄 수 없다고 사료됨.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全文)이 모두 자필이어야 함.

**44. (243) 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인증 받아야 하는 서류인 경우 같은 사무실에서 인증 받은 것도 되는지?**

**□ 질의내용**

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인증 받아야 하는 서류인 경우 같은 사무실에서 인증 받은 것도 되는지?

□ 답변내용

가능함.

예를 들면 위임장을 번역문 인증한 다음에, 그 번역문 인증서를 제출받아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거나 인증을 부여한 일이 제척사유가 되어 공증사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음.

공증인법 제21조의 제척사유는 공증인이 촉탁인이나 촉탁대리인과 특정한 관계(친족, 대리인, 이해관계인)인 경우이며, 공증을 한 사정은 관련이 없음.

인가공증인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공증인법 제15조의9도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관한 것임.

45. (256) 주식 명의신탁계약의 인증 여부?

□ 질의내용

주식 명의신탁계약도 부동산 명의신탁계약과 마찬가지로 공증인이 인증을 거절해야 하는 계약인지?

□ 답변내용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중중, 배우자 사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공증인이 그에 대한 인증을 거절하여야 하지만, 주식 명의신탁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므로(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 11220 판결등 참조), 원칙적으로 인증을 거절할 이유가 없음.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인증을 거절함이 바람직함.

[참조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3조제1항의 명의 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할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 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46. (257) 영어가 아닌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시 문서명을 영어로 표기해야 하는지?**

**□ 질의내용**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사서증서 인증 시 문서명을 영어로 표기해서 인증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외국어 사서인증 시에는 서식규칙상의 별지 제42호 서식을 사용함.

위 제42호 서식은 문서명을 국어와 영어로 표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록 외국어 사서증서상의 언어가 영어 이외의 스페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문서명은 국어와 영어로 표기함.

**47. (263) 동일인 확인서 양식에 확인자가 2명인데, 1명만 확인한 경우 인증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동일인 확인서의 양식에 확인자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만 확인한 경우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공증인은 위법하거나 무효인 행위가 아니면 인증을 부여함.

적법하고, 정확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 동일인 확인서를 2명이 작성하여야 하는지, 1명만 작성하여도 되는지는 이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처리에 따를 사항임.

동일인 확인서의 확인자란이 2명인 서면에 1명만 확인한 경우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인증 받은 후에 추가로 기입해 넣으면 외관상 둘 다 인증촉탁을 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그 취지를 인증서에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함.9)

---

9) 공증인법 제57조제3항 참조

**아** 번역문 인증 관련

---

**48. (191) 번역공증 시 사본에 대한 번역도 가능한지?**

질의내용

번역공증 시 사본에도 가능한지 여부(여권 사본과 번역문이 들어온 경우)?

답변내용

번역문 인증은 촉탁인 또는 번역자가 작성한 서약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므로 증서 원문 그 자체의 진정 성립과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여권 사본 등 문서의 사본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의 번역문이 들어 왔을 경우에도 번역문 인증이 가능함.

**49. (227)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여 인쇄한 원문을 번역하여 번역 공증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여 인쇄한 원문을 번역하여 번역 공증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번역문의 인증에 있어서 원문은 보통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 즉, 원본이지만 사본도 원문으로 사용할 수 있고, 캡처한 사진을 원문으로 할 수도 있음.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인증의 대상인 문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번역문의 인증은 실질적으로는 번역자의 서약서를 인증하는 것임. 따라서 서약서에 첨부된 문서(원문)가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물론 원문이 위조된 것이거나 문서로서 완성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번역문의 인증을 거절하여야 함.

## 50. (230) 법률내용을 출력한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번역문 인증 가능 여부 등?

### □ 질의내용

우리나라 법률(법률내용을 출력한 문서)을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번역문 인증이 가능한지 및 가능하다면 번역인에게 일반적인 번역능력 이외에 법률관련 어떤 자격까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 답변내용

번역문 인증은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번역문이 원문과 상 위 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서증서 인증의 방법으로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번역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은 번역자 내지 촉탁인에게 있음.

공증인은 단지 서약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것일 뿐 번역이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공증실무 262면 참조).

따라서 번역문 인증은 위와 같이 서약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것일 뿐 번역이 올바른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법률(법률내용을 출력한 문서)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번역문 인증이라고 하여, 번역인에 대한 일반적인 번역능력 이외에 법률관련 어떤 자격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음.

**자 의사록 인증 관련**

**51. (186) 소수주주가 대표이사 해임 건으로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 질의내용

- (1) 소수주주가 대표이사 해임 건으로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2)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임 대상자인 대표이사 또는 감사에게도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및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면 그 통지 방법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6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366조제2항 참조).

그러나 소수주주가 위 상법 제366조제2항에 따라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수주주도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의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함.

(2)에 대한 답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상법 제363조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동조 제3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음(동조 제4항).

사안과 같이 소수주주가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고,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각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임 당사자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들 및 감사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됨.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출석한 이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상법 제373조제2항),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는 점(상법 제413조) 등에 비추어, 이사 및 감사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함이 바람직함. 다만, 그 통지방법과 관련하여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 소집에 관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전화, 문자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주주총회에 참가할 기회를 주는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임.

**52. (190)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소집 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법원의 소집허가가 필요한지?**

**□ 질의내용**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는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를 받은 후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집절차를 밟고 소집통지서와 발송증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이사가 2명 이하의 주식회사여서 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그 소집절차에 동의하지 않

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집할 수 있고, 총주주의 동의를 있으면 법원의 소집 허가 없이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대표이사가 부정적 태도인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 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총주주의 동의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후 주주명부에 대한 적법한 작성권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제5항 참조).

**53. (194)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개인 주소지로 보내야 하는지 여부 등?**

□ 질의내용

- (1)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개인 주소지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지?
- (2)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여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로 발송하여야 함 (상법 제363조제1항 단서 참조).

다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자신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할 권리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 경우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주소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엄격히 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2)에 대한 답변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 전원에게 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도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함이 원칙임.

다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자신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할 권리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 경우 그에 대한 소집 통지에 관하여는 엄격히 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소로 주주 모두에게 일괄 발송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54. (195) 총회나 이사회가 구성원이 전원 출석 또는 일부 출석한 경우 소집절차의 적법성 확인방법은?**

**□ 질의내용**

각종 법인의 총회나 이사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전원 출석한 경우와 일부 출석한 경우 어떻게 확인하는지?

**□ 답변내용**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절차와 관련한 상법상 규정**

- 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를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상법 제363조제1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 총회 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동조 제3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동조 제4항).
- ②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음(상법 제390조제3항).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음(동조 제4항).

**(2) 전원출석의 경우**

- ① 법정의 소집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주 전원이 총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출석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를 전원출석총회라고 하는데, 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유효함(통설, 대법원 1996.9.20. 66다1187 등 다수). 더욱이 1인 회사에서는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76.4.13. 74다1755 등).

전원출석주주총회의 주주 전원이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소집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없음. 실무상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봄.

-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이 회합하여 이의 없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 이상 그 회합은 이른바 전원출석회의로서의 이사회가 되며 유효함. 이 경우 소집절차의 생략에 관한 동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음(주석상법 제4편 242면 참조).

전원출석이사회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소집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없음. 실무상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봄.

(3) 일부 출석의 경우

- ①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가 있으면 결석자가 있더라도 유효한 총회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이사 및 감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가 있으면 결석자가 있더라도 유효한 이사회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4) 경영권 변동과 같은 특별한 결의 등이 아닌 경우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 확인 방법

- 공증인은 당해 결의에 의하여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거나, 확인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상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등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 소집통지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하나(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4조제4항), 통상적인 경우에는 굳이 소집통지서 등 소집절차를 지켰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살필 필요가 없고, 위 지침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진술서, 확인서 등으로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면 될 것임.

- 이는 위 (2)항 및 (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5)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의 총회나 이사회 의 경우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의 총회나 이사회 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경우에 준해서 처리하면 될 것임.

**55. (209) 관할 관청에는 비등기이사로 신고 등재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비등기이사도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관할 관청에는 비등기이사로 신고 등재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비등기이사도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5조(이사인 사실 등의 증명 방법)에서 ‘공증인은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결정족수 및 이사, 감사인 사실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과 함께 주주총회 의사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해서도 이사인 사실을 증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이사인지 여부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의사록 인증에 있어서 비등기이사는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음.

**56. (210) 정관상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라고 할 때 ‘유고’의 의미?**

**□ 질의내용**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다른 사람이 의장을 볼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고의 의미는 주주총회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유고(有故)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을 말하므로, 대표이사의 유고는 대표이사가 궐위되거나 사고를 당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판례는 단순히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도 유고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84. 2. 24. 선고 83다651 판결 참조).

따라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유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임.

### 57. (221)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으로 주총 개최 건으로 참석 공증 시 정관 규정과 다른 의장을 선출할 경우 의사록 인증 가능 여부?

#### □ 질의내용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으로 주총 개최 건으로 참석 공증 시 정관 규정과 다른 의장을 선출할 경우 의사록 인증 가능 여부?

#### □ 답변내용

상법 제366조제2항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집허가 결정시에 그 임시 주주총회 의장을 법원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소집허가결정문에 임시 의장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나,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임시총회로서 특수성이 있는 총회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주가 찬성하면 임시 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하급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14나2434 판결)에서 이와 관련하여 실시한 법리판단이 있는데, 다음과 같음.

“상법 제366조제2항이 소수주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회사의 재산상태 악화에 따른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을 선·해임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주주총회의 소집에 협력하지 않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주주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수주주가 위 조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의안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총회 소집권이나 그 소집된 총회의 의장이 되는 권한은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총회 회의장에 참석한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그대로 확정되었음(대법원2015다2409 판결).

위 판결 외에도 같은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3889 판결 등이 있음.

따라서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으로 개최된 주주총회 참석 공증 시 일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주가 찬성한 정관 규정과 다른 임시의장을 선출할 경우에도 의사록 인증이 가능함.

**58. (223)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간 단축 동의나 의결권 행사 방법?**

**□ 질의내용**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간 단축 동의나 의결권 행사 방법?

**□ 답변내용**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③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④ 대리행위, ⑤ 만 17세 이상의 유언행위, ⑥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그 사원자격에 의하여 하는 행위, ⑦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등 외의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함. 따라서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주주가 기간 단축 동의나 의결권을 행사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할 것임.

**59. (246) 공증담당변호사가 사단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인데 그 법인의 사원총회에 다른 공증담당 변호사가 참석인증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공증담당변호사가 사단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인데 그 법인의 사원총회에 다른 공증담당변호사가 참석인증을 할 수 있는지? 참고로, 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라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답변내용**

공증인법 제21조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음.

- ①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 ②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 ③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④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등을 직무로 함(민법 제67조).

따라서 감사는 해당법인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도 해당법인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공증인법 제21조제3호의 이해관계인이 됨. 법무법인의 다른 공증담당변호사도 제척사유에 해당함.

**60. (252) 주주총회 의장이 찬반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하여 소란이 발생한 경우 의사록 인증 여부?**

**□ 질의내용**

주주총회 참석인증 시 의장이 안건에 대하여 실제 찬반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결선포를 하여 소란이 발생하는 등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록 인증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공증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의사록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66조의2제4항, 제59조, 제25조,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8조).

의장이 안건에 대하여 주주들의 실제 찬반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결선포를 하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61. (253) 주주명부와 영문위임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성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질의내용**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시 주주명부에는 “홍길동”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영문위임장에는 영문으로 “dong hong”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주주명부와 위임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성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위임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워 인증이 불가함.

62. (254) 종중 총회 참석인증 시 검사수수료?

□ 질의내용

공증인이 종중 총회 참석인증 시 검사수수료는 얼마인지?

□ 답변내용

공증인이 법인 총회의 참석인증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그 검사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름(「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제1항).

한편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함(「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

종중 총회의 참석인증 절차 역시 법인 총회의 참석인증 절차에 준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고, 그 검사 수수료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에 의해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법인 총회의 참석인증 검사수수료 규정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종중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 개념에 대응하는 종중의 재산 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일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고(다만, 종중 재산의 가액을 알 수 있다면 그에 따라 300만 원까지도 될 수 있을 것임), 총회가 야간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50% 할증하여 수수료를 받으면 되며, 출장 실비와 의사록 인증 수수료는 별도임.

63. (255)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정관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 □ 질의내용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정관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정관인증을 해주어도 되는지?

## □ 답변내용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법 제66조의2제1항, 시행령 37조의3).

이는 소규모 회사의 발기설립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과 같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지,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의 경우 총회 등의 의사록인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한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292조), 정관 인증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유회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상법 제543조제3항).

이는 발기설립하는 경우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소규모 회사의 신속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지, 정관 인증의무 면제 법인의 경우 정관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따라서 의사록인증 제외 대상 법인이나 정관 인증의무 면제 법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증인은 얼마든지 의사록 또는 정관 인증을 해 줄 수 있다고 할 것임.

## 64. (270)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참석인증 시에도 의결정족수 이상 주주의 위임이 필요한지?

## □ 질의내용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참석인증 시에도 의결정족수 이상 주주의 위임이 필요한지?

## □ 답변내용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참석인증 시에는 공증인이 법인의 의결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진행상황, 결의의 성립 여부를 검사하므로, 청문인증 시와 같은 의결정족수 이상 주주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음.

다만, 참석인증의 경우에도 의사록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공증인이 촉탁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함. 법인 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2조제2항의 부속서류로 첨부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이것을 의미함.

**65. (271) 주주총회 임시의장인 사내이사가 확인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해도 되는지?**

**□ 질의내용**

대표이사가 사임할 예정이어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시 확인서를 임시의장인 사내이사가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 답변내용**

공증인은 청문 인증 시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해당 결의에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4조제3항 본문). 따라서 확인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의장이나 해당 결의에 출석한 이사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임시의장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공증인은 사안과 같이 사임하는 대표이사가 촉탁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당시 실제 대표이사가 사임한 것이 분명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임서를 확인하고 이를 사본해 부속서류로 첨부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66. (272) 주식 수에 따른 정관변경 주총 의사록 인증 가부?**

**□ 질의내용**

발행주식수, 출석주식수, 찬성/반대주식수, 인증촉탁주식수가 다음과 같을 때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 다 음 -

발행주식수 : 82,320,915주, 출석주식수 : 29,479,967주  
찬성주식수 : 28,724,240주 반대주식수 : 755,727주  
인증촉탁주식수 : 25,346,450주

**□ 답변내용**

법인 의사록의 인증은 의사록의 진정 성립과 함께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당결의를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어야 함.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에 해당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상법 제434조), 그 의사록 인증을 위해서도 위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어야 함. 사안의 경우, 출석주주 의결권의 2/3는 19,653,311.33주(29,479,967×2/3)이고, 발행주식 총수의 1/3은 27,440,305주(82,320,915×1/3)임.

인증촉탁주식수(25,346,450주)가 위 발행주식총수의 1/3(27,440,305주)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의사록 인증이 불가함.

**67. (273) 법인의사록 인증 시 정관의 확인방법?**

**□ 질의내용**

법인의사록 인증에 있어서 정관을 제출받을 때, 정관의 확인방법?

**□ 답변내용**

의사록 인증의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정관은 사본도 가능함.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기재를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간인하여야 함.

정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요령으로 제출하여야 함.

**68. (280)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주주명부 등에 표시하는 방법?**

**□ 질의내용**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주주명부 등에 표시하는 방법?



□ 답변내용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상법 제360조제2항).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총수를 기재함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를 별도로 부기함이 바람직함.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 ○○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주”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면 될 것임.

예) 주식의 총수 : 40,000주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 5,000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35,000주)

**69. (282) 조합총회 의사록 인증 시 제출받는 조합원명부에 오기가 있는 경우?**

□ 질의내용

조합총회 의사록 인증 시 제출받는 조합원명부에 3개 정도의 오기가 있는 경우 촉탁 대리인인 법무사가 이를 수정하고 법무사의 도장을 날인해도 되는지?

□ 답변내용

조합원명부는 조합의 대표자가 작성하고, 조합의 인감을 날인해야 함. 조합원 명부에 오기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수정 역시 작성자인 조합의 대표자가 하고, 조합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므로, 그 대리인이 이를 수정하면서 조합인감이 아닌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 촉탁을 거절하여야 함.

**70. (283)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그 사람의 위임이 필요한지?**

□ 질의내용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그 사람의 위임이 필요한지?

□ 답변내용

필요함.

구공증인법에서는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한 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그의 촉탁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었고 실무는 주주가 아니라면 촉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 따라 처리되었음.

그러나 현행 공증인법은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사람으로부터도 반드시 촉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따라서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이사는 주주인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촉탁인이 되어야 하고 그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의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함.

#### 71. (287) 1인 주주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관련?

##### □ 질의내용

1인 주주인 회사(사내이사는 2명)의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공증하는 경우 주식변동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관련 세금 납부 영수증 등 1인 주주가 맞다는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법인 인감증명서 없이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 □ 답변내용

주식회사의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서 주주인 사실은 주주명부(제33호 서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주주명부(제33호 서식)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공증인은 주식변동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주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만일 대표이사가 주주(특히 1인 주주)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아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없거나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고, 법원에 소집허가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음.

#### 72. (299) 2명의 각자 대표이사인 법인의 의사록 인증 시 1명의 법인인감증명서만을 받아도 되는지?

##### □ 질의내용

A, B가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인 법인의 의사록 인증 시 A, B 중 1명의 법인인감증명서만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상법 제389조제3항, 제209조).

그러나 회사는 대표권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써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89조제2항), 이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요식행위(要式行爲)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다만, 제3자의 의사표시를 받는 권한은 각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각자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 확인서 등에 자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자신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주주명부 등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자 대표이사 2명 모두가 각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각자의 법인인감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차 확정일자 관련

### 73. (199)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 일방의 날인이 없고, 작성일자가 미기재된 경우 확정일자 부여 가능 여부?

질의내용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일방의 날인이 없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계약당사자 일방의 날인이 없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미완성 문서에 해당되므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음.

계약서에 누락되어 있는 날인과 작성일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보충된 이후에는 가능함.

### 74. (240) 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인 두 개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문구가 수정된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지? 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인 두 개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확정일자인을 날인함에 있어서 사문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고, 난외에 정정 글자 수를 기입하게 한 다음에 그 난외 부분에 확정일자인을 찍음(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2항 참조)  
확정일자인을 날인한 이후에 사문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할 수 없음.

따라서 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두 개 날인할 수는 없음.

그리하여 확정일자 부여 기관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야 함(주택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

본문).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증서로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음(위 규칙 제3조제6호 단서).

# 예외의 요건

-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다른 사서증서는 해당 사항 없음)
- (2) 재계약
- (3) 새로운 내용 추가 기재(중전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안됨)

**카** 기타

**75. (215) 사용인감계 또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증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사용인감계 또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증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촉탁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증될 우려가 있고,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가함.

**76. (216) 촉탁서나 신청서 성명 옆에 날인을 요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촉탁서나 신청서 성명 옆에 날인을 요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증인이 공증을 촉탁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촉탁인 및 보조자로 하여금 소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서식규칙 제12조제1항), 촉탁인이 집행문부여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게 하도록 되어 있음(서식규칙 제18조).

즉, 공증인이 증거를 작성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법 제38조제3항 등), 촉탁서나 신청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촉탁(대리)인 또는 신청(대리)인에게 소정사항을 기재하게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반드시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촉탁(대리)인 또는 신청(대리)인의 성명 옆에 날인 대신 서명을 하게 해도 무방하다고 봄.

**77. (218) 듣거나 말을 못하지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경우 통역인 없이 공증 촉탁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듣거나 말을 못하지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경우(시각장애인 아님) 통역인 없이 공증 촉탁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하고(법 제28조, 제59조),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함(법 제29조제1항, 제59조).

이는 공증인과 촉탁인이 상호 소통하기 위함임.

사안의 경우 듣거나 말하지 못하여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시각장애인 아님) 문자도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통역인 또는 참여인 없이 공증촉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78. (225)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받고 공증하여 줄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받고 공증하여 줄 수 있는지?

□ 답변내용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함(공증인법 제31조제3항).

서명에 관한 증명서로 진정성립을 증명하게 할 수도 있으나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처럼 정밀하고, 엄격하게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함.

**79. (250) 일본 소재 일본인이 공증의 촉탁을 위임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일본 소재 일본인이 공증의 촉탁을 위임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공증인법 제31조제2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말함.  
일본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위임장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음.<sup>10)</sup>

80. (266) 임대차계약의 목적가액 산정 시 목적물가액의 의미?

□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의 목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목적물가액1/2)+(목적물가액1/2)+보증금+보증금+차임의 합에 있어서 목적물가액의 의미는?

□ 답변내용

목적물가액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가격을 말함.  
목적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볼 수도 있으며, 보증금+차임 합계금의 쌍방가액으로 산출할 수도 있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0조 참조).<sup>11)</sup>

81. (275) 인증을 촉탁하지 않은 주주가 의사록 인증서 부속서류인 주주명부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 질의내용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인증을 촉탁하지 않은 주주가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의 부속서류인 주주명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열람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10) 그 위임장이 한국어로 된 문서이어야 하고, 일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번역문 인증까지 받은 위임장이어야 함.

11)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목적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목적가액을 2천만 100원으로 볼 수도 있으며, 보증금+보증금+차임의 합계금이 2천만100원을 넘을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출할 수도 있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0조, 제13조 각 참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답변내용

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든 아니든, 의사록 인증을 촉탁하였든 아니든 의사록 인증서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주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82. (277) 보관기간이 지났으나 미 폐기된 서류에 대한 등본 교부 여부?**

□ 질의내용

보관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폐기하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 등본을 교부할 수 있는지?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초록등본을 교부하는지?

□ 답변내용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든지, 인수하여 보관한 서류든지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본을 교부하여야 함. 보관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음.

부속서류의 일부에 대하여 관하여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초록등본을 작성함. 초록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함(공증인법 제53조, 제52조제1항, 제2항).

**83. (278) 전부 변제가 아닌 경우 해소부기 가능 여부?**

□ 질의내용

전부변제가 아닌 경우에도 해소부기를 할 수 있는지? 채권자 3명 중 2명 부분은 모두 변제되었으나 1인 부분은 변제가 되지 않았음.

□ 답변내용

해소부기는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는 것임(공증인법 제35조의2제1항).

일부의 해소사실을 부기할 수는 없음.

부기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공증인법 제56조의4제2항).

**84. (281) 집행문부여 신청 시 제출받은 신청서 등에 대하여 등본신청 하는 경우?**

**□ 질의내용**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때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등본신청하는 경우 공정증서나 그 부속서류에 대한 등본신청과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

**□ 답변내용**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50조제1항).

이러한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발급청구권은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자신과 관련된 공증사항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50조제1항의 부속서류에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부속서류뿐만 아니라 공정증서 작성 이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신청 할 때 제출받은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85. (288) 미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탁을 하기 위한 위임장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질의내용**

미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탁을 하기 위한 위임장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답변내용**

공탁 위임장의 인증을 위한 '촉탁위임장'에 교도관의 무인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임장에 인증을 할 수 있음.

수감자가 변호사에게 공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임.

**86. (301) 채무자의 촉탁으로 인증한 차용증에 채권자로 기재된 자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 질의내용**

- (1) 채무자의 촉탁으로 인증한 차용증에 채권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로 기재된 자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 (2) 가능하다면 그 인증서에 대하여 등본 발급을 청구 또는 열람 등사 신청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1)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43조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50조제1항).
- (2) 사서증서 인증서의 사본과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공정증서 작성이나 정관 및 의사록 인증의 경우와 달리 열람 및 등본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관하여 허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열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 사무소의 실무는 허용설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등본 발급은 사서증서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불가). 법무부도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고, 사서증서 사본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인증서사본) 수수료를 장당 500원으로 책정한 바도 있음(2014. 2. 1. 제정 ‘공증수수료 등 산정의 기준’ 제20조).
-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차용증상의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촉탁인은 아니나, 사서증서인 차용증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참고로 이해관계인이 인증서 사본의 등사를 신청 하는 경우 공증인은 ‘이는 이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증서사본을 전자 복사한 것임’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사본을 교부함.



## 2019년도 UINL(국제공증인협회) 제9차 CAAs(아시아지역위원회) 협회 발표문

### I 폐회식 협회장 인사말

#### ■ 국문

2019년도 CAAs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해 주신 Mrs. Ononchimeg Ryenchindorj 몽골공증인협회 회장님! 그리고 CAAs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Mr. José Marqueño de Llano, UINL 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시아지역위원회 가입 8년 여 만에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의를 마친 몽골공증인협회 임원님들과 몽골 공증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통해 “취약계층 권리 보호와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공증인의 역할”에 관하여 각국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공증제도는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각 나라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귀한 내용을 준비해 주신 각국의 공증인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2020년도 CAAs는 우리 한국에서 주최합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내년 회의에서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상공증제도를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화상공증의 이용이 미미

한 상태이지만 1년 간 부지런히 준비해서 좀 더 발전된 화상공증의 모습을 아시아 각국의 공증인님들께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CAAs 회의에서는 각국의 고유한 공증제도나 공증제도 운용상의 특성에 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CAAs 회원국은 모두 라틴계 공증제도를 취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마다 고유한 공증 제도가 있거나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특색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시사점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에서 열리는 CAAs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영문

I would like to take this time to thank Mrs. Onochimeg Ryenchindorj, president of the Mongolian Chamber of Notaries, who prepared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019 CAAs meeting! I would like to thank Mr. José Marqueolo de Llano, President of the UINL, for your heartfelt support for CAAs.

I also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and respect to all the members of the Mongolian Chamber of Notaries who have successfully hosted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two times in the last eight years from your joining CAAs in 2012.

Today's conference wa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how CAAs member countries are approaching "the role of notaries in combating terrorism and money laundering and in protecting the rights of vulnerable persons." Through thes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e believe that each country's notary system will be further developed, and we hope that it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lives of citizens of each country. Thank you very much to the notaries of each country who prepared the valuable information.

As you know, next year's CAAs will be held in Korea. The Korea Notaries Association is going to take a moment at next year's conference to give a detailed introduction to the current image or video notarization system in Korea. Although the use of image notarization is still not activated in many respects due to the lack of maturity, we will prepare diligently for a year and do our best to introduce a more advanced picture of video notarization system to you.

We also hope that the 2020 CAAs meeting will take time to discuss each country's unique notarial or notary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ur CAAs members all have in common a Latin notary system, but if you look closely, each country may have its own notary system or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countries. I hope that introducing and discussing the unique systems of each country will also give other countries a point of view.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in good health at the next CAAs in Seoul. Thank you.

---

## II 제1주제 발표문(영문)

---

###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Notary System in Republic of Korea on 2019**

Vice President of Korean Notaries Association,  
Park Jong Soon

#### **A. Basic Data**

##### **1. The Numbers of Notary Members of KNA(Korean Notaries Association)**

- Total 335
  - The number of the appointed notaries : 78
  - The number of the authorized notaries office(the total lawyers as the notary in the authorized law firm) : 257(990)
  
- The retirement age of the notary has been changed from 80 to 75 from year 2018.

**2. The Numbers of Notaries by Region on 2019**

District	Appointed Notary		Authorized Notary			Total Number of Notary Office
	Present	Quota	Present	Quota	Notaries Total	
Seoul	25	25	122	103	573	147
Uijeongbu	3	3	11	6	31	14
Incheon	6	6	16	9	41	22
Suwon	10	10	27	17	86	37
Chuncheon	3	3	3	2	7	6
Daejon	5	5	8	8	20	13
Chungju	2	3	6	3	24	8
Daegu	6	7	19	9	62	25
Busan	5	7	12	11	38	17
Ulsan	2	3	6	2	23	8
Changwon	4	4	8	5	23	12
Gwangju	4	6	12	9	40	16
Jeonju	2	3	5	4	17	7
Jeju	1	1	2	2	5	3
Total	78(23.28%)		257(76.72%)		990	335(100%)

- The Quota System : The new system of the quota was introduced on year 2010.
- Though the number of the appointed notary started below the quota on 2010, but as of May 2019, most of the districts are filled with the quota.
- The number of the authorized notaries on 2010 has exceed the quota at the all district, but as of May 2019, the excess is gradually being resolved at the all district.



**3. The Numbers of Cases in the last 5 years**

※ As of December 31st of each year per cases

Year	Notarial Deeds	Articl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ion	Minutes of Corporation Certification	Private Documents Certification	Officially Attested Date Seal	Others	Total
2018	245,743	2,329	353,491	736,212	1,624,112	88,762	3,050,649
2017	270,872	2,433	331,446	740,618	1,937,764	91,083	3,374,216
2016	286,850	2,668	366,111	734,790	2,262,946	92,451	3,745,816
2015	303,793	3,195	383,747	722,740	2,253,322	91,497	3,758,294
2014	293,953	3,699	380,142	756,220	2,292,622	99,355	3,825,991

**B. The Major Activities of KNA on 2018****1. The Joint Investigation or Special audit by Ministry of Justice and KNA on Notary Work**

- According to the Article 78 of Notary Act, KNA and Ministry of Justice had investigated and had taken special audit to the suspicious notary offices which performed far higher cases than the level to be reasonably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f the Notary Act.
- KNA will continue to carry out activities aimed at rooting out illegal activities such as discounts on notary fees.

**※ Article 78(Supervisory Agency)**

- ① Notaries public shall be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 ② The Minister of Justice may delegate part of his/her supervisory authority on notaries public to the chief public prosecutors of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s or entrust the chairperson of the Korean Notaries Association with part of his/her supervisory authority.

## **2. The Complaint against companies that infringed on the notary service**

- Article 87 of the Notary Act stipulates that if a person who is not a notary indicates or marking that he or she deals with a notary service for the purpose of making profits from the notary service shall be sentenced to less than three years in prison or fined 20 million won.
- However, some of the translation companies are advertising undiscerning key word such as notarized documents, notarial services or notarized translations on the Internet, thereby causing the public to misunderstand or confuse the translator as a notarial person, thereby undermining the credibility of the notarial system.
- In order to eradicate illegal advertising businesses, KNA decided to seek criminal charges against certain company for violation of the Article 87 of Notary Act and to seek legal punishment. So the complaint case is now under way.

### **※ Article 87(Penal Provisions)**

Any person who places an indication or makes a statement as a notary public or indicates or states that he/she manages notarial affairs for the purpose of making a profit, while he/she is not a notary publi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less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In such cases, imprisonment and the fine may be imposed concurrently.

## **C. The Major Development on 2018**

### **- Introduction of Image (Video camera) Certification -**

#### **1. The Image or Video Notarization System of Korea**

- Korea introduced an image (video camera) certific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s without the applicant's coming to the notary office on June 20th, 2018.
- The remarkable change of our notary system under the revised Notary Act on 2018 is to adopt the online notarial procedure for certificating the electronic documents(notarial instrument) via video conference between the applicant for the notarial certification and the designated notary(not all the notary but the designated notary can use the above system). The below Article of the revised Notary Act is suspended by the end of 2018

to prepare and implement the new system which was finally implemented on June 20th 2018.

- For preparing the above system, Ministry of Justice should solve some technical problem to check and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by the notary through the online notarial procedure. For this, Ministry of Justice had consulted and cooperated with the other Ministry of Government, namely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ho manages and supervises the identification card of all the Korean Nationals. Also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the computer-online program and internet site(<http://enotary.moj.go.kr>) to ease the online notarization. Thus KNA had practical meeting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several times. Though the System is implemented on June 20th 2018, we believe that the small changes and detailed developments are required to activate the video notarization to the public who want to use the new system.
- For your reference, the new relevant Article of the Notary Act is as follows:

**※ Article 66-12(Authent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using Internet image device)**

- ① The authentication of an electronic document pursuant to Article 66-5 may be carried out by using an Internet image device which transmits and receives video and audio at the same time as specifi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designated notary. In this case, the designated notary shall record all progress related to the authentic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 ② When a designated notary authenticates an electronic document by means of an Internet image dev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①, he or she may be required to submit a certificate to the applicant or his / her agent by means of electronic means,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or an identification card accompanied by a photograph issued by a competent authority.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or his agent shall be verified through the identity verification proces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 **2. The Recent Data of Electronic Certificates and Image Certification**

- The Number of Cases of Electronic Certificates from August 7, 2010 to April 30, 2019

Year	Completed cases	Remarks
2010	5	
2011	37	
2012	39	
2013	57	
2014	136	
2015	151	
2016	365	
2017	319	
2018	373	including Image Certification
2019. 1.~2019. 4.	88	including Image Certification
Total	1,570	

- The Number of Cases of Image Certification from June 20, 2018 to April 30, 2019. Only New Image Certification

Year	Completed Case	Remarks
2018	141	From June
2019	63	Till April
Total	204	

## **3. The Evalu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mage Certification**

-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above image certification system, 10 months after its implementation, the use of the system has not been met with expectations due to the low level of public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s and the image certificate, and it is imperative that the system will be revitalized in a large scale.

## **4. The Measures for Activation of the System**

- Promoting the education of designated notaries while continuously develop the system for easy and convenient use of image certification by the applicant for notary service.
- Promoting and encouraging public to obtain electronic documents through online video

calls anytime, anywhere, rather than obtain paper-written documents by visiting notary office.

## **D. The Major Business of KNA on 2019**

### **1. The Effort for revision of Rules for Notary Fee**

- The current Rules for Notary Fee(Regulation of Ministry of Justice) have not been revised after revision of February 2010 and some fee rules have been set too cheap compared to the workload of the notary, and some of them are insufficient or ambiguous in practice, making it a matter of calculation of the fees, and it is in strong need to be revised.

### **2.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notarized document management program**

- Currently, many of the member offices use paid programs developed by software company to handle notary work, but KNA has an intention to develop its own notarized document management program and is seeking to secure and develop budget and manpower to distribute the above programs to member offices.
- It is expected that it will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members by freeing the notarized document program to members, and by making the notarized document by the same notarized document program will enhance the public trust in the notarized document.

---

## **III 제2주제 발표문(영문)**

---

### **The role of Korean notaries**

#### **a) in combating terrorism and money laundering and**

#### **b) protecting the rights of Vulnerable persons**

Presentation: Hyung Yeon (Rick) PARK

### **A. The legal regulations in combating terrorism of Korea.**

The relevant laws regarding combating terrorism in Korea.

※ 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Article 1 (Purpose) of the above 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to ensure national and public security against terrorism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counter-terrorism activities, etc. and compensation for damage, etc. caused by terrorism.

**B. The legal regulations in combating terrorism and money laundering of Korea.**

※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 (Purpose) of the above 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for matters concerning reporting on and use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necessary to regulate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through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thereby contributing to preventing crimes and further establishing a sound and transparent financial system.

Recently (2019. 1. 15.), the above Act was revised and the new Act will be in effect on July 1, 2019. The revision focuses on (1)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obligation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nd prevent terrorist financing, (2) raising the ceiling on fines, and (3) specifying the obligation to keep data.

**C. Role of Korean notaries in the above matters.**

Unfortunately, there is no such role as a notary in Korea under the law and the regulation structure to preventing terrorism and banning money laundering.

KNA hope that UINL member country's relevant system which allows the notaries to intervene the above issues can be advisable to US for expanding our working areas.

**D. The role of Korean notari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vulnerable persons**  
**Vulnerable persons: Minors, Seniors, Person with Disabilities and etc.**

1)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ll aspects of life, and to effectively safeguar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ground of disability, thus enabling the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establish their right to equality which will ensure their human dignity and sense of value.

2) Also Korea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December 13, 2009 and the above Convention came into effect on 2009 officially.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he first report to the UN Committee. Also Korean Government should submit the second report to UN this year.

3) Korea has many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 vulnerable persons but I will share with you regarding the legal system which allows the notaries to intervene therewith.

4) Korean regulations or legal system which allows the intervention of Notaries.

As I told you in the above terrorism and money laundering issues, the role of the notaries are very narrow in Korea. Thus I will introduce only one legal system which allows Korean notaries interventi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another legal system which we regret that we should have involved but failed.

**a) Adult Guardianship by the contract.**

Korea adopted the new adult guardian system on July 2013 by revising the Civil Code. Before then, incapacitation or interdiction of the incompetent 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禁治産 制度, 限定治産 制度) by Family Court was used. The past system focus on not the protection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but the protection of the society. The new system focus not on the protection of the society but on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themselves.

The adult guardianship is two kinds; 1) the adult guardianship by the statute 2) the adult guardianship by the contract. The Korean notaries could intervene in the latter.

Article 959-14 of Korean Civil Code said that (1) The contents of a guardianship contract shall be to entrust all or some of a person's affairs related to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private matters to another person where the person is in the state of lacking the capacity to manage the affairs due to a disease, disability, old age or by any other cause or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falling under such situation, and to confer the right to representation with respect to the entrusted affairs on another person; (2) A guardianship contract shall be entered into in an authentic deed by the notaries ; (3) A guardianship contract shall take effect at the time the Family Court appoints a supervisor of voluntary guardianship and (4) In implementing and managing a guardianship contract, the Family Court, a voluntary guardian, a supervisor of a voluntary guardian, etc. shall respect the wishes of the principal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hus, KNA are trying to promote many of the advantages of adult guardianship by the contract.

**b) Refusing Life-sustaining Treatment before the death.**

Does your legal system provide for an advance decision on medical treatment for persons who, as a result of an accident or illness, are no longer able to express their wishes with regard to undergoing or refusing medical treatment?

We enacted new Act on 2017: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Article 1 of the above 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such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implementation thereof, and thereby to protect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by assur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s and by respecting their self-determination.



Before enacting the above Ac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big hospitals for the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ith the help of the modern medicine is arguable social problem.

Now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 could refuse the meaningless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according to the strict requirements of the above Act. In order to refuse the above treatment,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must be prepared and registered in advance.

KNA insisted that the above statements should be filled out in front of the notaries but that was not accep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 E. Conclusion.

KNA are trying to expand the role of the notaries in the matters with combating terrorism, money launder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vulnerable persons.

### **(Attachment)**

For your reference, I attach the article 11 and 12 of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Article 11** (Agency for Registration of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esignate an agency for registration of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rom among the following institutions which satisfy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ration agency"):

1. A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 defined in Article 2 of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2. A medical institution;
3. A non-profit corporation or non-profit organization (referring to a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registered under Article 4 of the Assistance for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that provides services concerning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4.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s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2) Duties of a registration agency shall be as follows:

1. Affairs related to registering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2. Explaining and assisting in preparing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3. Counsell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ublicity activities related thereto;
  4. Notifying the results of the registration, amending, withdrawing, etc.,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o the Managing Agency;
  5. Other dut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cerning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3) The head of a registration agency shall record and keep the outcomes of the duties prescribed in paragraph (2) and report them to the head of the Managing Agency.
- (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to operate registration agencies and to perform their duties.
- (5) The head of a registration agency that closes or suspends operation thereof for not less than one month or resumes its operation,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6) Where a registration agency closes or suspends operation thereof for at least one month, the head of the registration agency shall transfer related records to the head of the Managing Agenc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d, That where the head of a registration agency that intends to suspend the operation obtains permission from the head of the Managing Agency by the day before the scheduled date for suspending operation, he/she may directly keep the related records.
- (7)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designating registration agencies, recording, keeping and reporting the outcomes of dutie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the closure of busines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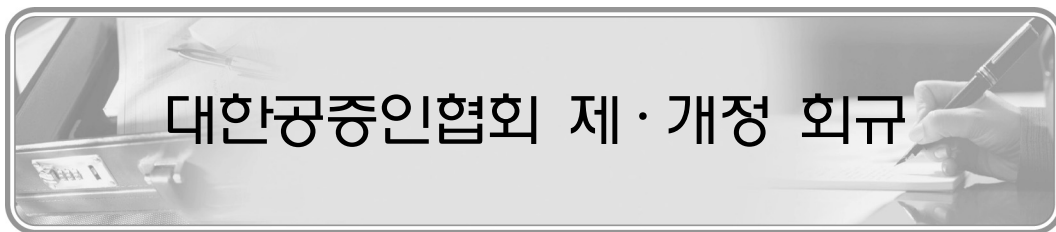
**Article 12** (Preparation, Registration, etc., of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1) A person who intends to prepare an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parer") shall prepare it directly according to this Article.
- (2) A registration agency shall fully explain the following matters to a preparer before he/she prepares an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shall obtain confirmation from the preparer that he/she has understood the details thereof:
  1.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of implement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making a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2. Matters concerning selecting and using hospice care;
  3. Matters concerning the validity and invalidity of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4. Matters concerning preparing, registering, keeping and notifying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5. Matters concerning amending and withdrawing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subsequent measures;
  6.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3) An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2. Using hospice care;
  3. Date and time for preparation, and methods for keeping such statement;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4) The head of a registration agency in receipt of an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shall register and keep it after confirming whether it is prepared by the principal.
- (5) The head of a registration agency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Managing Agency of the result of the registration made pursuant to paragraph (4).
- (6) A person who has prepared an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amend or withdraw his/her intention at any time.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gistration agency shall modify or cancel the registration of his/her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ithout delay.
- (7) Where an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mended or withdrawn pursuant to paragraph (6), the head of a registration agency shall notify the result thereof to the head of the Managing Agency.
- (8) An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s invali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in cases of subparagraph 4, it becomes invalid from that relevant time forward:
1. Where it is not prepared in person by the principal;
  2. Where it is not prepared according to the principal's voluntary intention;
  3. Where no explanation is provided on each matter prescribed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or where no confirmation is obtained from the preparer;
  4. Where further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s prepared after preparing and registering an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9) The form of an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registration, keeping, notification, etc., of an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정 회규**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19.3.30. 제정(시행일 2019.4.1.)

**1** 제정 이유

회칙 제27조의2에 따라 협회 상설기구로서 협회장 및 감사의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2** 제정 규칙 전문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규칙 제7호  
2019.3.30. 제정  
(시행일 2019.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제27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위원회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선거일 공고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2.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3. 조기투표 및 본투표 시행에 관한 사항
4. 개표에 관한 사항
5.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거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각 호는 병과할 수 있다.

1.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제 요청, 경고
2. 회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의 공지
3.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한 회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단, 협회의 임원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회장의 추천으로 총회가 선출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협회장 또는 위원회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시정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의사록 및 보고)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이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및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9.3.30.)

이 규칙은 2019.4.1.부터 시행한다.

## 개정 회규

###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

2019.11.2. 일부개정(시행일 법무부 인가 2019.11.12.)

####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지방 회원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부협회장 3명 이내를 6명 이내로 증원하면서, 전국을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서 3명 이내의 부협회장을 선출하도록 함.

#### 2 개정(변경) 내용

###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3명 이내”를 “6명 이내. 단, 수도권 지역에 사무소를 둔 회원 중에서 3명 이내를 선출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둔 회원 중에서 3명 이내를 선출 함.”으로 한다.

####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중 부협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부협회장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구성)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회장 1명</li> <li>2. 부협회장 <u>3명 이내</u></li>   <li>3. 상임이사 10명 이내</li> <li>4. 이사 20명 이내</li> <li>5. 감사 2명 이내</li> </ol>	<p>제26조(구성)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 <u>6명 이내</u>. 단, 수도권 지역에 사무소를 둔 회원 중에서 <u>3명 이내</u>를 선출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둔 회원 중에서 <u>3명 이내</u>를 선출함.</li> <li>3. -----</li> <li>4. -----</li> <li>5. -----</li> </ol>

##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1.2. 일부개정 (시행일 2020.1.1.)

###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회칙 제9조제7호는 회원의 의무 중 하나로 공증사무 처리현황을 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는바, 차제에 회원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를 협회장에게도 우편 등으로 그 달 16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함.

### 2 개정(변경) 내용

####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회원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공증업무처리현황을 그대로 출력하여 공증인의 직인을 날인한 후 그 달 16일까지 협회장에게 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신설)

이 규칙은 2020.1.1.부터 시행한다.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4(실적회비) ①~④ (생략) &lt;신설&gt;</p>	<p>제13조의4(실적회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회원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공증업무처리 현황을 그대로 출력하여 공증인의 직인을 날인한 후 그 달 16일까지 협회장에게 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2019. 1. 1. ~ 2019. 12. 31.)

## I. 공증법령 제·개정 의견 제시

### 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019.1.10.자)

□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공증인법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협회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19.1.10. 법무부에 제출함.

####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19-5호(시행 2019.1.10.)〉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공증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귀 부 문서번호 법무과-12574(협회 접수 2019.1.7.)와 관련입니다.

2.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공증인법」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귀 부가 마련한 「공증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18106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2019.1.17.자)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증인법 제87조 벌금형 상한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협회는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현재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

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광고가 번역업체 등에 의하여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취볼 때, 현행 공증인법 제87조 벌칙 수준으로는 그 범죄예방효과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법정형 전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19.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14호(시행 2019.1.17.)>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제목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106호) 관련 의견 제출

공증인법 제87조의 벌금형의 상한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106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본 협회는 기본적으로 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합니다.
2.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

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광고가 번역업체 등에 의하여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현재의 공증인법 제87조의 벌칙 수준으로는 그 범죄예방효과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왕 공증인법 제87조에 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검토할 것이라면, 우리 협회는 그 기회에 국회가 공증인법 제87조의 법정형 전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4. 이상과 같이 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입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공증인법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의견서 회신(2019.3.19.자)

- 행정청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령정비 사업인 ‘신고제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제처가 그 대상 중 하나로 공증인법 제15조의3제1항(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및 변경 신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법무부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또는 변경 신고 시 수리간주 규정 또는 수리의무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협회는 수리의무규정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추가로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 시에는 협회를 경유하여 줄 것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 수리 시에는 협회에도 반드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2019.3.19. 법무부에 회신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19-23호(시행 2019.3.19.)>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공증인법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및 변경 신고(공증인법 제15조의3제1항)의 수리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수리간주 규정을 둘 것인지 수리의무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 협회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본 협회는 수리간주 규정을 두는 방식과 수리의무 규정을 두는 방식 중에서 수리

의무 규정을 두는 방식에 찬성합니다.

2. 수리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신고 수리 절차가 지연될 경우에 입게 될 신고인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수리간주 규정을 두게 되면 신고인에게 통지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도 통지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장이 당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지정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장이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제대로 감독 또는 관리를 할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수리간주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수리의무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신고 수리의 지연에 따른 피해를 막는 것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3.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본 협회는 공증인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하는 이른바 의무가입단체이면서(공증인법 제77조의3제1항), 법무부장관의 위탁에 따라 공증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증담당변호사는 본 협회의 준회원이자(공증인법 제77조의3제2항),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인으로 보는 지위에 있으므로(공증인법 제15조의5), 본 협회를 거쳐 신고하도록 공증인법 제15

조의3제1항의 ‘소속지방검찰청을 거쳐’를 ‘소속지방검찰청과 대한 공증인협회를 거쳐’로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수리의무 규정을 두더라도 그 규정을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즉시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과 소속 검찰청 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증인법에 적합하면 즉시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수리 후에 신고인뿐만 아니라 소속 검찰청 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도 즉시 통지하도록 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4. 이상과 같이 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입법에 참고하시고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2019.5.22.자)

□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중인 일의적·한정적으로 규정된 허용기준을 포괄적 허용기준으로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사업’과 관련된 대상 중 하나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1]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협회는 개정

안의 내용이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용어가 생소하여 그 기준을 제대로 알려면 소방방재청고시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등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성능평가 기준의 변동에 따라 이미 설치한 문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규격의 문을 따로 제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19.5.22. 법무부에 제출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19-41호(시행 2019.5.22.)〉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의견 제출

국무조정실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귀 부의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1] 제3호 및 제5호 등 공증서류 보관 창고 시설 기준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협회는 다음과 같이 본 협회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본 협회는 위 개정안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2. 기존 규정과 개정안 규정을 비교할 때 실질적 차이는 제3호 나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성능평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1시간 이상의 차열성능이 있는 구조체’라는 선택적 기준이 추가된 것과 제5호를 ‘창고 안의 소방시설로 총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설치할 것’이라는 일의적 한정적 기준에서 ‘창고 안에 소방시설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능력단위 A급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할 것(액체계 소화기 제외)’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점입니다.
3. 기존의 해당 규칙 규정은 일반 국민이 그 규정 문언만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개정안의 규정 내용으로 일반 국민이 어떻게 하여야 기준을 지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대로 알려면 일반 국민들로서는 생소한 소방방재청고시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등을 따로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4. 그뿐만 아니라 공증창고시설은 매우 튼튼한 고착 구조물로서 쉽게 떼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

로,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성능평가 기준의 변동에 따라 이미 설치한 문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는 (신설) 나목을 선택하여 문을 제작할 가능성이 낮아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주 : 일의적 한정적 기준을 포괄적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항상 규제 완화의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의문입니다).

5. 또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1] 제3호 및 제5호를 개정하게 된다면, 위 개정안 내용에 추가하여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1] 제5호에 ‘창고 안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 공증사무소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나오는 경우에 공증창고 천장에 소방방재청고시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증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공증창고에는 서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액체계(液體系) 소방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6. 이상과 같이 위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1] 제3호 및 제5호에 대

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입법에 참고하시고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공증인 수수료 규칙 협회 개정안 제시 (2019.7.11.자)**

□ 2010년도에 개정된 이후 9년째 정체되어 있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대하여, 협회는 그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협회 차원의 개정안을 2019.7.11.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안에 협회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19-56호(시행 2019.7.11.)>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 개정안 제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년도에 개정된 이후 9년째 정체되어 있는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대하여 그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우리 협회 차원의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 귀 부에 개정의

견을 제시하오니 공증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동 규칙 개정안에 협회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① 등본 인증 및 재산목록 작성 등과 같이 입법불비한 사항들의 규정화, ② 현행 공증법령상 당연히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들의 명문화, ③ 현실적인 공증업무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증인의 노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수수료가 낮은 사항들의 현실화, ④ 수수료 등의 면제범위 확대 및 주주총회 참석 검사 수수료 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등 수수료의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붙임 :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 개정안 1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 개정안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1985.8.1., 2010.2.5.&gt;</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gt;</p>	<p>표현을 정리함.</p>												
<p>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lt;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gt;</p>	<p>제2조(법률행위 등에 관한 증서의 작성수수료) ①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p>	<p>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를 참조하여 현 실정에 맞게 수수료 구간과 수수료 액을 정비하고, 어음 수표 공정증서에 관한 것을 분리 규정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200만원까지</td> <td>1만1천원</td> </tr> <tr> <td>500만원까지</td> <td>2만2천원</td> </tr> <tr> <td>1천만원까지</td> <td>3만3천원</td> </tr> <tr> <td>1천500만원까지</td> <td>4만4천원</td> </tr> <tr> <td>1천500만원초과시</td> <td>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td> </tr> </tbody> </table>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00만 원까지는 3만 원</li> <li>2.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까지는 4만5천 원</li> <li>3.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까지는 7만 원</li> <li>4. 2천만 원 초과 3천만 원까지는 9만 원</li> </ol>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p>[전문개정 1971.2.12.] [제목개정 2010.2.5.] &lt;신 설&gt;  &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3천만 원 초과시에는 초과액의 1만분의 20에 9만 원을 더한 금액. 다만, 5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li> </ol> <p>&lt;제목 개정, 개정, 호 분류 신설&gt;</p> <p>② 법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또는 수표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u>①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한다. &lt;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6.12.31., 2010.2.5.&gt;</u>  <u>② 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 다만, 1장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본다. &lt;개정 1979.6.15., 2010.2.5.&gt;</u>                      [제목개정 2010.2.5.]</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어음 또는 수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을 준용한다. &lt;항 신설&gt;</p> <p>제3조(증서의 장수에 따른 부가수수료)  <u>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더한다. &lt;제목 개정, 개정&gt;</u></p> <p>② 삭제</p> <p>제3조의2(부속서류의 장수 등에 따른 부가 수수료) 법률행위에 대한 증서를 작성할 때 증서에 연철하는 부속 서류 1장당 1,000원을 부가수수료로 받는다. &lt;조문 신설&gt;</p> <p>제3조의3(촉탁인 수 등에 따른 부가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부가수수료로 받는다.                      1. 촉탁인의 수가 1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인마다 1만 원                      2. 공증인법 제28조에 따라 통역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2만 원                      3. 공증인법 제29조에 따라 참여인을 참여시킨 경우에는 그때마다 2만 원</p>	<p>9년만의 수수료 현실화</p> <p>현실적으로 1행 당 30자 이상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므로 1장에 대한 개념 정의가 따로 필요 없음.</p> <p>부속서류에 대한 간인, 보관 및 복사 수수료</p> <p>촉탁인의 수가 늘어날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될 경우, 통역인을 사용할 경우, 참여인이 참여시킬 경우 및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시킬 때에는 그렇지 아니할 경우와 비교할 때 공증인의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므로 그만큼 늘어나는 업무량에 따른 부가 수수료</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제4조(가액결정의 표준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p>	<p>4. 공증인법 제30조에 따라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될 경우에는 그때마다 1만 원 5. 공증인법 제32조에 따라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시킨 경우에는 그때마다 2만 원 &lt;조문 신설&gt;</p>	
<p>제5조(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전문개정 1971.2.12.]</p>	<p>제4조(가액결정의 표준시) &lt;현행과 같음&gt;</p> <p>제5조(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lt;개정&gt;</p>	<p>제31조와의 중복을 고려하여 개정</p>
<p>제6조(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lt;신 설&gt;</p>	<p>제6조(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①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인의 급부의 가액만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lt;항 신설 개정&gt;</p> <p>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의 급부의 가액을 알 수 없지만 그 상대방의 급부의 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급부의 가액을 촉탁인의 급부의 가액으로 한다. &lt;항 신설&gt;</p>	<p>항을 분리하여 규정을 정비함.</p>
<p>제7조(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p>	<p>제7조(부수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의 취급) ①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p>	<p>기존에 해석에 의하여 적용되던 것을 명확히 규정함.</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의 수수료를 산정한다. &lt;제목 개정, 항 신설 개정&gt;</p> <p>② 제1항의 경우에 주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산정할 수 없지만 부수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제13조의 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제2조의 수수료를 산정한다. &lt;항 신설&gt;</p> <p>③ 제2항의 경우에 서로 주중관계가 없는 부수된 법률행위가 여러 개인 때에는 각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주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lt;항 신설&gt;</p>	
<p>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lt;개정 2010.2.5.&gt; [제목개정 2010.2.5.]</p>	<p>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lt;현행과 같음&gt;</p>	
<p>제9조(지역권 설정의 가액)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5.]</p> <p>&lt;신 설&gt;</p>	<p>제9조(지역권 설정의 가액) &lt;현행과 같음&gt;</p>	
	<p>제9조의2(물건 인도의 가액)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p>	<p>입법 불비이던 부분을 보완</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①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 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lt;개정 1979.6.15., 2010.2.5.&gt;</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1979.6.15.&gt;</p>	<p><u>그 물건 가액의 10분의 5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u></p> <p><u>&lt;조문 신설&gt;</u></p> <p>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lt;현행과 같음&gt;</p>	
<p>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p>	<p>제11조(쌍방 촉탁인 중 일방의 가액의 산정 불능의 경우) &lt;제목 개정&gt; &lt;현행과 같음&gt;</p>	
<p>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 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0.2.5.&gt;</p>	<p>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lt;현행과 같음&gt;</p>	<p>9년만의 수수료 현실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와 균형을 맞춤)</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u>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 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u> &lt;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06.12.14.&gt;</p>	<p>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u>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5천만 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u> &lt;개정&gt;</p>	<p>집합건물 관련 수수료 규정을 단 순화하고 현실화 함.</p>										
<p>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u>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이하 “<u>집합건물법</u>”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lt;개정 1991.10.7., 1996. 12.31., 2010. 2.5.&gt;</p>	<p>제13조의2(집합건물관리단규약에 관한 증서) ①「<u>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이하 “<u>집합건물법</u>”이라 한다)에 따른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집합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하여 제2조에 따른다. &lt;제목 개정, 개정&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전유부분의 개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td> <td>4천400원</td> </tr> <tr> <td>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td> <td>2천300원</td> </tr> <tr> <td>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td> <td>1천700원</td> </tr> <tr> <td>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td> <td>1천100원</td> </tr> </tbody> </table>	전유부분의 개수	수수료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천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천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1천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천100원		
전유부분의 개수	수수료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천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천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1천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천100원											
<p>② <u>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u> &lt;개정 1991. 10.7., 1996.12.31.&gt;</p>	<p>② <u>규약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u> &lt;개정&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지내 건물의 동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td> <td>9천원</td> </tr> <tr> <td>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td> <td>4천원</td> </tr> </tbody> </table>	단지내 건물의 동수	수수료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9천원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4천원						
단지내 건물의 동수	수수료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9천원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4천원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 원)으로 한다. &lt;개정 1991.10.7., 2010.2.5.&gt;</p> <p>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6천원으로 한다. &lt;개정 1991.10.7., 1996.12.31.&gt; [본조신설 1986.12.24.] [제목개정 2010.2.5.]</p>	<p>③ &lt;삭 제&gt;</p> <p>④ &lt;삭 제&gt;</p> <p>⑤ &lt;삭 제&gt;</p>	
<p>제14조(승인증서 등의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무기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lt;개정 1986.12.24., 2010.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인허가 또는 동의</li> <li>2.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li> <li>3.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li> <li>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li> </ol> <p>[제목개정 2010.2.5.] &lt;신 설&gt;</p>	<p>제14조(승인증서 등의 작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인, 허가 또는 동의</li> <li>2. &lt;현행과 같음&gt;</li> <li>3.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회</li> <li>4.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증서로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lt;항 신설 개정&gt;</li> </ol> <p>② 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의 수</p>	<p>유언의 전부나 일부의 '취소'는 '철회'의 오기로 보여 바로 잡았고, 표현을 정비하며 항을 분리함.</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① <u>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만5천 원으로 한다.</u> &lt;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gt;</p> <p>② <u>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 5천 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u> &lt;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6.12.31., 2010.2.5.&gt;</p>	<p><u>수료는 당해 기존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u> &lt;항 신설&gt;</p> <p>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① <u>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0만 원으로 한다.</u> &lt;개정&gt;</p> <p>② <u>제1항의 경우에 1시간에 미달한 수수료가 생긴 때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u> &lt;개정&gt;</p>	<p>사실에 관한 증서의 현실적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수료가 극히 비현실적이어서 전혀 활성화가 되지 못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와 법조 경력 10년 차 이상의 변호사가 받는 시간당 자문료 및 공증사무소의 실정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함.</p>
<p>제16조(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제15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1979.6.15.&gt;</p>	<p>제16조(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의 특례) &lt;제목 개정&gt; &lt;현행과 같음&gt;</p>	
<p>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u>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액에 의한다.</u> &lt;개정 2010.2.5.&gt;</p>	<p>제17조(법률행위와 사실에 관하여 하나의 증서로 작성하는 경우) <u>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하나로 작성되는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법률행위에 관한 수수료와 사실에 관한 수수료를 합산한다.</u> &lt;제목 개정, 개정&gt;</p>	<p>법률행위와 사실에 관한 것이 서로 부수적 관계가 아니라 병존하는 관계이므로 각 수수료를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임.</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제18조(여러 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lt;개정 2010.2.5.&gt; [제목개정 2010.2.5.]</p>	<p>제18조(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의 부가수료)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은 사실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준용한다. &lt;제목 개정, 개정&gt;</p>	<p>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과 같은 취지임.</p>
<p>제19조(위임장등) ① 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 원으로 한다. &lt;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gt;</p>	<p>제19조(거절증서 등) 거절증서 작성의 수수료, 재산목록 작성의 수수료와 파산재산의 봉인 및 봉인 제거와 그 조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 재산의 조사나 봉인 또는 봉인 해제와 증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제15조의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lt;제목 개정, 항 삭제&gt;</p>	<p>거절증서 작성, 재산목록 작성이나 파산재산의 봉인 및 봉인 제거와 그 조서 작성은 일종의 사실에 관한 증서 작성이므로 제15조의 수수료와 같게 맞추고, 위임장, 수취서, 초청장은 그 증서 작성 서식 없고 현실에서 실제로 그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굳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 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lt;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6.12.31., 2010.2.5.&gt;</p>	<p>② &lt;삭 제&gt;</p>	
<p>③ 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 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 원을 더한다. &lt;신설 1996.12.31.&gt;</p>	<p>③ &lt;삭 제&gt;</p>	
<p>제19조의2(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상법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는 경우에는 그</p>	<p>제19조의2(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등) ① 공증인이 상법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의 조사·보고의 수</p>	<p>상법상 무액면 발행 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으로 고침. 또한 5천만 원까지 100만 원이고, 13억 8324만 원 이상이면 300만 원 이던 수수료를 낮추어 1억 원까지 100만 원으로 하고 30억 원</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 원까지는 100만 원으로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목개정 2010.2.5.]</p> <p>&lt;신 설&gt;</p>	<p>수료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억 원까지는 100만 원</li> <li>2. 10억 원까지는 150만 원</li> <li>3. 20억 원까지는 200만 원</li> <li>4. 30억 원까지는 250만 원</li> <li>5. 30억 원 초과는 300만 원</li> </ol> <p>&lt;개정, 호 신설&gt;</p> <p>② 총회 등의 의사록을 인증하기 위하여 결의 장소에 참석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제3항 제1호에 따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회사의 총회 등의 경우는 자본금</li> <li>2.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 조합 총회의 경우는 조합사업 대상 토지의 총가액</li> <li>3. 기타 자산이 있는 사단법인의 총회 등의 경우는 자산의 총액</li> <li>4.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경우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li> </ol>	<p>이 초과하여야 300만 원이 되도록 촉탁인의 부담을 완화함.</p> <p>기존에 지침으로 시행되던 것을 명문화 하고, 기존에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문화함.</p>
<p>&lt;신 설&gt;</p>	<p>제19조의3(유언의 특례) ①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에 관한 증서의 작성의 수수료는 그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2조의 구별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그 금액이 30만 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한다.</p> <p>② 제1항 외의 유언에 관한 증서의 작성의 수수료는 유언사항마다 10만 원으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언을 하나의 증서로 작성할 경우에 증서 작성의</p>	<p>유언 공증의 경우에는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 절차가 복잡하고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목적가액을 계산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재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언사항의 경우에는 부가수수료를 정함</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u>&lt;신 설&gt;</u></p> <p>제20조(인증행위) ① 인증의 수수료는 <u>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u>                      &lt;개정 1996.12.31., 2006.12.14., 2010.2.5.&gt;</p> <p>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lt;신설 2010.2.5.&gt;</p> <p>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lt;신설 2010.2.5.&gt;</p> <p>④ 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 원으로 한다. &lt;개정 1991.10.7., 1993.2.24., 2010.2.5.&gt;                      [전문개정 1986.12.24.]</p> <p>제21조(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p>	<p>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합산한다.                      &lt;조문 신설&gt;</p> <p>제19조의4(위임계약 등의 증서의 특례) 후견인이나 수임인의 사무가 피후견인이나 위임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 후견계약이나 위임계약의 급부의 가액은 재산의 가액을 최저로 한다.                      &lt;조문 신설&gt;</p> <p>제20조(인증행위) ① <u>법률행위를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는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u> &lt;개정&gt;</p> <p>② <u>법률행위를 적은 사서증서에 대한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수수료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u> &lt;개정&gt;</p> <p>③ <u>법률행위를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는 제1항의 수수료의 배액으로 하되,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u> &lt;개정&gt;</p> <p>④ &lt;삭 제&gt;</p> <p>제21조(정관 등의 인증)                      &lt;제목 개정&gt; ① &lt;현행과 같음&gt;</p>	<p>법률행위를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 수수료 상한을 9년 전 수준 그대로 동결하고, 사실을 적은 사서증서에 관한 것을 분리 규정함.</p> <p>이는 등기에 필요한 의사록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촉탁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반 의사록 인증 수수료 규정 등을 적용하면 될 것임.</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 원까지는 8만 원으로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lt;개정 1979.6.15., 1985. 8.1., 1991.10.7., 1993.2.24., 1996. 12.31., 2006.12.14.&gt;</p> <p><u>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 원으로 한다.</u> &lt;개정 1974.8.26., 1979. 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gt;</p> <p>[전문개정 1971.2.12.] [제목개정 2010.2.5.]</p>	<p><u>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의안당 3만 원으로 한다.</u> &lt;개정&gt;</p> <p><i>(또는 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8만 원으로 한다. &lt;개정&gt;)</i></p>	<p>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 등까지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p> <p><i>(의사록 인증 수수료를 8만 원으로 하더라도 일본의 의사록의 인증 수수료인 23,000엔에 비하면 1/3 수준에 불과함)</i></p>
<p><u>제21조의2(위임장의 인증)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 원으로 한다.</u> [본조신설 2010.2.5.]</p>	<p><u>제21조의2(대리권증명에 관한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 소송대리 또는 등기 위임에 관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제출할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는 5천 원으로 한다.</u> &lt;제목 개정, 개정&gt;</p>	<p>위임장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던 것을 대리권증명에 관한 사서증서로 표현하고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수수료를 현실화 함.</p>
<p><u>&lt;신 설&gt;</u></p>	<p><u>제21조의3(사실에 관한 사서증서의 인증)</u></p> <p><u>① 법률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 원으로 한다.</u></p> <p><u>② 제1항의 사실을 적은 사서증서에 대한 법 제57조의2에 따른 인증의 수수료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다.</u></p> <p><u>③ 제1항의 사실을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는 제1항의 수수료의 배액으로 한다.</u></p> <p><u>④ 사실에 관한 것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에 관하여 하나로</u></p>	<p>종전에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 수수료를 산정하는 실무관행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법률행위를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수수료와 구별하여 따로 규정함.</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lt;신 설&gt;</p>	<p>만든(첨부 형식 포함)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는 사실을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와 법률행위를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 수료를 합산한다. &lt;조문 신설&gt;</p>	
<p>&lt;신 설&gt;</p>	<p>제21조의4(번역문 인증) 국문이나 외 국문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국문으로 번역한 문서에 대하여 원문과 상위 없 음을 서약하는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3만 원으로 한다. &lt;조문 신설&gt;</p>	<p>종전에는 자침으로 인정되던 번역문에 대한 인증 수수료를 수수료 규칙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 신설함. 이론상 외국어로 적은 사실에 관한 인증 수수료인 6만원과 같게 하여야 하나, 축탁인 부담 경감 차원에서 3만 원으로 정함.</p>
<p>&lt;신 설&gt;</p>	<p>제21조의5(사서증서등본 인증) ① 사서 증서에 대한 등본의 인증의 수수료는 2만 원으로 한다. ② 외국문으로 적어서 한 사서증서 등본의 인증의 수수료는 4만 원으로 한다. &lt;조문 신설&gt;</p>	<p>종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지시로 인정되던 것을 명문화하였고, 수수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현실화 함.</p>
<p>&lt;신 설&gt;</p>	<p>제21조의6(인증의 부가수수료) ① 인증에 관하여는 그 인증서의 장수에 따라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5를 부가수수료로 받는다. ② 공증인이 보존하는 인증서나 인증서사본에 부속서류를 연철한 경우에는 제3조의2에서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5를 부가수수료로 받는다. ③ 인증을 할 경우에 제3조의3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의3에서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5를 부가수수료로 받는다.</p>	<p>종래 증서작성의 수수료와 연동하여 정한 인증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해석상 인정되던 것을 명문화 함.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과 같은 취지임.</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 원으로 한다. &lt;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10.2.5.&gt;</p>	<p>&lt;조문 신설&gt;</p> <p>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2천 원으로 하되, 1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장당 200원을 가산한다.</p> <p>&lt;개정&gt;</p>	<p>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장수 초과에 따른 간인 등 노력 비용을 추가함.</p>
<p>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 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 원을 더한다. &lt;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2010.2.5.&gt;</p>	<p>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5천 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5천 원을 더한다. &lt;개정&gt;</p>	<p>9년만의 수수료 현실화</p>
<p>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 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5.] &lt;신 설&gt;</p>	<p>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① &lt;현행과 같음&gt;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1만 원으로 한다. &lt;개정&gt; ③ 영 제13조에 따른 통지의 수수료는 5천 원으로 한다. &lt;항 신설&gt;</p>	<p>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입법불비적이던 영 제13조에 따른 통지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p>
<p>제24조(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①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p>	<p>제24조(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증서류를 근거로 정본이나 등본을 교부할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서의 정본의 교부 수수료는 1장에 2천 원</p>	<p>효력이 크게 다른 증서의 정본과 등본의 교부 수수료를 달리하고, 현실화함.</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200원으로 한다. &lt;개정 1971. 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gt;</p> <p>②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1979. 6.15.&gt; [제목개정 2010.2.5.]</p>	<p>2. 증서·인증서의 등본의 교부 수수료는 1장에 1천 원.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5백 원</p> <p>3. 증서·인증서·인증서사본에 연결된 부속서류의 등본 교부 수수료는 1장에 1천 원.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5백 원</p> <p>&lt;개정. 항 삭제. 호 신설&gt; ② &lt;삭제&gt;</p>	<p>위에서 제3조제2항을 삭제한 것과 같은 이유로 삭제.</p>
<p>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 원으로 한다. &lt;개정 1971. 2.12., 1974.8.26., 1979.6.15., 1993.2.24., 1996.12.31., 2006. 12.14.&gt; [제목개정 2010.2.5.]</p>	<p>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2천 원으로 한다.&lt;개정&gt;</p>	<p>9년만의 수수료 현실화</p>
<p>제26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p>	<p>제26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lt;현행과 같음&gt;</p>	
<p>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p>	<p>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①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p>	<p>종전 규정 내용을 항을 나누어 규정함.</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5.] <u>&lt;신 설&gt;</u>(중전 내용을 나누어 규정)</p> <p>제28조(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lt;개정 2010.2.5.&gt; [제목개정 2010.2.5.]</p>	<p>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lt;개정, 항 신설&gt;</p> <p>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로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lt;항 신설&gt;</p> <p>제28조(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lt;현행과 같음&gt;</p>	
<p>제29조(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lt;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당 4시간 이내에는 5만 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한다.</li> <li>2. 철도임 또는 선임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li> <li>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실비액</li> </ol>	<p>제29조(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당 <u>1시간 당 10만 원. 다만, 1시간에 미달한 우수리 시간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lt;개정&gt;</u></li> <li>2. &lt;현행과 같음&gt;</li> <li>3. &lt;현행과 같음&gt;</li> </ol>	<p>공증인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당을 현실화함.</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4. 숙박비 실비액 [전문개정 1971. 2. 12.] [제목개정 2010. 2. 5.]</p> <p>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2.5.]</p> <p>&lt;신 설&gt;</p> <p>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5.]</p> <p>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0. 2.5.&gt;</p> <p>제33조(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lt;개</p>	<p>4. &lt;현행과 같음&gt;</p> <p>제30조(수수료 등의 증·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lt;제목 개정, 개정&gt;</p> <p>제30조의2(수수료 등의 절사) 이 규칙에 따라 수수료 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1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다. &lt;조문 신설&gt;</p> <p>제31조(수인의 촉탁인의 연대납부 의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lt;제목 개정&gt;</p> <p>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lt;현행과 같음&gt;</p> <p>제33조(수수료등의 청구) &lt;현행과 같음&gt;</p>	<p>본 규칙을 정하는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를 임의로 증액할 수 없도록 명정함.</p> <p>수수료 등의 백원 단위 미만을 면제함.</p> <p>제목의 표현을 정비함.</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정 2010.2.5.&gt;</p> <p>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p> <p>[전문개정 2010.2.5.]</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0.2.5.&gt;</p> <p>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lt;개정 1979.6.15., 1985.8.1., 2010.2.5.&gt;</p> <p>③ 공증인은 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lt;개정 1979.6.15., 2010.2.5.&gt;</p> <p>[제목개정 2010.2.5.]</p> <p>제36조(계산서의 교부) ① 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한 때에는</p>	<p>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 &lt;본문과 제1호는 현행과 같음&gt;</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3. 장애인복지법 제2호에 따른 제1급 장애인 &lt;호 신설&gt;</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2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lt;호 신설&gt;</p> <p>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 등) &lt;현행과 같음&gt;</p> <p>제36조(계산서의 교부) &lt;현행과 같음&gt;</p>	<p>수수료 등의 면제 범위를 확대함.</p>

현 행	개정 의견	비 고
<p>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2.5.&gt;</p> <p>②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lt;개정 1985.8.1., 2010.2.5.&gt;</p> <p>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u>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u> &lt;개정 2010.2.5.&gt;</p> <p>제38조(특례) 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5.]</p>	<p>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u>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나 그 부속서류의 열람과 증서의 정·등본의 교부,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 및 정본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할 수 있다.</u> &lt;개정&gt;</p> <p>제38조(특례) &lt;현행과 같음&gt;</p>	<p>표현을 정리함.</p>

**6**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2019.7.15.자)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협회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19.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19-59호(시행 2019.7.15.)>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제목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92호) 관련 의견 제출

1. 귀 위원회 문서번호 법사위-1904(시행 2019.7.11., 협회 접수 2019.7.11.)와 관련입니다.
2.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신고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공증인법」에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I. 공증업무 질의·회신

###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실효 조건 관련 질의 회신(2019.1.4.자)

#### □ 질의 내용(원문)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에 ‘채무자가 양도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하나라도 위반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자 미지급의 경우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양도담보물 임의 처분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3호(시행 2019.1.4.)〉

- 귀 법인의 질의 취지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에 ‘채무자가

양도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한다. 이 계약조항을 하나라도 위반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때 양도담보물 임의 처분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의 일종인 집행증서이고, 이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인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이 집행문입니다.
-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으면 공증인 등은 그 집행증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가, 그 내용이 집행에 적당한 것인가, 집행증서의 내용으로 보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때에는 신청인(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음이 증명되는가, 승계집행문의 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에 의하여 승계의 유무가 증명되는가 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몇 번 이상 연체한 때에는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를 즉시 지급하여

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실권약관 등의 경우에는 단순집행문을 부여하면 되나, 채무자가 양도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한다는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조항 위반이 조건이 되므로 조건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제2항, 제57조 참조).

- 따라서 본건 사안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였다는 것이 증명(※ 주 : 소명이 아닙니다)되어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서 및 합의각서 공증 수수료 질의 회신 (2019.1.4.자)

□ 질의 내용(원문)

1. 귀 협회의 문서번호 공증협 제2018-72호(2018.10.26.자) 관련입니다(2019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2호 27면~30면 참조).
2. 귀 협회의 고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의문이 있어 다시 한 번 상의를 요청드립니다.

3. 첨부된 확인서 및 합의각서의 내용을 보면
  - 1) 1항은 공사대금 2,542,509,000원, 지급금 1,227,070,900원, 잔액 1,315,438,100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 2) 2항 역시 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 3) 3항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부채소합의)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4. 따라서 본 건은 계약금원의 확인이 아니라 공사비용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계산서 발행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련한 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의 공증이므로 목적금액의 적용을 달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첨부한 동종의 사건에 대한 다른 법무법인의 공증비용 산정은 금일만이천오백원정(₩12,500원), 계산서 및 내용 첨부)으로 공증인 ○○○ 사무소가 책정한 수수료 금오십만원정(₩500,000원) 어떠한 이유로 차이가 있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6. 이에 공증수수료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질의인이 첨부한 동종의 사건에 대한 다른 법무법인 작성 인증서 및 계산서 생략]

- 이하 질의 대상 합의서 및 합의각서 내용



합의서 및 합의각서

확인인 ○○○

상기 확인인은 ----- 설비공사 및 소방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 및 합의각서를 작성합니다.

— 다 음 —

1. 위 공사의 총 대금은 금이십오억사천이백오십만구천원(₩2,542,509,000원)으로 위 금원 중 아래 금원을 확인인 ----- 공사비용 및 용역비용으로 지급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액(원)	협력업체명	비고(지급일, 기타)
1차	53,820,000	-----	30,000,000(5/10)
2차	254,250,900	-----	45,000,000(5/11)
3차	409,000,000	-----	20,000,000(5/04)
4차	195,000,000	-----	85,000,000
		-----	15,000,000
소계	912,070,900		
	315,000,000		
5차 (금회청구)			
합계	1,227,070,900		

2. 2018년 월 일 현재 잔액은 총 공사대금에서 위 표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일십삼억일천오백사십삼만팔천일백원정(₩1,315,438,100)이며, 위 금원 중 위 확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부가세포함 금일십이억이천칠백칠만구백원정(₩1,227,070,900)임을 확인합니다.

3.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확인인은 귀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부제소합의).

▷ 첨부서류 : 1.----- 2.-----

2018. . .

○○○ (인)

----- 귀중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4호(시행 2019.1.4.)〉

1. 귀사의 재심의 요청 취지를 요약하자면,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는 확인서 및 합의각서의 내용을 보면 1항은 공사대금 2,542,509,000원, 지급금 1,227,070,900원, 잔액 1,315,438,100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2항 역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3항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부제소합의)을 확약하는 내용이므로, 본 건은 계약금원의 확인이 아니라 공사비용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계산서 발행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련한 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의 공증이므로 목적금액의 적용을 달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종 사건에 대하여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공증수수료를 12,500원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협회의 공증수수료 판단기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2. 사서증서의 인증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문서의 제목이나 문서 내용의 표현에 구애되지 않고 문서 내용의 실질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귀사는 본 건 문서가 확인하는 내용과 확약하는 내용이므로 확인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 12,500원만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공증인이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

는 법무부 규칙으로 제정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근거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위 규칙 어디에도 확인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가 12,500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및 제20조(인증행위) 제1항을 종합하여 확인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로 12,500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칙 제15조는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실실험에 관한 공정증서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12,500원의 인증수수료는 순수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주 : 어떤 현상에 대하여 오감으로 체험한 것을 확인하거나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률행위 당사자들이 하는 행위를 오감으로 체험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예컨대, “甲은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경에 어디에 있는 어느 금고를 열어보니 금 1억 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丙은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경에 어디에서 甲이 乙에게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에서나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로서 법률행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주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자신이나 상대방이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 예컨대, “甲은 몇 년 몇 월 몇 일 A아파트에 대하여 乙로부터 첨부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을 확인한다.”)에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한 확인서는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느냐, 그 경우는

당연히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로서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공증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문서 제목을 ‘확인서’라고 붙이고 “甲은 몇 년 몇 월 몇 일에 乙로부터 금 1억 원을 빌리고 이자는 몇 %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乙은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甲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할 때, 공증수수료는 법률행위의 확인으로 당해 법률행위 목적가액인 2억 원(甲이 빌리는 1억 원과 乙이 변제하기로 한 1억 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금160,75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사에서 제시하신 동종의 사건에 대한 다른 공증사무소의 수수료 산정에는 그것을 담당한 직원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 및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개념에 대한 무지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건 재심의 결과,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협회의 2018.10.26.자 문서번호 공증협 제 2018-72호의 질의 회신 상의 애초 결론(공증수수료 50만 원)은 타당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주주총회 감사 선임 시 의결권 관련 질의 회신(2019.3.14.자)

□ 질의 내용(원문)

1. 상장법인 주주총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상장법인 주주총회 감사 선임 시 이용되었던 제도우보팅 제도가 2018년 폐지되면서 주주총회 감사 선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 있어서 보통결의는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한 주주는 그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발행주식 총수의 1/4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 발행주식 총수 100주, 자기주식 10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40주, 기타 50주  
⇒ 의결권 있는 주식수 : 53주

이때 발행주식 총수의 기준을 아래 안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 1안) 발행주식 총수 100주의 1/4인 25주
- 2안)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 90주의 1/4의 23주
- 3안)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53주의 1/4의 14주

※ 첨부서류 : 상장사협의회질의응답, 판례 각1부.

### ■ 상장사협의회 질의응답 ■

#### ■ 질의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일전에 상장사협의회에서 받은 책자를 바탕으로 3% 의결권 제한 계산을 해보았는데,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염치없지만 산식 흐름도를 첨부 하오니 혹여 이상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5,004,949)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사주(175,830)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4,829,119)를 기준으로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계산하면 144,873.57주입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은 144,873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44,873주 이상 보유 주주의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의결정족수 산정시 발행주식총수 및 출석주식수에서 차감하므로 감사 선임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2,038,255주입니다. 따라서 감사선임의안이 가결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509,564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입니다.

### ■ 판례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판시사항】

감사의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도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

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368조제1항, 제371조, 제409조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4.29. 선고  
2015나2061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409조는 제1항에서 감사를 주주총

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도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3% 초과 주식은 위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1,000주를 원고가 340주(34%), 소외 1이 330주(33%), 소외 2가 330주(33%)씩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소외 1, 소외 2가 참석하여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찬성으로 소외 3을 감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 소외 1, 소외 2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의 3%(30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90주인데, 위 90주 중 소외 3의 감사 선임에 찬성한 주식 수는 소외 1과 소외 2의 각 30주 합계 60주로서, 결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의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22호(시행 2019.3.14.)〉

1. 귀 법인의 질의 취지를 요약하자면, “주식 회사의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¼ 이상의 수요권 충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2. 감사 선임 관련 문제점

쉐도우보팅 제도가 일몰되면서 지난해부터 일부 상장회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치르고도 감사 선임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상법이 감사 선임을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보통결의 사항으로 하면서도(상법 제368조제1항)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놓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409조제2항). 게다가 소액주주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

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2제3항).

3. 입법 오류

여기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채우는 것보다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채우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2011년 개정을 하면서 제371조제1항에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들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78%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있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2011년에 개정된 상법 제371조에는 입법 오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4.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석주주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 계산에는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계산에는 3% 초과 주식도 찬성 주식 수에 산입한다는 해석을 하거나,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대법원 2016.8.17. 선고 2016 다 222996 판결 참조), 다수의 학자들도 이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주 : 「회사법(제3판)」 김건식의 2 박영사(2018년) 제 314쪽 등 참조). 이하에서 이 입장에 따라 설명 드립니다.

#### 5. 제시된 예)에 대한 설명

귀 법인에서 예)로 제시하신 발행주식 총수 100주, 자기주식 10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0주, 기타(※ 주 : 1주 또는 2주를 가진 주주) 50주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 드리

겠습니다. 이 때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2.7(\ast \text{ 주} : (100 - 10) \times 0.03 = 2.7)$ 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주식총수 계산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수는 2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에 필요한 요건의 하나인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주 : ‘4분의 1 이상’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4분의 1을 초과하는 수’와는 다름)’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52주의 4분의 1 이상의 수인 13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 : 따라서 제시하신 1, 2, 3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 찬성주식의 수가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비로소 감사 선임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됨은 물론입니다.

6.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감사 선임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주주에 대한 영업양도와 같은 특별결의 등에도 발생합니다. 근원적인 입법적 해결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 ④ 유증된 예금의 지급 거절 사례 관련 질의 회신(2019.5.24.자)

##### □ 질의 내용(원문)



공증인 □□□ 사무소는 2018년 9월 27일 2018년 증서 제○○○호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증자 △△△은 2019.3.29. 위 유언공증에 따라 ◎◎은행 ☆☆☆지점에 예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점은 다른 상속인들의 자료를 요구하며 예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공증인법에 따른 유언공증의 효력을 부정하는 행위로 추후 유언공증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금융감독기관에 법무부 또는 협회 차원의 항의를 하거나, 은행이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및 고율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판결사례를 남기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경위서 1통

### 경위서

수신 : 공증인 □□□ 사무소 앞

다음은 예금주 ◇◇◇님의 사망으로 본인이 상속을 받고자 2019년 3월 29일 ◎◎은행 ☆☆☆지점 방문(☎☎☎ 부지점장 상담) 및 유선(2019년 4월 5일 14시 7분 통화)로 내용 통보 후 유언자의 유언공정증서를 ◎◎은행 ☆☆☆지점[☎☎☎ 부지점장]에 fax 송부 후 ☎☎☎ 부지점장과 통화 하였으나 ☎☎☎ 부지점장은 ◎◎은행 변호사에 문의 후 지급을 할 수 없다며 통보하여 유언공

정증서[공증인 □□□ 사무소 증서 2018년 제○○○호(2018년 9월 27일)] 작성한 공증사무소로 업무 협조 요청드립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유언공정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도 지급이 어렵다는 것은 은행의 업무 기피 또는 힘없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로 추정됩니다. 왜 □□은행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한 유언공정증서도 인정을 안하여 주는 것인지,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증인을 동반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르게 실행되지 않으면 누가 비용을 써가며 유언공증을 하고, 또한 공증사무소를 신뢰하겠습니까... 변호사님의 업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6일

예금종별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	만기일	비고
정기예금	----- -----	◇◇◇	일천만 원	2019.4.18.	

주된 상속인(유언집행자)  
 생년월일 : 1960년 10월 23일  
 성 명 : ■■■ ① 유언자[故 ◇◇◇ 子]

###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42호(시행 2019.5.24.)>

### 1. 질의 요지

본건의 논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예금을 유증하였는데 유언자 사망 후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유언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은행에서 다른 상속인의 자료를 요구하며 예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것인데, 이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2. 검토

통상의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을 출금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함께 출금 신청을 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위임을 받아야 출금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유언공증으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유증권리자인 수증자(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가 함께 유언자의 예금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 가서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유언자의 기본증명서와 유언 공정증서 정본 및 유언집행자와 수증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 참고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유언 공정증서 정본을 제시하여 공동으로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고(민법 제1103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01조).

이건 사례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유언집행자에게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일일이 받으러 다녀야 한다는 것은 유언자의 뜻이나 공증을 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관하여 상속인의 대리인설, 유언자의 대리인설, 상속재산의 대표자설, 직무설, 특수한 형태의 대리인설 등이 있고, 우리 민법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1항).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가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수증자와 함께 유언자의 예금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가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와 유언 공정증서 정본 및 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예금을 출금하거나 수증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유증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 상속인들의 동의서 없이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유언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집행이라는 임무를 가진 유언집행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참조)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당해 유언이 최종 유언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출금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정되어야 할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유언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온 유언집행자와 수증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민법 제470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게 당해 유언이 최종 유언인지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최종 유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 3. 결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예금을 유증하였는데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유언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은행에서 다른 상속인의 자료를 요구하며 예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나, 법원 등기소에서 관장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논란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 ○○은행의 예금지급 거절 행태는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 ○○은행이 끝내 위와 같이 예금지급을 거절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예금액과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연 15%)까지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은행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서식의 문구 변경 가능 여부 관련 질의 회신 (2019.6.5.자)

### □ 질의 내용(원문)

현재 대리인에 의한 공증촉탁을 위한 공증위임장 양식 상단은 대리인을 수임인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수임인’이라는 법률용어가 익숙치 않아 자주 수임인란을 빈칸으로 두고 위임장을 작성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임인이 공증변호사를 가르키는 용어인줄 알았다는 고객도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중 ‘수임인’을 ‘수임인(대리인)’이라고 고쳐 적은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무 공증서식규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미하게 변경한 서식의 제공이 허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증인의 판단으로는 공정증서상 표기방식은 수임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임인(대리인)’으로 서식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협회의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고 싶어 질의합니다.

###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48호(시행 2019.6.5.)〉

#### 1. 현행 서식규칙상의 위임장 양식

공증인은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식규칙'이라고만 합니다.)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서식규칙 제2조), 공증인이 서식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서식규칙 제3조).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식규칙상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서식규칙 제14조제1항), 서식규칙상의 위임장 양식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이다.



(2) 별지 제10호의2서식 :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사용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0.2.5>

<b>위 임 장</b>				수입인지 50원
수입인 (대리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따른 다음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 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액면	금			원정
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발행인		
양도일		수취인		
지급일		양도인		
지급장소		양수인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주소	인 감	
위임인	성명	주소	인 감	
위임인	성명	주소	인 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3) 별지 제10호의3서식 : 사서증서 인증 등에 사용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0.2.5>

<h2 style="margin: 0;">위 임 장</h2>		수입인지 50원
수입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다음</div>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주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type="text" value="인 감"/>
위임인	성명  주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type="text" value="인 감"/>
위임인	성명  주소	<input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type="text" value="인 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4) 별지 제10호의4서식 : 집행문부여 신청 등에 사용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0.2.5>

<b>위 임 장</b>		수입인지 50원
수입인 (대리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에서 다음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사무소</p> <p><input type="checkbox"/> 집행문부여</p> <p><input type="checkbox"/> 정본교부</p> <p><input type="checkbox"/> 등본교부</p> <p><input type="checkbox"/> 원본열람</p> </div> <div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p>다음 증서 등부</p> </div> <div style="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제 호에 대한</p> <p style="text-align: center;">통 통 통 건</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div> </div>		
위임인	성명  주소	인 감
위임인	성명  주소	인 감
위임인	성명  주소	인 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2. 위임장 양식 중 ‘수임인’을 ‘수임인(대리인)’으로 고쳐적는 것이 가능한지

-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이란 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하여, 대리인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 등과 관련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위임사무가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한 위임은 특약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하게 될 정도로 위임과 대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 (2)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데, 이러한 촉탁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법 제30조 참조),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위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31조제1항, 제2항 참조). 대리인에 의한 촉탁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와 관련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이 위 서식규칙상의 위임장 양식 4가지이다(시행령 제7조제

2항, 서식규칙 제2조).

위 서식규칙상의 위임장 양식 중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0호의3 서식에는 ‘수임인’으로만 되어 있으나,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별지 제10호의4서식에는 ‘수임인(대리인)’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 전 서식규칙(1990.11.30. 제정, 1991.1.1. 시행 법무부령 제345호)에는 오히려 별지 제10호의1서식(현행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수임인(대리인)’으로 되어 있었고,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별지 제10호의3서식에는 ‘수임인’으로만 되어 있었다. 공증실무상 위 양자를 구별할 별다른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구별하여 규정한 것은 단순한 입법상의 불비 내지 오류로 보인다.

- (3) 현행 서식규칙상의 위와 같은 위임장 양식에 비추어 볼 때 질의의 취지는 위 별지 제10호의서식 또는 위 별지 제10호의3서식 상의 ‘수임인’을 ‘수임인(대리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①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법률행위 기타의 사무를 처리를 상대방(수임인)에게 위임하고 상대방(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편무·무상·승낙·불요식의 계약으로, 위임사무가 법률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통상 수임인에게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하게 되는데, 서식규칙상의 위임

장 역시 위임인(촉탁인)과 수임인(촉탁 대리인) 간의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수임인에게 수여된 촉탁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에 해당되는 점, ② 서식규칙상 ‘수임인’과 ‘수임인(대리인)’을 구별할 별다른 실익이 없고 이는 단순한 입법의 불비 내지 오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③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별지 제10호의4서식상의 ‘수임인(대리인)’이라는 표현은 위임계약상의 수임인이 공증인법상의 촉탁대리인에 해당된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0호의4서식 각 위임장 본문에는 모두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라는 표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별지 제10호의서식 또는 위 별지 제10호의3서식 상의 ‘수임인’을 ‘수임인(대리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6 조합원 총회 등 참석인증 수수료 관련 질의 회신(2019.6.5.자)

### □ 질의 내용(원문)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검사의 수수료) 참석인증을 위하여 공증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그 검사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의하면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 원까지는 100만 원으로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되고, 재건축사업에서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정비사업조합에서의 조합원은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의 지위와 유사한 부분이 있고, 주주의 출자액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것에 비추어 정비사업조합에 있어 조합원들은 기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출자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건물을 분양받기 때문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정한 법인의사록 참석인증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정비사업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종전 자산 평가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감정평가업

체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조합원총회에서는 위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면 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이라면 통상 조합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하는 조합원설립동의서에 개략적인 조합원 전체 종전자산평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삼으면 되는지요?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49호(시행 2019. 6. 5.)〉

1. 귀 법인의 질의 취지를 요약하자면,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 대한 참석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합원 종전자산의 총평가액으로 보고, 협회 형식의 사단법인 등의 사원총회에 대한 참석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자본총액으로 보아도 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2. 답변

가. 관련 규정

의사록 참석 인증을 위한 검사의 수수료에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제1항 “참석인증을 위하여 공증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그 검사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 2에 따른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 “……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 원까지는 100만 원으로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규칙 제13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이하 생략)”

같은 규칙 제26조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같은 규칙 제27조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규칙 제29조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일당

4시간 이내에는 5만 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한다.

2. 철도임 또는 선임

1등 여객운임. 다만 (이하 생략)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실비액

4. (생략)

같은 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나. 검토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나 협회 형식의 사단법인 등의 사원총회에 대한 참석인증을 함에 있어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제1항과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려는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이를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니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보아 5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검사의 수수료를 100만 원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증인 수수료 규

칙 제2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조합의 사업비 총액 등이나 사단법인의 자산 총액 등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가장 유사한 사항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수수료를 산정할 것인지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에 관한 수수료 산정에 대한 견해가 갈릴 수 있는데, 현재 공증실무에서는 대체로 후자의 입장에 따라 처리하고 있고, 2017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후자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향후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시 반영될 것으로 보임).

재건축조합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조합의 경우에는 통상 그 조합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총액 또는 사업대상 부동산 공시지가 총액 또는 출자금 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의 구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합원 종후자산의 총평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종후자산의 총평가액, 이를 알 수 없고 종전자산의 총평가액과 총사업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총평가액에서 총사업비용을 더한 금액, 총사업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의 구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 결론**

따라서 귀 법인이 질의하신 것처럼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 대한 참석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합원 종전자산의 총평가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 형식의 사단법인 등의 사원 총회에 대한 참석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귀 법인이 질의하신 ‘자본총액’이 아니라) ‘자산의 총액’(※주: 민법 제49조제2항제6호 참조)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의 구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7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 (2019.6.5.자)**

**□ 질의 내용(원문)**

**1. 조회할 사항**

-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았는데 촉탁인이 인감증명서를 1부만 제출한 경우
  - 인감증명서를 사본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정증서에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하는 경우
  - 통상적인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에는 간인을 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위 회신에 있어, 공증인법 등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반 공증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업무 관행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증취지**

공증 절차에 있어 업무 관행을 파악하여 1심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입증하고자 합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50호(시행 2019.6.5.)〉

1.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았는데 촉탁인이 인감증명서를 1부만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사본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같은 날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인감증명서 포함)는 1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을 첩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제9호 서식의 증

명서원용 서면(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을 작성하여 편철하게 됩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14조). 별도의 증명서 사본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법규정과 달리 행해지는 관행은 없습니다.

참고로 촉탁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원본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공증사무소에 따라서는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인감증명서를 전자복사함)을 작성하고 원본 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제 18호 서식의 원본환부 서면(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 편철하고 원본을 환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공증인법 시행령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그러한 업무처리방법이 현행 규정상으로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인감증명서는 얼마든지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원본을 환부하면서 사본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본을 제출받아 첨부하는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워 사후에 이와 관련하여 공증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상업등기나 부동산등기절차에서처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서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6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참조).

## 2. 공정증서에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하는 경

우, 통상적인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에는 간인을 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질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공정증서에 첨부하게 되는 경우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공정증서의 부속서류로서 공증인은 공정증서와 부속서류 사이와 부속서류 상호 간에 반드시 직인으로 간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관행은 없습니다(참고로 촉탁인은 간인하지 않습니다).

-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40조제2항).

\* 첨부서식 (1) 제9호서식 증명서원용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2.5>

<b>증명서원용</b>											
번호	증서·등부                      년    제    호										
증서명											
위 건과 관련하여 촉탁인 확인 등에 관한 증명서류 등은 동시에 촉탁된 다음 증서에 연철되어 있는 서류를 원용합니다.											
번호	증서·등부                      년    제    호										
촉탁인											
원용할 증빙서류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input type="checkbox"/> 촉탁서</td> <td><input type="checkbox"/> 진술서</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위임장</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등기부등본</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주주명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촉탁서	<input type="checkbox"/> 진술서	<input type="checkbox"/> 위임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주명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촉탁서	<input type="checkbox"/> 진술서										
<input type="checkbox"/> 위임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주명부	<input type="checkbo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공증인</span> <span>인</span> </div>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3. 위 회신에 있어, 공증인법 등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반 공증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업무 관행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1) 및 (2)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8 서울남부지방법원 (추가)사실조회 회신 (2019.6.5.자)**

**□ 질의 내용(원문)**

-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 및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는 등 동시에 수 개의 촉탁을 받았는데 촉탁인이 인감증명서를 1부만 제출한 경우, 공증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원용제도를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법률상 여러 개의 공증이나 인증이 원칙적으로 허락되는지 여부.
- 공증인이 인증서 등 서류에 간인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류 전부에 대하여 간인하는지 여부. 끝.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51호(시행 2019.6.5.)〉

1.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 및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는 등 동시에 수 개의 촉탁을 받았는데, 촉탁인이 인감증명서를 1부만 제출한 경우, 공증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원용제도를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법률상 여러 개의 공증이나 인증이 원칙적으로 허락되는지 여부?

법규정상 당연히 가능하며, 실무상 대부분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같은 날 수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인감증명서 포함)는 1부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을 첩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제9호 서식의 증명서원용 서면(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을 작성하여 편철하게 됩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14조).

2. 공증인이 인증서 등 서류에 간인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류 전부에 대하여 간인하는지 여부.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하며(공증인법 제38조제5항),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하는데(공증인법 제40조제2항), 이는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촉탁인이 제출한 사서증서의 앞에 표지를, 뒤에 인증문을 작성

하여 인증서를 완성하는데, 이때 표지와 사  
서증서 및 인증문까지 전부 간인하여 촉탁  
인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인증서를 전자복사한 후 그 사본과 부속서  
류(촉탁서, 신분증사본, 위임장, 인감증명  
서 등) 사이 및 부속서류 사이에도 전부 간  
인을 하여 사무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9** 약속어음 대리발행인 기재 방법 관련 질의  
회신(2019.11.15.자)

□ 질의 내용(원문)

문방구 약속어음 발행 표기에 대한 질의  
채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에 의해 대리인이 촉탁 할 경우 문방구  
약속어음 발행할 때 발행인란에 발행인(채무  
자) 이름 서명날인 주소기재 하여 공정증서  
작성해야 맞는지요, 아니면 발행인란에 발행  
인(채무자) 홍길동의 대리인 김길동 대리인  
의 이름 서명날인 주소기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맞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시) 약속어음 채무자의 대리인이 올 경우  
\* 발행인 이름 홍길동(인)  
    채무자 주소기재  
\* 발행인 이름 홍길동의 대리인 김길동(인)  
    대리인 주소기재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90호(시행 2019.11.5.)>

1. 귀 공증인의 질의 취지는 ‘채무자가 개인적  
인 사정으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해  
대리인이 촉탁하면서 문방구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발행인란에 발행인(채무자) 이  
름 서명날인 주소를 기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맞는지, 아니면 발행인란에 발행  
인(채무자)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대리인의  
이름 서명날인 주소를 기재하여 공정증서  
를 작성해야 맞는지 여부’입니다.
2. 일반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은  
촉탁하면서 발행인의 대리인이 촉탁하러  
공증사무소에 오더라도 약속어음 자체는  
발행인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것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만약 그렇지 않고 약속어음 자체를, 공증사  
무소에 와서 작성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행  
인의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할 경우라면 먼  
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약속어음 발행  
(작성)에 관한 위임인의 의사도 확인할 필  
요가 있습니다.
4. 약속어음 발행(작성)에 관한 위임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대리인이 약속어음을 발  
행(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 발  
행인 표시는 발행인의 주소와 성명은 모두  
본인의 것을 기재하고, 추가로 대리인의 자  
격과 이름을 기재한 후, 대리인의 도장으로  
날인하면 될 것입니다(※ 주 : 어음에는 발행인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기재가 필요하므로(어음법 제1조제8호 참조), 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도장으로도 날인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서명을 하여도 무방하나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을 위하여 어차피 도장을 가지고 왔을 것이므로 날인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 주소 ○○시 ○○구 ○○로 ○○길 ○○  
 성명 ○○○  
 위 대리인 주소 ○○시 ○○구 ○○로 ○○  
 ○○길 ○○  
 대리인 △△△ ㉠

5. 또한 오래전부터 관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른바 서명대리(대행)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리인이 어음 발행(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어음을 발행(작성)하면서 대리의사로 작성하지만 대리인에 관하여는 표시하지 않고 본인 명의만 기재 및 날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약속어음 발행(작성)에 관한 위임인의 의사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자기신탁 공정증서 작성 관련 질의 회신**  
 (2019.11.15.자)

□ 질의 내용(원문)

신탁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위탁자 단독의 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함에 외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도록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당 법원에서 자기신탁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자 함에 사용서식, 기재사항 및 절차 등 작성방법에 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91호(시행 2019.11.5.)〉

1. 질의 취지

귀 법인의 질의 취지를 요약하자면, “신탁법 제3조제1항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한 자기신탁 공정증서의 사용서식, 기재사항 및 절차 등 작성방법”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자기신탁에 관하여는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2012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자기신탁의 경우에 공정증서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신탁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법무부에 의한 서식이나 표준안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기신탁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공증인이 자기신탁 공정증서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형편입니다(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다. 여기서 자기신탁 공정증서 서식(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인 공정증서의 표지는 생략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증서	년	제	호
<b>자기신탁 공정증서</b>			
본 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 1 조(목적) 위탁자는 신탁선언에 의하여 자기를 수탁자로 정하고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여 신탁을 설정한다.			
제 2 조(신탁재산) (별지 사용 가능)			
제 3 조(수익자) 위탁자 겸 수탁자는 수익자(들)로 아래의 사람(법인			
포함)(들)을 특정하였다.			
수익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위탁자와의 관계		
수익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위탁자와의 관계		
수익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위탁자와의 관계		
수익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위탁자와의 관계		



[별지 제21호서식]

<b>관 계 자 의 표 시</b>	
관계 (촉탁인)	
성명 (명 칭)	
주소 (소재지)	
직업	주민등록번호
관계 (촉탁인)	
성명 (명 칭)	
주소 (소재지)	
직업	주민등록번호
관계 (촉탁인)	
성명 (명 칭)	
주소 (소재지)	
직업	주민등록번호
관계 (촉탁인)	
성명 (명 칭)	
주소 (소재지)	
직업	주민등록번호
관계 (촉탁인)	
성명 (명 칭)	
주소 (소재지)	
직업	주민등록번호







라. 요컨대, 법무부에 의하여 마련된 자기신탁 공정증서에 관한 서식이나 표준안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자기신탁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포함하는 서식(안)을 위와 같이 제시합니다. 귀 회원 사무소의 질의를 계기로 협회는 추후 법무부에 대하여 자기신탁 공정증서에 관한 서식이나 표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서울고등법원 사실조회 회신  
(2019.12.6.자)

□ 질의 내용(원문)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의 작성 및 재도발급에 관한 적법한 공증사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함

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질의회신내용, 공증사무소 홈페이지의 설명내용 등이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원고 측이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재도 발급한 법무법인 □□(공증인 ○○)이 문서송부촉탁신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공증인 ○○○에 대한 증인 채택이 보류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대한공증

인협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관련 쟁점사항을 분명히 정리하고자 함.

[사실 조회할 사항]

1.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와 관련하여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의하면,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약속어음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약속어음의 사본을 붙여 원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약속어음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약속어음상의 채권자로부터 약속어음상의 배서·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 원인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과 그 대항요건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대한공증인협회에서 발간하는 공증과신택 2014.7.호에 나오는 질의회신내용에 의하면,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 채권과 원인채권은 전혀 별개의 채권이므로 양도대상 채권으로 약속어음 채권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원인채권의 양도계약서에 공증된 약속

어음금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표시도 기재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인채권의 양수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자가 그 원인채권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고, 그 양수인은 양수받을 원인채권 그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양도인)에게 원인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준 경우, 위와 같이 원인채권을 타인에게 질권설정해 준 양수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채권양수인이 양수한 원인채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질권 설정한 사실을 숨긴 채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을 때, 공증인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단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보 작성과 관련하여**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증인법 제3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공증인 및 참여인이 증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증인은 규칙 별지 12호 서식에 의하여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로서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의하여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에는, 별지 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첨부자료 3에 의하면, 공정증서 정본은 원본의 사본에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공증인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증서정본의 기재 사항 중 제1호 “증서의 전문(全文)”은 공증 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원본을 그대로 사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함에 있어, 공증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공정증서 원본을 사본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정본을 사본하거나 다른 사본을 사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본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함에 있어, 공정증서 원본의 일부만 사본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른 것을 사본한 것을 합하여 정본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3.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보 재도 발급과 관련하여**

공증인법 제49조는 “공증인이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부분

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서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 조제2항은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증서원본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 날인 아래에 “증서정본 및 집행문 발급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약속어음으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약속어음상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속어음 원본이 첨부된 최초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의 소재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정본을 재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약속어음 원본이 첨부된 최초의 공정증서 정본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재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용증명을 제출하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의 재도

발급을 신청한 경우, 사용증명의 대상이 된 기왕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이 약속어음 원본이 첨부된 최초의 공정증서 정본이 아니고, 약속어음 원본이 첨부된 최초의 공정증서 정본의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다시 정본을 재도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공증사무소에서 정본을 재도 발급하면서, 집행법원 및 다른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공정증서 정본 및 집행문 발급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지 기재내용은 무엇인지

※ 첨부서류

- (1) 첨부자료1. 공증인법 등 관련 출력물(을 제 33-1호증)
- (2) 첨부자료2. 공증과신뢰 2014.7.호 관련 내용(을 제48호증)
- (3) 첨부자료3. 대한공증인협회 정본,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화면 출력물(을 제34호증)

[※ 편집자 주 : 첨부서류는 편집의 편의상 생략]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95호(시행 2019.12.6.)>

1. (1-가)에 대하여

약속어음 채권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배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한편, 지명채권양도

의 방법으로 어음채권을 양도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 대상인 권리는 여전히 어음에 표창되어 있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원본)의 교부가 뒤따라야 함.

그런데 약속어음 채권과 그 원인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보통은 원인 채권과 약속어음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질문의 취지가 어음채권은 양도받은 바 없이 단지 원인채권만을 양도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어음채권을 양도받긴 하였지만 어음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 양수인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음.

## 2. (1-나)에 대하여

불가함.

채권양도계약서나 양도통지서에 양도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약속어음 채권임을 알 수 있는 표시도 없고, 동시에 공증된 약속어음에 배서도 없다면, 공증된 약속어음(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음.

## 3. (1-다)에 대하여

원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이 되었는지

여부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심사할 사항이 아님.

따라서 만일 양수인이 채권자로부터 원인 채권과 함께 어음채권을 양도받고 어음 원본도 교부받았다면, 설령 그 양수인이 제3자에게 원인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어음원본이 첨부된 공정증서 정본을 가진 그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음.

## 4. (1-라)에 대하여

원인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여부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에 있어서 심사할 사항이 아니고, 공증인이 원인 채권의 질권 설정을 확인할 방법도 없음.

## 5. (2-가)에 대하여

공정증서 원본에는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서명날인을 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함.

## 6. (2-나)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증서정본의 기재사항 중 제1호의 “증서의 전문”이란 정본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공증사무소에 보관 중인 원본에 기재된 ‘증서의 전문’

을 의미함(가령, 증서 작성 후 이루어진 정본 발급이나 집행문 부여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내용도 포함).

‘증서의 전문’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는 원본을 전자복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필사하거나 또는 컴퓨터 워드 작업 후 출력하는 등의 방법도 허용됨. 다만, 어음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최초 정본을 공증인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어음 원본을 붙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증인법 제47조제1항 제1호는 나머지 정본에만 적용됨.

#### 7. (2-다)에 대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함에 있어, 발급 당시 기준 ‘증서의 전문’을 기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소에 보관 중인 공정증서 원본의 전부를 사본하는 방법임. 다른 정본의 일부를 사본하거나 다른 사본의 일부를 사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본을 작성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본 발급 당시 기준 ‘증서의 전문’이 모두 기재되는 등 공증인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 정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정본은 무효임(공증인법 제47조제2항).

#### 8. (2-라)에 대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함

에 있어, ‘공정증서 원본의 일부만 사본하고, 일부는 다른 것을 사본한 것을 합하여 작성한 정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공증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유효한 정본이고, 그렇지 않다면(가령, 정본 작성 당시의 ‘증서의 전문’ 즉 원본의 기재 사항 전부가 기재되지 않고 일부만 기재되어 작성된 것이라면) 효력이 없는 정본임(공증인법 제47조제2항).

#### 9. (3-가)에 대하여

공증인은 공정증서 정본을 발급한 경우에 정본 발급 사실을 공정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함(공증인법 제49조).

다만, 공증실무상으로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아무개에게 등본은 아무개에게 각 통씩 교부한 바’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원본을 작성하고, 원본을 작성하면서 정본 및 등본도 함께 작성하여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하고, 정본 및 등본은 촉탁인 등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그 법리적인 정당성의 근거는 대한공증인협회 발간 『공증실무』(개정판, 2013), 76면부터 77면까지 참조].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최초의 정본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제12호 서식

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외관상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아래에 정본 발급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는 정본을 재교부한 때임.

또한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도 정본 발급 시와 마찬가지로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36조, 제57조, 공정증서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10. (3-나)에 대하여

불가함.

공정증서의 정본이란 특히 정본으로 표시한 원본의 사본으로서 법적으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임. 일반적으로 정본은 강제집행에 사용되므로 등본에 비하여 청구권자가 제한되며,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키도록 되어 있음(공증인법 시행령 제16조). 특히 약속어음 원본이 첨부된 최초의 정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는 채 또 다시 정본의 재도 발급을 청구한다면, 공증인은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로 보아 정본 발급을 거부하여야 함(당연한 결과로 추가로 집행문을 부여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음). 만일 약속어음 원본이 첨부된 최초 어음 공정증서 정본이 분실되었다면, 공시최고절

차에 의하여 분실된 정본이 무효화된 후 비로소 다시 정본을 재발급할 수 있음.

11. (3-다)에 대하여

불가함.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약속어음 정본 발급을 청구하면서 약속어음 원본이 첨부된 최초의 공정증서 정본의 소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제권판결도 받아 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정본을 발급할 수 없음.

12. (3-라)에 대하여

불가함.

일반적으로 집행증서는 이미 발급된 정본을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분실하였음을 소명한 경우 새로 정본을 발급할 수 있음.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분실하였음을 소명하면 정본을 재발급할 수 있음. 다만, 약속어음 원본이 첨부된 최초의 정본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사용 중임을 증명하거나 제권판결이 제출되어야 정본을 재발급할 수 있음. 다시 말하여 최초의 정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다시 정본을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함.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도 어디까지나 약속어음 원본에 표창된 어음 채권이기 때문임.

## 13. (3-마)에 대하여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공증인법 제43조제1항), 또한 그 증서 또는 부속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공증인법 제50조제1항).

그러므로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증서 원본을 열람하면서 등본을 발급받아 봄으로써 이와 같은 정본 발급 사실이나 집행문 발급 사실을 알 수 있고,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하면서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12 후건계약공정증서 수수료 산정기준 관련 질의 회신(2019.12.27.자)

#### □ 질의 내용(원문)

[신탁후건계약 공정증서 수수료 산정기준의 변

#### 경 필요성에 대하여]

후건계약은 위임인(본인)이 임의후견인에게 본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본인을 위해 사용할 권한,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영업행위, 부동산과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 등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라 볼 수 있다. 위임계약에 관한 서류 인증의 경우에 공증수수료 산정기준은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고 목적물이 있을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동일 목적물을 반환하는 사용대차계약의 수수료 산정 기준(대주 2분의 1+ 차주 2분의 1)도 목적물가액으로 산정기준을 삼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 표시된 기존 수수료에 대하여 후건계약의 공증수수료 산정기준을 위임인(본인)에 대하여는 부동산과 중요한 재산의 목적물 가액, 임의후견인에 대하여는 10년간의 월 보수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이 둘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 기존의 산정기준

후건계약에서 보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2천만 1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51,500원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같은 규칙 제2조),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따라 “월 보수액×120개월(10년)×2(상대방 급부 가액분)”을 목적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면 됨.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9-98호(시행 2019.12.27.)>

1. 귀 회원의 후견계약 공정증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질의라기보다는 현행 후견계약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여러 가지 점에서 적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니 협회가 앞장서서 변경에 힘써 줄 것을 건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종래 후견계약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귀 회원사무소뿐만 아니라 많은 사무소로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공증인들의 목소리가 있어 왔는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귀 회원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2. 먼저, 후견계약이나 위임계약에서 후견인이나 수임인의 사무가 피후견인이나 위임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보수를 정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제1의 기준으로 삼고, 만일 보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목적가액을 2천만 100원으로 보아서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현행 후견계약 공정증서 산정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은 후견인이나 수임인의 사무가 재산을 관리하

거나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 후견계약이나 위임계약이 갖는 중요성이나 공증인의 부담의 크기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는 관점이 있어 왔습니다. 귀 회원도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관점에 관하여는 협회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으로 협회는 이미 지난 2019.7.11.자로 아래와 같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4(위임계약 등의 증서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수임인의 사무가 피후견인이나 위임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 후견계약이나 위임계약의 급부의 가액은 재산의 가액을 최저로 한다.

3. 다음으로 후견계약에서 피후견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급부만 존재하고 피후견인의 급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법무부 유권해석은 후견계약이나 위임계약의 급부의 법리에 관하여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피후견인이나 위임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피후견인이나 위임인에게는 후견인이나 수임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거나 후견인이나

수임인이 사무를 처리하는데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면 대리권을 수여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사무처리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등 피후견인이나 위임인의 급부도 존재하므로 피후견인이나 위임인의 급부 가액도 목적가액 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뿐 쌍방 당사자에게 모두 상대방을 향한 급부가 존재하는 강학상 불완전쌍무계약으로 분류되는 사용대차 또는 무상 금전소비대차계약도 같은 경우입니다. 위임 계약과 똑같이 강학상 불완전쌍무계약으로 분류되는 무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목적가액을 산정할 때 대주의 급부가액을 차주의 급부가액과 합산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2013년부터 법무부 유권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법무부 유권해석은 불완전쌍무계약 중 어떤 것은 목적가액을 산정할 때 일방 당사자의 급부의 가액만 반영하고, 어떤 것은 쌍방 당사자의 급부의 가액을 합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서로 모순적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후견계약의 목적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무부 유권해석은 하루빨리 법리에 맞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후견계약이나 위임계약은 보수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급부가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에 해당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에 의하여 2천만 100원으로 볼 수 있고, 피후견인의 급부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후견인의 급부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후견계

약의 목적가액은 쌍방의 급부가액을 합산하되, 그 각 급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

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견계약의 목적가액은 일반적으로 보수의 약정이 없으면 쌍방의 급부가액은 모두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급부가액인 2천만 100원의 배액을 목적가액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수의 정함이 있으면 그 보수액이 2천만 100원을 초과할 경우와 아닐 경우로 나누어, 초과할 경우에는, 그 배액을 목적가액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면 되고, 아닐 경우에는, 2천만 100원의 배액을 목적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협회는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오랫동안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 2항에서 언급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4(위임계약 등의 증서의 특례) 규정의 신설 건의와 별도로 위 유권 해석의 변경을 조만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상 후견계약의 수수료에 관한 귀 회원의 질의에 대하여 협회의 입장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Ⅲ. 공증업무지침 제정 등 법무부 건의

#### ①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방법 법무부 사전 송부(2019.2.26.자)

- 협회는 법무부에 2018.11.1. 문서번호 공증협 제2018-74호로 건의한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의 승인 또는 지침 개정 건의”와 관련되어 법무부로부터 회신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증서 표지의 장수 산입에 관하여는 추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재논의하기로 하고, 사서증서 인증서의 장수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장수 초과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알기 쉽도록 하면서, 사본제작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명확히 한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을 마련한 후, 2019.2.26. 법무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함.

####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19호(시행 2019.2.26.)〉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송부

1. 우리 협회 문서번호 공증협 제2018-74호

[2018.11.1. 시행,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의 승인 또는 지침 개정 건의]와 관련입니다.

2. 귀 부는 우리 협회가 상기 공문으로 요청한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관하여 (1) 공정증서 표지의 장수 산입에 관하여는 종전 유권해석이 존재하고 현재로서는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려우나, (2) 사서증서 인증서에 대한 사본의 제작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상 유사 규정도 있고, 현재 일부 공증사무소의 수수료 징수 관행도 있으므로, 협회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어 업무관행을 만들어 주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때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협회에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귀 부의 의견에 따라 공정증서 표지의 장수 산입에 관하여는 추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재논의키로 하고, 사서증서 인증서의 장수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장수초과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알기 쉽도록 하면서, 사본제작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명확히 한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협회는 위 업무처리방법(안)에 문제가 없으면 3월 중 각 회원사무소에 배포하고 오는 4월 1일(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시행에 앞서 귀 부의 검토 의견을 구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오는 3월 15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업무처리방법(안)이 시행될 경우, 동 처리방법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귀 부의 공증사무소 정기 또는 특별감사 시에 장수초과수수료 및 사본제작수수료가 적정하게 징수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유의하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1부  
 (2)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리 검토 1부  
 (3)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장수수수료 계산식 표 및 사례폴이 1부

**\* 붙임 (1)**

**인증서의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방법은 인증서의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된 방법으로 공증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제도에 관한 신뢰 제고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서증서 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①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식규칙”이라고 함) 제27조에 따라 국문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250원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하 “수수료규칙”이라고 함) 제20조제1항의 상한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영문사서증서 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① “서식규칙” 제31조에 따라 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500원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 영문 외의 외국문 사서증서를 인증할 경우에도 같다.

② “수수료규칙” 제20조제3항의 상한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서증서 등본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서식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서증서등본의 인증을 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250원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서증서 영문등본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서식규칙” 제28조에 따라 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등본인증을 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500원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번역문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서식규칙” 제33조에 따라 영문번역문을 인증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500원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른 외국문번역문을 인증할 경우에도 같다.

**제7조(선서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① “서식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사서증서에 대하여 선서인증을 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교부용 인증서 및 보관용 인증서에 대하여 각 인증서마다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375원의 각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수수료규칙” 제20조제2항의 상한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관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① “서식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을 인증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교부용 인증서 및 보관용 인증서에 대하여 각 인증서마다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250원의 각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수수료규칙” 제21조제1항의 상한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사록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서식규칙” 제29조에 따라 법인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교부용 인증서 및 보관용 인증서에 대하여 각 인증서마다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250원의 각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0조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제작수수료)** 「공증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인증서의 사본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본을 제작할 때에는 공증인은 장수초과수수료와 별도로 인증서의 장수에 관하여 장당 300원의 제작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1조(사서증서등본인증서 사본의 제작수수료)** 제10조는 「공증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인증서의 사본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본을 제작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장수계산방법)** 제10조의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인증서 또는 인증서사본의 장수를 셀 때는 표지는 장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된 부분과 사서증서 부분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산서 작성방법)** ① 공증인은 접수번호마다 “서식규칙”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고, 비고란(작성연월일을 기재하는 줄 세 번째 칸)에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②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공증인은 “서식규칙”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의 증서초과매수료란

중 수량항목에는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인증서의 장수에서 4를 뺀 장수를 기재하고, 금액항목에는 해당 장수초과수수료의 액을 기재한다.

③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공증인은 제1항 기재 증서초과매수료란 중 수량항목에는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인증서의 장수에서 4를 뺀 수에 2를 곱하는 장수를 기재하고, 금액항목에는 인증서 2통에 대하여 발생하는 각 장수초과수수료의 합산액을 기재한다.

④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서사본의 제작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공증인은 “서식규칙”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의 맨 아래 줄의 비고란 중 복사료 항목에는 해당 규정의 사본제작 수수료의 액을 기재하고, 그 맨 오른쪽 빈 칸(비고항목)에는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인증서 사본의 장수를 기재한다.

부 칙 (2019. . .)

이 업무처리방법은 2019. . 1.부터 시행한다.

## \* 붙임 (2)

###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리 검토

1. 공증실무상 인증을 할 때 인증서 장수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1장당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는 수수료 액은 조금 과장하면, 공증사무소마다 다르다고 할 정도로 난맥상을 보인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증서작성의 수수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증수수료를 정하고 있을 뿐, 장수초과수수료를 직접 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인증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점이 다소 불명료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한편 뒤늦게 인증서사본 보존의무가 도입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된 공증인의 부담에 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실무상 그 수수료와 인증서의 장수초과수수료는 법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임에도 같은 것으로 곧잘 오해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난맥상의 또 다른 요인이다. 인증서사본보존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여 인증서의 장수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현재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해석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제1항

에 따르면(이하 조문만 표시한 경우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조문을 나타냄), 인증수수료는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목적가액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만으로 그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더 나아가 인증을 할 때 장수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닌가?

둘째, 실무상으로는 인증서의 장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근거를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제20조로 대체로 보고 있지만, 정관인증이나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제21조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와 무관하게 정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3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사서증서에 대한 등본인증의 수수료는 심지어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아예 정하지 않은 상태인바, 정관 또는 의사록 등을 인증할 경우나 사서증서에 대하여 등본 인증을 할 경우에는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셋째,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증서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인증서의 장수를 셀 때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가?

넷째, 동일한 인증서 2통을 작성하는 정관 인증 등의 경우에는 장수초과수수료는 1통의 인증서에 대하여만 받아야 하는가 인증

서마다 따로 따로 받아야 하는가?

다섯째, 인증서 1통만 작성하는 일반적인 사서증서인증이나 등본인증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사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게 되어 있는바, 사본의 장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있다면 얼마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법령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처럼 인증서의 장수초과수수료나 인증서 사본의 제작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어떤 경우에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 많은 의문이 있지만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없는 현재로서는 순전히 각 공증사무소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증실무가 전국 모든 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루빨리 인증서의 장수초과수수료나 인증서사본의 제작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관하여 검토한다.

2. 위 문제들에 관하여 검토하기에 앞서 인증 수수료는 공정증서 작성수수료와 연동하여 정해져 있으므로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다음, 위 문제들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가.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

- 1) **법률행위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  
공증인이 법률행위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받는 수수료에는 기본수수료와 장수초과 수수료(※ 주 : 계산서 서식에서는 이를 '증서초과 매수료'라고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장수초과수수료'라고 한다)가 있다. 기본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제2조). 기본수수료를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에 연동시킨 것은 공증으로 증명되는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이 크면 클수록 촉탁인에게 그만큼 더 이익이 되고, 촉탁인이 공증으로 받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그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제2조에 따르면 목적가액을 5개 구간으로 나누고 첫 구간은 목적가액을 200만 원까지로 하면서 수수료를 1만 1천 원으로 하는 등 네 번째 구간까지는 수수료를 정액으로 정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구간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면서 수수료는 정액으로 하지 않고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00분의 3에 직전 구간의 수수료인 4만 4천 원을 더하는 것으로 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목적가액에 따라 기본수수료는 최저 1만 1천 원에서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인정된다. 기본수수료에 위와 같이 상한액을 둔 것은 공증으로 얻는 이익은 현실적 이익이라기보다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손해를 공증을 통해 미리 예방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소극적 이익 또는 잠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지나치게 고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본수수료는 다음에서 보는 장수초



과수수료와 달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수수료가 발생하고, 장수초과수수료에 비하여 액수도 대체로 더 크다는 점에서 공정증서작성의 수수료 중 기본이 되는 수수료이자 주된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장수초과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 장수에 대하여 인정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처럼 증서의 장수와 연동하여 수수료를 인정한 것은 장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추가되는 공증인의 비용이나 부담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주 : 여기서 '공증인이 부담하는 수고'란 장당 수수료액이 500원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법률전문가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서류를 꾸미는 데 요구되는 비교적 단순노동적인 수고를 말한다). 기본수수료는 촉탁인이 얻는 이익의 관점에서 정한 것이라면, 장수초과수수료는 공증인이 지는 비용이나 부담의 관점에서 정한 것이다. 장수초과수수료는 그 액도 대체로 소소하거나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장을 초과할 때만 발생한다. 이런 까닭에 기본수수료에 부수하여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부가수수료라고도 하고, 종된 수수료라고도 한다. 또한 장수초과수수료는 작성되는 공증서류가 일정 장수를 초과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종류의 공증에서도 기본수수료에 부가되는 수수료로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수수료라고 볼 수 있

다. 한편 장수초과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달리 상한액이 없다. 공증인이 지는 비용이나 부담을 보상하는 취지이므로 상한액을 두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 2)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의 기본 수수료와 장수초과수수료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에 관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5조제1항은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시간당 2만 5천 원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은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 5천 원을 더한다고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1시간까지는 2만 5천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면 매시간당 3만 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작성수수료=2만 5천 원+(총 소요시간 수-1)×3만 원”이 된다.

사실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에 관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위와 같이 소요 시간에 따른 수수료만을 정하고 있고 장수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그리하여 사실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 장수초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먼저 부정설은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곧 법령제정권자가 부가수수료를 인

정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로 볼 수 있고, 제26조에서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이란 사서증서에 대한 등본인증의 경우처럼 그것이 독립된 공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엄연히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경우까지 제26조의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① 소요 시간이 짧지만 증서의 장수가 많을 수도 있고, 소요 시간이 길어도 장수는 몇 장 안 될 수도 있어서 소요시간에 따라 덧붙여진 수수료와 증서의 장수에 따라 덧붙여진 수수료는 전혀 의미가 다르므로 증서의 장수에 따른 추가로 부가수수료를 따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공증수수료에 관하여는 입법불비의 영역도 많은데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점, ③ 의사록에 대하여 참석인증을 위하여 의결장소에 출석하여 검사할 경우에 의사록인증 수수료와 별개의 검사수수료를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의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으로 보아서 이미 제19조의2에 따르면 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의 전례가 있는 점, ④ 실무상 확인서 등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는 대체로 사실에 관한 증서 작성의 기본수수료 최저액인 25,000원을 기준으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10분의 5인 12,500원으로

보는데, 간혹 100여 장을 넘는 확인서 등을 인증할 경우에 공증인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함은 물론 일일이 간인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수초과수수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기본수수료만 받아야 한다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에 관한 증서 작성에 관해서도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에 따라 제3조를 적용하여 증서의 장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 : 법률행위가 아닌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등의 인증의 수수료는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법률행위증서 작성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동 주장에 따르면 진술서 등의 인증에 관해서는 제26조를 끌어들이 필요도 없이 「나. 사서증서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진술서 등을 인증할 때도 장수초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생각건대,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장수초과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공증인의 부담을 보상하기 위한 수수료이다. 그러나 공증서류의 장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증인의 부담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비단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증서류를 작성할 때는 그 공증서류가 갖는 증명의 의미가 어떤 것이든 즉, 어떤 종류의 공증이든간에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수초과수수료는 보편성을 가진 부가

수수료이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의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고 하는 제26조를 든 것은 수수료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미처 규정을 두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증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26조에 근거하여 사실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도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와 가장 유사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행위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장수초과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초과하는 1장당 500원의 장수초과수수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사서증서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전문과 후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문은 인증하는 사서증서와 같은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할 경우를 가정한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를 인증수수료로 한다는 것을 뜻함은 분명하다. 후문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증하는 사서증서와 같은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할 경우를 가정한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만 원까지만 인증수수료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후문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

석하면 인증수수료는 어떤 경우라도 5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인증의 수수료는 인증서의 장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에 따른 수수료 즉, 장수초과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 액은 일반적으로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를 합한 것인데 목적가액에 따른 기본수수료 액이 얼마냐에 따라 때로는 부가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 이는 이상하므로 인증수수료에 상한액을 둔 것이야말로 인증의 부가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문의 의미는 인증수수료의 기본수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장수초과수수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증의 수수료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인증의 수수료는 애초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만 정하고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인증의 수수료에서도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는 장수초과수수료로 증서작성의 장수초과수수료의 10분의 5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당시는 또한 증서작성의 기본수수료에 상한액이 있으므로 그에 연동된 인증의 기본수수료에도 실질적으로 상한액이 있는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인증수수료만의 상한액을 규정하게 된 것은 인증수수료에서

장수초과수수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증서작성의 수수료에 연동된 기본수수료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 따라 그보다 상한액을 더 낮추려는 방안이었다(※ 주: 인증수수료에 상한액을 처음 둔 것은 1996.12.31.부터다. 당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제1항의 단서를 개정하여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 규정에서 처음으로 상한액을 정한 것이다. 그 전까지는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는 국문으로 작성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3배로 규정하였었고, 그 결과 상한액이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가 생기다 보니 이를 그보다 낮추기 위하여 상한액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제1항 등에서 인증수수료에 관하여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고 해서 인증수수료에서는 장수초과수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수초과수수료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20조제1항은 인증하는 사서증서가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든 사실에 관한 것이든 장수초과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말하자면 제20조제1항을 해석할 때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라는 전문에 걸리는 ‘인증의 수수료’와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후문에

걸리는 ‘인증의 수수료’는 그 의미를 달리 보아야 한다. 즉, 전문에 걸리는 ‘인증의 수수료’에는 인증의 기본수수료와 장수초과수수료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후문에 걸리는 ‘인증의 수수료’는 인증의 기본수수료만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서증서에 대한 선서인증의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제20조제2항이나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동조 제3항을 해석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기된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상한액은 인증의 기본수수료에만 적용되므로 기본수수료와 장수초과수수료와 합하여 그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수수료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법적인 근거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정관 등 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인증의 수수료를 증서작성의 수수료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증서작성의 수수료에는 장수초과수수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인증의 수수료에서도 당연히

장수초과수수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위 규정과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인증의 경우이다. 그것은 증서작성의 수수료와 연동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3조를 준용하지도 않으면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인증과 의사록인증이 대표적이다.

실무상 정관은 대부분 4장을 초과한다. 그러나 10장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의사록은 4장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의사록에 재무제표나 정관을 첨부하는 경우 또는 계약내용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수십 장에 이를 경우도 있다. 장수초과수수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서의 장수가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공증인의 비용이나 부담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수수료이고, 공증서류를 작성할 때는 그 공증서류가 무엇이든지 따질 것 없이 항상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부가수수료이다. 또한 정관이나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에서 장수초과수수료를 정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제정권자의 의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관인증이나 의사록인증의 수수료에 관하여도 제26조를 적용하여 장수초과수수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치는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인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제20조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이나 제2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장의 인증에 관해서도 장수초과수수료는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사서증서에 대한 등본인증의 경우는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본수수료조차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 논란이 있다. 사서증서에 대한 등본인증을 할 때 공증인은 원본과 등본 내용이 동일한지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간인도 하여야 한다. 장수가 많을수록 공증인의 비용이나 수고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인증에서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장수초과수수료에 관하여는 등본인증의 기본수수료를 얼마로 보든지 간에 다른 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국문으로 작성되는 등본인증서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제20조제1항의 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가, 영문으로 작성되는 등본인증서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제20조제3항의 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 라. 2통의 인증서를 작성하는 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사서증서의 인증은 원칙적으로 똑같은 원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원본을 대상으로 하나의 인증서가 작성되지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원본 2통을 대상으로 각 통마다

그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 정관인증과 의사록인증 및 선서인증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촉탁인은 원본을 2통 제출하여야 하고, 공증인도 동일한 원본 2통에 대하여 인증서를 2통 작성하며,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사무소에서 보존한다. 인증서가 2통 작성되지만 동일한 등부번호로 인증이 이루어지므로 법적으로는 하나의 인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수료도 1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1건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수수료에 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장수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되는 공증인의 비용이나 부담을 보상하기 위해서 장수초과수료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공증인의 비용이나 부담은 동일한 내용의 인증서일지라도 별개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본 2통이 서로 동일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서마다 장수초과수료를 인정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원본 2통을 제출시켜 인증서를 2통 작성하는 인증의 장수초과수료는 인증서마다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마. 인증서사본의 제작에 따른 수수료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경우에 공증인은 그 인증서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 인증서사본의 보존은 애초에 공증인의 의무가 아니

었다. 인증서사본의 보존에 관하여 법령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0.11.30. 제정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의 편철) 제2항이다. 동 규정에서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편철할 서류의 하나로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을 정한 것이다.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는 정작 그보다 늦은 1992.9.14. 제3조(서류의 보존방법)를 개정하여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을 보존할 서류의 하나로 정하였다. 인증서사본의 보존을 법률상 의무로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2009.2.6. 공증인법 개정(2010.2.7.시행) 때 제57조제4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이 인증서사본의 보존은 뒤늦게 새로 생긴 공증인의 부담이다. 그렇다면 1990년부터 혹은 늦어도 2010년부터는 새로 생긴 공증인의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에 관한 수수료가 도입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이에 관하여 지금까지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명백한 입법불비이다.

한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는 보존 수수료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유사한 사항의 수수료가 없다. 그런데 인증서사본의 보존을 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

증서의 사본을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서의 사본 제작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의 등본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관의 사본 제작’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관의 사본 제작에 관한 수수료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제24조 본문과 단서를 종합하면 그 수수료를 장당 300원으로 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증인이 등본 발급을 온전히 할 경우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1장에 5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사본을 제작해 온 사본을 이용하여 공증인이 등본을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1장에 200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24조제1항의 본문과 단서를 종합하면, 제24조제1항은 결국 공증인이 사본을 제작하는 것의 수수료를 장당 300원으로 정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4조제1항은 정관의 사본 제작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인증서사본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인증서의 사본을 제작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고, 결국 그 수수료는 사본 1장당 3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 바. 장수초과수수료 등의 산정을 위한 장수계산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증인은 인증서에서도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장수에 관하여나 공증사무소에 보존하기 위하여 인증서사본을 제작할 경우에 그 사본의 장수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증인이 장수초과수수료나 사본제작수수료를 산정하려면 먼저 인증서가 몇 장인지부터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수초과수수료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조에서는 제2항에서 글자 수를 기준으로 1장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사본제작수수료의 해석상의 근거 규정인 제24조제2항에서도 위 제3조제2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산정할 때 사서증서부분의 장수에 관하여도 제3조제1항뿐만 아니라 제2항도 적용 또는 준용되는지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본다면 장수초과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인증되는 사서증서의 글자 수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주: 인증서는 표지, 사서증서, 인증용지 순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표지와 인증용지는 법정서식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증서 작성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장수계산방법에 관하여 법정서식은 글자 수에 관계 없이 서식마다 1장으로 보되 표지는 장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인증서의 장수초과수수료나 사본제작수수료의 근거도 궁극적으로는 공증인수수료 규칙 제3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증서작성의 장수초과수수료에 관한 위 법무부 유권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생각건대, 증서작성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장수를 셀 때 글자 수를 기준으로 장수를 세도록 정하고, 등본 발급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장수를 셀 때도 그 내용을 준용하도록 정한 취지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장수를 늘리거나 줄임에 따라 동일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등본을 작성함에 불구하고 공증사무소마다 또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마다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서증서는 당사자가 작성한 부분으로 공증인이 임의로 그 장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 부분은 글자 수가 아니라 당사자가 작성한 종이장수 그대로를 장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 3. 장수초과수수료나 사본제작수수료에 관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인증의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한액 50만 원 등은 인증의 기본수수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공증인이 촉탁인으로부터 실제 받는 수수료 액은 기본수수료에 장수초과수수료를 합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둘째, 장수초과수수료는 장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증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수고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관하여 공증인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수수료가므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장수초과 수수료를 명문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지라도 공정증서나 인증서를 막론하고 공증인이 공증서류를 작성할 때 그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항상 초과하는 1장마다 소정의 장수초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동일한 등부번호로 인증서를 2통 작성하는 정관이나 의사록의 인증 및 사서증서에 대한 선서인증의 경우에는 장수초과 수수료는 각 인증서마다 발생한다.

넷째,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보존하기 위하여 인증서 사본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본 제작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섯째, 장수초과수수료나 사본제작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장수를 셀 때는 법정서식은 글자 수와 관계 없이 서식마다 1장으로 보되, 표지를 장수에 산입하지 않고, 사서증서 부분의 장수는 종이장수를 그대로 장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인증할 때 받을 장수초과수수료나 사본제작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1) 장수초과수수료나 사본제작수수료를 산



정하기 위하여 장수를 셀 때는 법정서식은 그 자체로 1장으로 보되, 표지는 장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서증서 부분은 종이장수를 그대로 장수로 계산한다.

- (2) 2통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인증하는 선서인증, 정관인증 및 의사록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인증서마다 계산한다.
- (3) 국문 사서증서의 인증 및 등본인증에 관한 장수초과수수료는 장당 250원이다.
- (4) 영문 사서증서의 인증 및 등본인증에 관한 장수초과수수료는 장당 500원이다.
- (5) 번역문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장당 500원이다.
- (6) 국문 사서증서에 대한 선서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인증서마다 장당 375원이고, 정관인증이나 의사록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인증서마다 장당 250원이다.
- (7) 공증사무소에서 보존하기 위한 인증서사본의 제작수수료는 장당 300원이다.

\* 붙임 (3)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장수수료 계산식 표 및 사례풀이

□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장수수료 계산식 표

구 분		보존 문서 태양	장수초과수수료 (단, 표지는 장수에서 제외됨)	사본제작수수료 (단, 표지는 장수에서 제외됨)	장수수료 계산식 (단, 장수는 표지를 포함한 것임)
사서증서 인증서	국문	사본	4장 초과 장수 1장당 250원	장당 300원	$\{(장수-5) \times 250원\} + \{(장수-1) \times 300원\}$ . 단, 5장 이하 시는 $(장수-1) \times 300원$ .
	영문	사본	4장 초과 장수 1장당 500원	장당 300원	$\{(장수-5) \times 500원\} + \{(장수-1) \times 300원\}$ . 단, 5장 이하 시는 $(장수-1) \times 300원$ .
사서증서 등본 인증서	국문	사본	4장 초과 장수 1장당 250원	장당 300원	$\{(장수-5) \times 250원\} + \{(장수-1) \times 300원\}$ . 단, 5장 이하 시는 $(장수-1) \times 300원$ .
	영문	사본	4장 초과 장수 1장당 500원	장당 300원	$\{(장수-5) \times 500원\} + \{(장수-1) \times 300원\}$ . 단, 5장 이하 시는 $(장수-1) \times 300원$ .
번역문인증서		사본	4장 초과 장수 1장당 500원	장당 300원	$\{(장수-5) \times 500원\} + \{(장수-1) \times 300원\}$ . 단, 5장 이하 시는 $(장수-1) \times 300원$ .
선서인증서		원본	인증서 2통에 대해 각 통당 4장 초과 장수 1장당 375원	없 음	$(장수-5) \times 375원 \times 2통$ . 단, 5장 이하 시는 수수료 없음.
정관인증서		원본	인증서 2통에 대해 각 통당 4장 초과 장수 1장당 250원	없 음	$(장수-5) \times 250원 \times 2통$ . 단, 5장 이하 시는 수수료 없음.
의사록인증서		원본	인증서 2통에 대해 각 통당 4장 초과 장수 1장당 250원	없 음	$(장수-5) \times 250원 \times 2통$ . 단, 5장 이하 시는 수수료 없음.

□ 사례 풀이

(1) 사서증서인증서(국문)

가. 1장으로 된 사서증서를 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사서증서 1장,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2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지 아니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2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본제작 수수료 600원(300원×2)이 됨.

나. 2장으로 된 사서증서를 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사서증서 2장,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3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지 아니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3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

본제작 수수료 900원(300원×3)이 됨.

다. 3장으로 된 사서증서를 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사서증서 3장,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4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장수초과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4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본제작 수수료 1,200원(300원×4)이 됨.

라. 4장으로 된 사서증서를 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사서증서 4장,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5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는 1장에 대하여 250원이 발생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5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250원(250원×1)+사본제작 수수료 1,500원(300원×5)이 됨.

(2) 영문사서증서인증서

가. 2장으로 된 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41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영문사서증서 2장,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3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않음.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3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본제작 수수료 900원(300원×3)이 됨.

나. 4장으로 된 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41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영문사서증서 4장,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5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는 1장에 대하여 500원이 발생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5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500원(500원×1)+사본제작 수수료 1,500원(300원×5)이 됨.

(3) 사서증서등본인증서(국문)

가. 1장으로 된 사서증서에 관하여 등본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사서증서 사본 1장, 별지 제36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2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않음.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2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본제작 수수료 600원(300원×2)이 됨.

나. 2장으로 된 사서증서에 관하여 등본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사서증서 2장, 별지 제36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3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않음.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3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본제작 수수료 900원(300원×3)이 됨.

**다. 3장으로 된 사서증서에 관하여 등본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사서증서 3장, 별지 제36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4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않음.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4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본제작 수수료 1,200원(300원×4)이 됨.

**라. 4장으로 된 사서증서에 관하여 등본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사서증서 4장, 별지 제36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5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는 1장에 대하여 250원이 발생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5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250원(250원×1)+사본제작 수수료 1,500원(300원×5)이 됨.

**(4) 사서증서영문등본인증서**

**가. 2장으로 된 사서증서에 대하여 영문등본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41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사서증서 2장, 별지 제44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3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않음.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3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본제작 수수료 900원(300원×3)이 됨.

**나. 4장으로 된 사서증서에 대하여 영문등본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41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사서증서 4장, 별지 제44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5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는 1장에 대하여 500원이 발생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5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500원(500원×1)+사본제작 수수료 1,500원(300원×5)이 됨.

(5) 번역문인증서

가. 원문 1장 번역문 1장으로 된 번역문인증의 경우

- 1) 별지 제41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번역문 1장, 원문 1장, 별지 제45호서식(서약서와 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3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않음.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3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본제작 수수료 900원(300원×3)이 됨.

나. 원문 2장 번역문 2장으로 된 번역문인증의 경우

- 1) 별지 제41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번역문 2장, 원문 2장, 별지 제45호서식(서약서와 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5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는 1장에 관하여 500원이 발생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5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500원(500원×1)+사본제작 수수료 1,500원(300원×5)이 됨.

다. 원문 3장 번역문 3장으로 된 번역문인증의 경우

- 1) 별지 제41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번역문 3장, 원문 3장, 별지 제45호서식(서약서와 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7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는 3장에 대하여 1장당 500원의 장수초과수수료가 발생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7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이 발생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1,500원(500원×3)+사본제작 수수료 2,100원(300원×7)이 됨.

라. 원문 5장 번역문 2장(발체번역)으로 된 번역문인증의 경우

- 1) 별지 제41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번역문 2장, 원문 5장, 별지 제45호서식(서약서와 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8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는 4장에 관하여 1장당 500원이 발생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총 8장에 관하여 장당 300원씩 발생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2,000원(500원×4)+사본제작 수수료 2,400

원(300원×8)이 됨.

(6) 선서인증서

가. 2장으로 된 사서증서에 대하여 선서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별지 제33호의2서식(선서서), 사서증서 2장,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인증문).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4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않음.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사본을 제작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않음.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본제작 수수료 0원이 됨.

나. 3장으로 된 사서증서에 대하여 선서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별지 제33호의2서식(선서서), 사서증서 3장,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인증문).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하면 5장으로서 4장을 초과한 1장에 대하여 장당 375원씩이 각 통당 발생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사본을 제작하지 아

니하므로 발생되지 않음.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750원(375원×2)+사본제작 수수료 0원이 됨.

다. 4장으로 된 사서증서에 대하여 선서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별지 제33호의2서식(선서서), 사서증서 4장,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인증문).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하면 6장으로서 4장을 초과한 2장에 대하여 장당 375원씩이 각 통당 발생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사본을 제작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않음.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1,500원(375원×2×2)+사본제작 수수료 0원이 됨.

(7) 정관인증서

가. 3장으로 된 정관을 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정관 3장, 별지 제40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4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아니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사본을 제작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않음.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본제작 수수료 0원이 됨.

**나. 9장으로 된 정관을 인증할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정관 9장, 별지 제40호서식(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10장으로서 4장을 초과한 6장에 대하여 장당 250원씩 각 통당 발생됨.
- 3) 사본을 제작하지 아니하므로 사본제작 수수료는 없음.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3,000원 (250원×6×2)+사본제작 수수료 0원이 됨.

**(8) 의사록인증서**

**가. 3장 이내로 된 의사록의 경우**

- 1) 별지 제33호서식(인증서표지) 1장, 의사록 3장 이내,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호의2서식(인증문).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4장으로서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아니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사본을 제작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아니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0원+사본제작 수수료 0원이 됨.

**나. 4장으로 된 의사록의 경우**

- 1) 별지 제33호(인증서표지) 1장, 의사록 4장, 별지 제37호 또는 제37호의2(인증문) 1장.
- 2) 장수초과수수료는 표지를 제외한 인증서 장수가 5장으로서 4장을 초과한 1장에 대하여 250원이 각 통당 발생됨.
- 3) 사본제작 수수료는 사본을 제작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되지 아니함.
- 4) 따라서 공증인이 징수할 인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장수초과수수료 500원(250×2)+사본제작 수수료 0원이 됨.

**1-1.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법무부 회신 공문 접수 (2019.3.20.자)**

- 법무부는 협회가 문서번호 공증협 제2019-19호(시행 2019.2.26.)로 검토를 요청한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에 대하여 문서번호 법무과-2615호(시행 2019.3.20, 협회 접



수 2019.3.25.)로 협회에 검토 의견을 보내옴.

● 법무부에서 보내온 공문 원문

〈법무과-2615호(시행 2019.3.20.)〉

수신 : 대한공증인협회장

제목 :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송부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송부(공증협 제2019-19, 2019. 2.26.)과 관련하여, 우리 부 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 조문별 의견 1부.

※ 붙임

인증서의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안)에 대한 조문별 의견

대상규정	의견
<p>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방법은 인증서의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된 방법으로 공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제도에 관한 신뢰 제고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p>	<p>- 의견 없음</p>
<p>제2조(사서증서 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①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식규칙”이라고 함) 제27조에 따라 국문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250원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②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하 “수수료규칙”이라고 함) 제20조제1항의 상한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산입하지 아니한다.</p>	<p>-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인증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서증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공증인법 제59조, 제25조), 사서증서 인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함(공증인법 제59조, 제38조제5항).</p> <p>이처럼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도 장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증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므로, 공정증서 작성과 같이 <u>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u></p> <p>- 그 금액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하 ‘수수료 규칙’) 제20조제1항,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u>장당 25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u></p> <p>- 수수료규칙 제20조제1항은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인증의 수수료”란 공증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서증서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p> <p>따라서,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u>장수 초과 수수료가 상한액(50만 원)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 검토 필요.</u></p>

대상규정	의견
<p>제3조(영문사서증서 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① “서식규칙” 제31조에 따라 영문사서 증서를 인증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500원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 영문 외의 외국문 사서증서를 인증할 경우에도 같다.</p> <p>② “수수료규칙” 제20조제3항의 상한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산입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제2조제1항과 같이 <u>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 금액은 수수료규칙 제20조제3항,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장당 5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u></li> <li>- 안 제2조제2항과 같이 <u>신중 검토 필요</u></li> </ul>
<p>제4조(사서증서 등본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서식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서증서등본의 인증을 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250원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서증서 등본 인증의 수수료는 일반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규정되어 있고 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장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증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므로 <u>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u></li> <li>- 그러나, 사서증서 등본 인증은 사서증서의 등본을 원본과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적는 것이므로(공증인법 제57조제2항), 사서증서의 내용이나 촉탁인이 당해 사서증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와 같이 <u>장당 250원의 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필요.</u></li> </ul>
<p>제5조(사서증서 영문등본인증의 장수초과 수수료) “서식규칙” 제28조에 따라 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등본인증을 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500원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제4조와 같이 <u>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의 사서증서 등본 인증의 장수 초과 수수료가 확정되면 그 2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u></li> </ul>
<p>제6조(번역문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서식규칙” 제33조에 따라 영문번역문을 인증할 경우에 인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역문 인증은 번역인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li> </ul>

대상규정	의견
<p>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500원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른 외국문번역문을 인증할 경우에도 같다.</p>	<p>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의 방법으로 이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임. 따라서, 공증인은 단지 서약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할 뿐, 번역이 올바른지 여부나 번역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u>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u></p> <p>- 또한 번역문 인증에는 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편철되므로, 전부 외국어로 작성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영문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와 같이 <u>장당 500원의 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u></p>
<p>제7조(선서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① “서식 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사서증서에 대하여 선서인증을 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교부용 인증서 및 보관용 인증서에 대하여 각 인증서마다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375원의 각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② “수수료규칙” 제20조제2항의 상한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산입하지 아니한다.</p>	<p>- 안 제2조제1항과 같이 <u>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 금액은 수수료규칙 제20조제2항,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장당 375원으로 정함이 타당함</u></p> <p>- 안 제2조제2항과 같이 <u>신중 검토 필요</u></p>
<p>제8조(정관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① “서식 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을 인증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교부용 인증서 및 보관용 인증서에 대하여 각 인증서마다 그 초과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250원의 각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p>	<p>- 수수료규칙상에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일반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p> <p>그러나 공증인은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정관이 민법, 상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정관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하므로(공증인법 제63조제4항, 제59조, 제38조제5항), 정관인증의 경우에도 장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증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p>

대상규정	의견
<p>② “수수료규칙” 제21조제1항의 상한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장수초과수수료는 산입하지 아니한다.</p>	<p><u>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u></p> <p>- 정관인증 시에 촉탁인은 정관을 두 통 제출하고, 공증인은 각 정관에 인증을 부여한 후 한 통은 공증인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에게 내어주는데, 이때 공증인은 한 통의 정관에 대해서만 내용을 검토하고, 나머지 한 통은 검토된 것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족함.</p> <p>따라서 <u>교부용 인증서 및 보관용 인증서 두 통 모두 장당 250원의 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필요.</u></p> <p>- 수수료규칙 제21조제1항은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정관인증의 수수료”란 공증인법 제63조에서 정하는 정관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정관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수 초과 수수료가 상한액(100만 원)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u>신중 검토 필요</u></p>
<p>제9조(의사록인증의 장수초과수수료) “서식 규칙” 제29조에 따라 법인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 인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공증인은 교부용 인증서 및 보관용 인증서에 대하여 각 인증서마다 그 초과 하는 장수에 관하여 장당 250원의 각 장수 초과수수료를 징수한다.</p>	<p>- 수수료규칙상에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는 일반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p> <p>그러나 공증인은 의사록 인증 시에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의사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하므로(공증인법 제66조의2제5항, 제59조, 제38조제5항), 의사록 인증의 경우에도</p>

대상규정	의견
	<p>장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증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u>장수 초과 수수료</u>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p> <p>- 의사록 인증 역시 촉탁인은 의사록을 두 통 제출하고, 공증인은 각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한 후 한 통은 공증인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에게 내어주는 방식이므로, 정관 인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교부용 인증서 및 보관용 인증서</u> 두 통 모두 <u>장당 250원의 장수 초과</u>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필요.</p>
<p>제10조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제작수수료) 「공증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인증서의 사본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본을 제작할 때에는 공증인은 장수초과수수료와 별도로 인증서의 장수에 관하여 장당 300원의 제작수료를 징수한다.</p>	<p>- 공증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 시에 비용이 발생하므로 제작·보존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p> <p>-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은 인증이 완료된 이후의 사무로서 공정증서 작성 또는 사서증서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 등본을 제작·교부해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나 공증인의 업무 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p> <p>수수료규칙은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 수수료는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서 등본 교부 수수료와 동일하게 <u>장당 5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u>(수수료규칙 제26조, 제24조제1항).</p>
<p>제11조(사서증서등본인증서 사본의 제작수수료) 제10조는 「공증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인증서의 사본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본을 제작할 경우에 준용한다.</p>	<p>- 안 제10조와 같이 <u>장당 5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u></p>

대상규정	의견
<p>제12조(장수계산방법) 전10조의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인증서 또는 인증서 사본의 장수를 셀 때는 표지는 장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된 부분과 사서증서 부분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의견 없음</p>
<p>제13조(계산서 작성방법) ① 공증인은 접수 번호마다 “서식규칙” 제21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고, 비교란(작성연월일을 기재하는 줄 세 번째 칸)에 접수번호를 기재한다.</p> <p>②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공증인은 “서식규칙”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의 증서초과매수료란 중 수량항목에는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인증서의 장수에서 4를 뺀 장수를 기재하고, 금액항목에는 해당 장수초과 수수료의 액을 기재한다.</p> <p>③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수초과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공증인은 제1항 기재 증서초과매수료란 중 수량항목에는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인증서의 장수에서 4를 뺀 수에 2를 곱하는 장수를 기재하고, 금액항목에는 인증서 2통에 대하여 발생하는 각 장수초과수수료의 합산액을 기재한다.</p> <p>④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서사본의 제작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공증인은 “서식 규칙”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의 맨 아래 줄의 비교란 중 복사료 항목에는 해당 규정의 사본제작 수수료의 액을 기재하고, 그 맨 오른쪽 빈 칸(비고항목)에는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인증서 사본의 장수를 기재한다.</p>	<p>- 의견 없음</p> <p>- 의견 없음</p> <p>- 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대하여 지적한 것과 같이 정관, 의사록 인증 시 <u>교부용 인증서 및 보관용 인증서 두 통 모두 장당 250원의 장수 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u>에 대하여 신중 검토 필요</p> <p>- 의견 없음</p>

**2** 공증인 업무 광고 관련 지침 제정 건의  
(2019.5.24.자)

- 협회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일부 회원사무소의 광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법무부 차원의 광고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증인의 업무 광고가 가능한 대상과 범위, 방법, 금지사항 등 가칭「공증사무소의 광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줄 것을 2019.5.24. 법무부에 건의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44호(시행 2019.5.24.)>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공증인 업무 광고 관련 지침 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최근 협회로 접수된 공증인의 업무 광고에 관한 불임과 같은 회원 질의서에 대한 내부 논의 결과, 관련 규정이 없어 협회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부 회원사무소의 광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독기관인 귀 부에서 공증사무소의 광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화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증인의 업무 광고가 가능한 대상과 범위, 방법, 금지사항 등 가칭「공증사무소의 광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오니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증인 A 사무소의 질의서 사본 1부.
- (2) 공증인 B 사무소의 질의서 사본 1부.

\* 불임 (1)

공증인 A 사무소의 질의서 내용

제목 : 공증인 업무의 광고건

1. 대한공증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증사무소에 대한 광고는 회칙 등에 그 규정이 없으나, 공증사무소는 국가의 사무, 즉 공무원의 지위에서 국민 편의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소(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가 공증업무에 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광고를 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및 인터넷상 공증사무소의 주소를 벗어나 여러 장소에서 공증사무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허용되는지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또한 공증사무소의 광고와 관련 법무부에서의 지침이 있는지, 위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도 질문 드립니다.



\* 불임 (2)

공증인 B 사무소의 질의서 내용

공증인의 유료 인터넷 광고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혹시라도 존재하는지요?

③ 화상공증 인증정보 서면증명서 발급 업무지침 제정 요청(2019.9.19.자)

-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이나 화상공증의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로, 화상공증까지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사인(私人)이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 아직도 전자 공증문서보다는 종이로 된 공증문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협회에서는 촉탁인이 화상공증을 신청하면 동일한 취지의 종이증명서도 함께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인증정보의 서면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제정을 2019.9.19. 법무부에 공식 요청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72호(시행 2019.9.19.)〉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화상공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정보 서면 증명서 발급 업무지침 제정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공증인협회는 2010년 국제공증인협회(UINL)\*에 가입하였고, 우리 협회의 가입을 계기로 아시아지역위원회(CAAs)\*\*가 결성되었으며, CAAs는 2012년부터 매년 각국 이 순번을 정하여 회의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회원국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0차 회의를 우리나라가 위원장 국가가 되어 주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UINL : 국제공증인협회는[Union Internationale du Notariat Latin(불문 표기), International Union of Latin Notaries(영문 표기)]는 국제적 공신력이 높은 라틴계 공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88개국 공증인협회와 단체 및 공증인들의 국제적 단체로서 1948년에 설립되었음(한국은 2010.10.에 가입).

\*\*CAAs : UINL 위원회(Commissions) 중 UINL 회원국을 유럽(CAE), 아메리카(CAAm), 아프리카(CAAF), 아시아(CAAs) 지역으로 구분한 대륙별 위원회(Continental Commission) 중 아시아 지역의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6개국으로 구성된 회의체(2018년 UINL 총회에서 레바논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2020년도부터는 7개국으로 확대될 예정). CAAs는 UINL 대륙별 위원회 중 가장 늦은 2011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한국은 2012년도에 동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3.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2019년 9월 상임이사회에서 내년 회의 때 우리의 전자공증과

화상공증을 아시아 각국의 공증인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이나 화상공증의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화상공증까지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인(私人)이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 아직도 전자 공증문서보다는 종이 공증문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화상공증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촉탁인이 화상공증을 신청하면 동일한 취지의 종이증명서도 함께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촉탁인의 입장에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결과적으로 종이 공증문서를 받아 볼 수 있는 셈이 된다면 그 편리성으로 인하여 화상공증 제도의 이용이 그만큼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귀부의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별첨 “인증정보의 서면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우리 협회가 마련한 지침서안입니다.

\*\*\* 2018년도 전자공증 건수 : 373건(6월 이후 화상공증 141건 포함)

2019.1. ~ 2019.4. 전자공증 건수 : 99건(화상공

증 63건 포함)

4. 아무쪼록 귀 부에서 화상공증제도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협회가 마련한 지침서안을 참고하여 귀부의 지침을 신속히 제정·시행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만일 귀부의 의견이 협회 검토 의견과 달리 공증인법 제정이나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등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를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붙임 : 인증정보를 적은 서면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1부

#### \* 붙임

##### 인증정보를 적은 서면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제1조 이 지침은 지정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공증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인증정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할 경우에 지정공증인의 업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문서 등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인증을 촉탁하면서 전자문서 등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68조의8제2항에 따른 보관을 청구할 경우에는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이 녹화되는 동안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9 제2항에 따른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2조에 따른 서면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 지정공증인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촉탁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지정공증인은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출력한 후 전자문서 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급은 지정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촉탁인의 주소지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은 제3항에 따른 송달에 준용한다.

**제4조 ①** 지정공증인이 촉탁인에게 제3조에 따른 서면을 내어 줄 때는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증정보 제공의 수수료 외에 송달에 필요한 실비와 송달수수료를 받는다.

② 제1항의 송달에 필요한 실비에 대하여는 “공증인수수료 규칙” 제23조의2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의 송달수수료에 대하여는 그 제2항을 준용한다.

**4** 법인 발행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지침  
제정 건의(2019.11.15.자)

-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사업자가 촉탁인이 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증서 작성을 할 수 없다는 「공증인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공증인은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공증실무계 중심으로 전자어음법 제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서 ‘발행’은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이지 않거나 채무의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 원인채권관계로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발행할 경우는 제외된다고 한정해석하면서 원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이지 않거나 원인채무의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이라도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증을 받기 위하여 종이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고, 공증인도 그에 대한 공증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협회는 차제에 동 유권해석이 구체화 되는 것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고, 유권해석을 변경할 때는 전자어음법 적용 대상 법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회 차원의 「(가칭)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지침」(안)을 마련한 후, 2019.11.15. 법무부에 이를 제출하면서 공식 법무부 지

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89호(시행 2019.11.15.)>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가칭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지침’ 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사업자가 촉탁인이 되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당해 공정증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귀부는 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공증인법」 제25조제1호를 근거로 “전자어음 발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공증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공정증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전자어음 발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가 발행인으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공증인은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실무계 중심으로 약속어음공증제도는 신용 창출 기능이 있어 기업활동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바, 만일

「전자어음의 발생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함) 제6조의2의 “약속어음 발행”을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발행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담보가 부족한 신설법인이나 신용을 충분히 얻지 못한 법인이 거래를 트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수단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전자어음법의 제정 목적이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전자어음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어음법 제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서 ‘발행’은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실질적 원인관계가 존재하고 여기서 발생한 확정적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이지 않거나 채무의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 원인채권관계로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발행할 경우는 제외된다고 한정해석하면서 원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이지 않거나 원인채무의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이라도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증을 받기 위하여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고, 공증인도 또한 그와 같이 발행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이에 협회는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귀부의 유권해석이 구체화

되는 것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고, 유권해석을 변경할 때는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증을 할 때 공증인의 사무처리방법을 정하여 전자어음법 적용 대상 법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기준도 함께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붙임과 같이 「(가칭)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 부에서 유권해석의 변경 필요성을 포함하여 위 제정(안)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정하다면 곧바로 공증사무지침으로 제정·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칭)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지침」 제정 건의 1부.

**\* 붙임**

**「(가칭)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지침」 제정 건의**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증을 할 때 공증인의 사무처리방법을 정하여 공증사무의 통일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총액 확인의무) ① 공증인은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증을 촉탁받을 경우에는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나 직전사업연도 말의 총자산액이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전항의 확인을 할 때는 직전회계년도 재무상태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증인은 촉탁인이 제2항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조(자산총액의 10억 원 이상 인정기준) ①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직전회계년도에 관한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설립일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자산총액도 10억 원 미만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또는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공증인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또는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촉탁인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5조(담보목적 발행의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목적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을 인수할 수 있다.

1. 거래관계가 없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금액이나 발생시기가 불확정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

- 된 경우로서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를 소명하는 합의서 인증서가 제출된 때
2. 거래관계가 있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채무발생여부가 조건이나 불확정기한에 달려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로서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를 소명하는 약정서 인증서가 제출된 때
  3.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로서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를 소명하는 담보계약서 인증서가 제출된 때

제6조(담보목적 인정기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라도 발행인의 배서금지가 없는 약속어음은 담보목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7조(부속서류) 공증인은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한 때는 제2조,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면을 증서원본철에 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유권해석의 폐기) 이 지침의 시행으로 법인 발행 약속어음에 관한 중전의 유권해석( . . . )은 폐기한다.

**5 자기신탁 공정증서 서식 및 표준안 마련 건의(2019.11.15.자)**

- 자기신탁제도가 도입된 지 무려 7년이 지나았으나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서식이나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협회는 2019.11.15. 법무부에 자기신탁공정증서 서식 또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92호(시행 2019.11.15.)〉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자기신탁 공정증서에 관한 서식이나 표준안 마련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2012년 7월부터 도입된 자기신탁 즉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협회는 최근 회원으로부터 불임과 같이 자기신탁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서식, 기재사항 및 절차 등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를 받은바, 이에 대하여 내부 논의 결과, 협회의 답변 외에 보다 근원적인 해

결을 위하여 귀부에서 자기신탁 공정증서에 관한 서식이나 표준안을 마련하여주시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귀 부의 업무가 과중함을 알고 있지만, 자기신탁제도가 도입된 지 무려 7년이나 지났음에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귀 부에서 고려하시어 자기신탁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서식이나 표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 붙임 (1) 법무법인 C의 질의서 사본 1부  
 (2) 법무법인 C의 질의에 대한 협회의 회신 사본 1부

[※ 편집자 주 : 붙임 문서의 내용은 II. 공증업무 질의·회신 10 자기신탁 공정증서 작성 관련 질의 회신(2019. 11.15.자) 참조]

**6 초청장 인증 업무처리기준 마련 건의 (2019.11.21.자)**

- 협회는 회원 사무소로부터 국내 입국허가를 받는 데 사용되는 서류에 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업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시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협회는 공증실무 현장의 입장과 촉탁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절충하여 마련한 「(가칭) 초청장 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제1안) 및 인증법리

의 원칙에 충실하게 촉탁인이 작성한 원본 문서를 인증 대상 문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가칭) 여러 사서증서를 제출하면서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지침」(제2안)을 마련한 후, 2019.11.21.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제1안 또는 제2안 중 하나를 공식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93호(시행 2019.11.21.)〉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초청장 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최근 회원 사무소로부터 국내 입국허가를 받는 데 사용되는 서류에 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업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시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초청장 인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서나 재정보증서 또는 귀국보증각서 등 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원본 사서증서가 첨부된 채로 초청장을 인증해 주고 인증수수료는 초청장을 인증할 때 받는 금액만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수수료 할인행위에 해당하고, 각 사서증서 원본마다 인증을 부여

하여야 하는 인증 법리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된 업무처리 실태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3. 이에 협회는 초청장 인증 실태를 파악한 결과, 위와 같은 요청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초청장 인증과 관련하여 통일된 업무처리방법이나 기준이 하루빨리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공증사무소마다 다른 업무처리 방법이나 기준은 공증 제도에 관한 신뢰를 급격히 추락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 사안과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방법은 별첨과 같이 두 가지 방안입니다. 먼저 제1안은 공증실무 현장의 입장과 촉탁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절충하여 마련된 방안입니다. 제2안은 인증법리의 원칙에 충실하게 촉탁인이 작성한 원본 문서를 인증 대상 문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촉탁을 거절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공증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려면 귀 부의 지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협회는 귀 부에서 위 사안에 관하여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 2020년부터 위 제1안의 업무처리 방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귀 부에서 검토한 결과 위 제1안이 적정한 업무처리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제2안의 취지가 포함된 지침을 제정하여 조속

히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와 이에 건의합니다.

붙임 (1) 「(가칭) 초청장 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제1안) 1부

(2) 「(가칭) 여러 사서증서를 제출하면서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지침」(제2안) 1부

**\* 붙임**

**「(가칭) 초청장 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제1안)**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방법은 국내 입국허가를 얻는 데 필요한 초청장의 인증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초청장 인증과 관련된 공증제도의 신뢰를 공고히 함에 있다.

제2조(개별인증원칙) ① 공증인은 초청장에 대한 인증 촉탁을 받을 때 초청장에 촉탁인 작성의 다른 원본 문서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② 초청장에 피초청인의 신원 등을 보증하거나 담보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초청인 작성의 신원보증서나 재정보증서 또는 귀국보장각서 등(이하 '신원보증서 등'이라 한다.)이 첨부되고 촉탁인에게 '신원보증서 등'에 대한 인증촉탁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증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한 관련 문서로 보아 하나의 인증번호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인증방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



여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서나 인증문 또는 접수부와 인증부에 문서명을 기재할 때는 「초청장(첨부 신원보증서, 재정보증서 및 귀국보장각서 포함)」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제4조(인증수수료)** ① 초청장 인증의 기본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금 12,500원으로 한다. 다만, 외국어로 적은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2배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초청장에 ‘신원보증서 등’이 첨부된 문서를 인증할 경우에는 그 기본수수료는 초청장 인증의 기본수수료와 ‘신원보증서 등’ 인증의 기본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20 . . .)

이 업무처리방법은 20 . 1. 1.부터 시행한다.

**\* 붙임**

「(가칭) 여러 사서증서를 제출하면서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지침」  
(제2안)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지침은 동일한 촉탁인이 한꺼번에 여러 사서증서를 제출하면서 인증을 촉탁한 경우에 공증인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증제도의 신뢰를 공고히 함에 있다.

**제2조(개별인증원칙)** 공증인은 같은 촉탁인으로 부터 동시에 여러 사서증서에 관하여 인증촉탁을 받을 경우에는 사서증서마다 개별적으로 인증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사서증서 원본 첨부 의 경우)** 공증인은 인증할 사서증서에 촉탁인 명의의 다른 사서증서 원본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촉탁의 인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부 칙(20 . . .)

이 업무처리지침은 20 . . .부터 시행한다.

#### IV. 공증업무 지침·지시 등 회원 안내

##### 1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시행 회원 안내 (2019.3.22.자)

○ 「공증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의 제작 및 보존 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를 근거한 수수료 징수의 필요성에 대한 협회의 건의에 대하여, 법무부는 “사서증서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은 인증이 완료된 이후의 사무로서, 공정증서 작성 또는 사서증서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 등본을 제작 교부해주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에 따라 동 규칙 제24조제1항이 정한 증서의 등본 등 교부 수수료와 동일하게 장당 5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고,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된 방법으로 공증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마련하여 2019.3.22. 각 회원사무소에 회람(법무부에 대하여는 2019.3.27. 시행 안내)한 후, 동 업무처리방법을 2019.4.1.부터 공식 시행함

#####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26호(시행 2019.3.22.)〉

수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목 :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시행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법무부는 「공증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사본의 제작 및 보존 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를 근거한 수수료 징수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협회의 건의와 관련하여, “사서증서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은 인증이 완료된 이후의 사무로서, 공정증서 작성 또는 사서증서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 등본을 제작 교부해주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에 따라 동 규칙 제24조제1항이 정한 증서의 등본 등 교부 수수료와 동일하게 장당 5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된 방법으로 공증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인증서사본의 제

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4. 따라서 각 회원사무소에서는 2019.4.1.부터 인증한 사서증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보존할 경우에는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 수료를 반드시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동 업무처리방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 수수료는 기존의 장수초과수수료와는 별개임.
- (2) 인증서사본의 장수 계산 시 표지는 제외하고 인증문 용지는 포함함.
- (3) 사서증서의 장수 계산은 글자 수 등과 관계 없이 사서증서 장수에 의함.
- (4) 인증서를 2통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원본으로 보존하는 경우(정관이나 의사록 인증 또는 선서인증)는 해당 사항 없음.

**\* 예시**

- ① 1장짜리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후 인증서사본을 제작하여 보존하는 경우
  - ▶ 표지를 제외하고 사서증서 1장+인증문 용지 1장 등 총 2장에 대하여 각 장당 500원 씩 총 1,000원의 수수료 발생
- ② 5장짜리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후 인증서사본을 제작하여 보존하는 경우
  - ▶ 표지를 제외하고 사서증서 5장+인증문 용지 1장 등 총 6장에 대하여 각 장당 500원 씩 총

3,000원의 수수료 발생

- 붙임 (1)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1부
- (2) 각 회원사무소에 게시할 안내문 1부

**\* 붙임 (1)**

**인증서사본의 보존·제작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방법은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된 방법으로 공증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인증서사본 제작·보존의 수수료)** 「공증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사본을 제작·보존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수수료로 인증서사본에 대하여 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조(장수계산방법)** 제2조의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인증서사본의 장수를 셀 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표지는 장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산서 작성방법)** 제2조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의 품목 기재란 중 공란에 인증서사본 제작·

보존 수수료라고 기재하고, 그 줄 옆 칸에 제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장수를 기재하며, 그 옆 칸에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재한다.


부 칙 (2019.3.19.)

이 업무처리방법은 2019.4.1.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안 내 문**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의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 인증서사본의 장수에 따라 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추가 징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공증인협회**  
KOREAN NOTARIES ASSOCIATION

**1**-2.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관련 추가 회원 안내(2019.4.5.자)

- 2019.4.1.부터 시행중인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관한 일부 회원 사무소의 질의에 대하여, 협회는 2019.4.5. 각 회원사무소에 업무처리방법을 추가로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33호(시행 2019.4.5.)〉

수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목 :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관련 추가 안내

1. 우리 협회 문서번호 공증협 제2019-26호 (2019.3.22. 시행)와 관련입니다.
2.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관한 일부 회원 사무소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동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수수료는 기본의 장수초과수수료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본의 장수초과수수료는 회원사무소에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징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증서의 장수초과수수료에 관하여는 회원사무소마다 달라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협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와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2)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수수료는 등본

발급 수수료와 유사한 것이므로 인증대상인 사서증서가 뒷면에도 내용이 기재되어 양면을 활용하여 작성된 경우에 장수를 계산할 때는 등본수수료를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면 제작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양면 1장은 2장으로 계산합니다.

- (3)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수수료는 등본 수수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와 별개이므로 그 상한액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즉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할 때 실제 지급받는 구체적인 수수료 총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1-3.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철저 준수 회원 안내(2019.7.24.자)**

- 2019.4.1.부터 시행중인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정기 및 특별 검열 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열에 임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므로 동 업무처리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2019.4.5. 각 회원 사무소에 요청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63호(시행 2019.7.24.)>

수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목 : 인증서사본 제작·보존 수수료 징수 업무 처리방법 철저 준수 안내

1. 우리 협회 문서번호 공증협 제2019-26호(시행 2019.3.22.) 및 제2019-33호(시행 2019.4.5.)와 관련입니다.
2. 협회가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2019.4.1.부터 시행중인 「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최근 동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인증서사본 제작·보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공증사무소에 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협회는 동 업무처리방법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에 정기 및 특별검열 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열에 임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인바, 각 회원 사무소에서는 동 업무처리방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정증서 정보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업무 처리 방법 회원 안내(2019.3.6.자)**

- 공정증서 정보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법무부 지침을 2019.3.6. 각 회원사무소에 회람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19(1)호(시행 2019.3.6.)>

수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목 : 공정증서 정보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업무처리 방법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증서 정보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법무부 지침을 붙임과 같  
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증인법 제  
56조의2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의 정보  
에 부착된 어음·수표는 기존의 방식대로  
공시최고절차(제권판결)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분실사유서 양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https://enotary.moj.go.kr>) 내부 공지(로그인  
후 확인)에서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  
니다.

붙임 : 법무부의 “공정증서 정보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업무처리 방법 안내” 공문  
사본 1부

\* **붙임 : 법무부 문서번호 법무과-1938  
(2019.2.28. 시행) 공문 내용**

제목 : 공정증서 정보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업무  
무처리 방법 안내

1. 대한공증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  
니다.

2. 공정증서 정보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  
니 각 공증사무소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 공정증서 정보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업무처리 방법 1부

**# 공정증서 정보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업무  
처리 방법**

(1) 검토배경

- 경찰청의 ‘공정증서 재교부를 위한 분  
실신고접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 공정증서 정보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분실신고접수증 없이  
재교부하도록 업무개선 요청

(2) 현황

- 공정증서 정보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청  
구하는 경우 재교부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의 분실신고접수증을 제출  
하도록 함

※ 공증인법 시행령 제16조(증서 정보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보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보를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  
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 공정증서 분실신고접수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증사무소  
밀집 지역(법원 근처 등)의 경찰서, 파  
출소에 신고가 집중되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정증서 분실신고접수	4,716건	5,173건	5,456건

- 법원의 경우 판결문 정본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분실사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3) 검토

- 분실신고접수증은 신고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련 없이 단순히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여도 공시 등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판결문 정본 재교부와 같이 공정증서 정본 재교부 청구자가 분실사유서에 소정사항(분실물, 분실자, 분실일시, 분실장소, 분실경위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함
- 따라서 추후 정보 분실에 따른 재교부시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첨]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서(서식규칙 별지 제16호서식)와 함께 보존하여야 함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 이율 인하 안내(2019.5.29.자)

- 대통령령 제29768호로 2019.5.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2019.6.1.부터는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인하여 시행됨을 2019.5.29.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46호(시행 2019.5.29.)>

수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 이율 인하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29768호로 2019.5.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2019.6.1.부터는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인하여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집행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5.21, 일부개정) 1부.

\* 붙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6.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5.2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부칙 <제29768호, 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4**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시행  
(2019.6.21.자)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제 7호서식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를 회칙 등에 따라 협회에도 2019. 7월부터 보고할 수 있도록 공식화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55호(시행 2019.6.21.)〉

수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목 :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시행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칙 제9조제7호에 따르면 회원은 매월 공증사무 처리현황을 협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원 사무소는 2019. 7월부터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제7호서식에 따라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를 마친 후, 즉시 그 사항을 그대로 출력한 다음 공증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협회에 팩스(02-3476-5551)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서식 참조).

3. 참고로 각 회원 사무소에서 보내주신 공증업무처리현황 자료는 현재 장부인증 신청권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적회비제도를, 2020년도(예정) 이후부터는 실제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붙임 :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서식 1부

[※ 편집자 주 : 붙임 서식은 생략함]

## V. 기타 주요 활동

### 1 임원 변동 현황

#### (1) 사임

- 김승훈 상임이사
  - 2019.3.14. 사망(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자격 상실(사임 처리)
- 양재환 이사
  - 2019.10.4.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 제출

#### (2) 직무변경

- 박형연 상임이사
  - 총무 업무와 국제 업무 겸직에서 국제 업무 전담으로 직무 변경

#### (3) 임원 추가 선임

- 공보 담당 상임이사로 임명공증인 안경재 변호사 추가 선임.
  - 주요 경력
    - 1989.2. 춘천고등학교
    - 1994.2. 한림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2004.10.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 2005. 한국경제TV '부동산TODAY' 생방송 상담변호사
    - 2008.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 2012.2. 법무법인 케이알 변호사
- 2013.7.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

### 2 징계처분 결과 사례에 따른 주의 촉구 안내 (2019.3.25.자)

-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은 징계처분 결과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위반행위로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하여 줄 것을 2019.3.25. 각 회원 사무소에 안내함.

####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27호(시행 2019.3.25.)>

수신 : 각 회원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목 : 참석인증 시 법령준수 촉구

1. 협회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징계처분 결과 (임명공증인 5인과 인가공증인 10개소 및 공증담당변호사 16인)를 통보받았습니다.
2. 이에 협회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위반행위로 회원님들께서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주요 징계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증인의 결격사유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신원조회

- 의뢰에 따른 결과통보를 서면으로 받기 전 유언공정증서 작성의 경우 포함)
- ② 채권자인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 상대방인 채무자 등을 대리한 경우에는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4조에 따라 집행증서 작성의 촉탁을 거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집행증서를 작성한 경우
  - ③ ‘대부업자 등’이 채권자로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선임에 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여를 한 경우에는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4조에 따라 집행증서 작성의 촉탁을 거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집행증서를 작성한 경우
  - ④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일 내에 증서의 건명·번호 및 작성연월일,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 기재 유무 등의 사항을 촉탁인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거나

- 3일을 경과하여 통지한 경우
- ⑤ 사서증서를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마친 다음 인증부와 간인한 후 그것을 사본하여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증사무소 보존용 인증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존한 경우
- ⑥ 증명서 원용 서식에 하도록 되어 있는 공증인의 서명날인을 누락한 경우
- ⑦ 인증을 할 경우에 사서증서인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간인을 누락한 경우나 아직 인증하지 않은 등부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인증부에 간인을 해둔 경우
- ⑧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증액한 경우

3. 각 회원 사무소에서는 공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적회비 변경 책정 시행(2019.4.8.부터)**

○ 2019.3.30. 개최된 2019년도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2019.4.8.부터 실적회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책정하여 시행함.

\* 실적회비 변경 책정 : 시행 2019.4.8.(월)부터

구 분	종전 실적회비(조제비용 포함 기준)		변경 실적회비(조제비용 포함 기준)	
	1건 기준	1권 기준	1건 기준	1권 기준
증서원부	80원	8,000원	300원	<b>30,000원</b>
인증부	50원	5,000원	300원	<b>30,000원</b>
확정일자부	25원	2,500원	50원	<b>5,000원</b>

**4** 합동특별감독 후속조치 건의  
(2019.5.20.자)

- 2018.10.31.부터 2019.2.12.까지 법무부 공증감사반과 협회 조사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공증 수수료 할인 또는 비대면공증 등 공증법령을 위반한 회원 사무소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조치 및 직무정지 명령,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2019.5.20. 법무부에 요청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40호(시행 2019.5.20.)〉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합동특별감독 후속조치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근거한 협회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 일부 위탁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8.10.31.부터 2019.2.12.까지 귀 부 공증감사반과 협회 조사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총 19개 감사 대상 회원 사무소 중 12개소가 매출 대비 세금신고 금액을 최소 10% 내지 최대 60%까지 축소하거나 공증인보조자의 연봉을

고액으로 계상함으로써 사실상 공증 수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공증 수수료 할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공증 수수료 할인 행위의 뒷면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공증사건 대량유치라는 비위행위가 수반되고 있고, 이는 곧 공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비대면공증 등 위법행위 양산은 물론 부실공증으로 이어짐으로써, 결국은 국민에 대한 공증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에 협회는 대국민 공증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활동 강화 차원에서 금번 합동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하니,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증인법에 따른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조치 및 직무정지 명령
- (2) 리베이트 제공 등 형사비리혐의가 있는 곳은 관할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 (3) 세금 탈세나 탈루,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 (4) 공증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는 공증인뿐만 아니라 공증인 보조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므로 차체에 공증인 보조자의 구체적 결격사유를 공증법령에 신설

5. 아울러 공증인법 상 공증수수료 할인 행위나 비대면공증 등 공증제도 근간을 흔드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징계양형을 대폭 상향하고 공증인 임기(유효기간) 만료 시 재임명(재인가) 받을 수 없도록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5** 법무부에 유증된 예금의 지급 거절 사례 관련 시정요구 요청(2019.5.24.자)

○ 일부 금융기관에서의 유증된 예금의 지급 거절 사례와 관련하여, 협회는 법무부 차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 및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2019.5.24. 법무부에 제출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43호(시행 2019.5.24.)>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유증된 예금의 지급 거절 사례 관련 시정 요구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의 유증된 예금의 지급 거절 사례와 관련하여, 협회는 귀 부 차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와 금융감독원 및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불임과 같은 시정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증된 예금의 지급 거절 사례 관련 시정요구 요청서 1부.

\* 붙임

**유증된 예금의 지급 거절 사례 관련 시정 요구 요청서**

본 협회는 귀부가 일부 금융기관의 유증된 예금 지급 거절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 및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의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귀부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유증된 예금에 대하여 유언자 사후에 유언집행자 등의 유언 공정증서 정본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전체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첨부 '경위서' 참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통상의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을 출금하려

면 상속인 전원이 함께 출금 신청을 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위임을 받아야 출금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유언공증으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유증권리자인 수증자(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가 함께 유언자의 예금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 가서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유언자의 기본증명서와 유언 공정증서 정본 및 유언집행자와 수증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 : 참고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유언 공정증서 정본을 제시하여 공동으로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고(민법 제 1103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01조).

위 사례와 같이 일부 금융기관에서 유언집행자에게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일일이 받으러 다녀야 한다는 것은 유언자의 뜻이나 공증을 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관하여 상속인의 대리인설, 유언자의 대리인설, 상속재산의 대표자설, 직무설, 특수

한 형태의 대리인설 등이 있고, 우리 민법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1항).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가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수증자와 함께 유언자의 예금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가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와 유언 공정증서 정본 및 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예금을 출금하거나 수증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유증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 상속인들의 동의서 없이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유언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집행이라는 임무를 가진 유언집행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참조)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당해 유언이 최종 유언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출금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정되어야 할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유언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온 유언집행자와 수증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민법 제470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여 금융기관에게 당해 유언이 최종 유언인지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최종 유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4. 요컨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예금을 유증하였는데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유언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일부 금융기관에서 다른 상속인의 자료를 요구하며 예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나, 법원 등 기소에서 관장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분란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거절 행태는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부 금융기관이 끝내 위와 같이 예금지급을 거절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예금액과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연 15%)(※ 주 : 2019.6.1.부터는 연 12%)까지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 금융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분란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근원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귀부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유증된 예금에 대한 지급 거절 사례와 관련하여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 및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오니 적의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실 내용의 요지는 “유언집행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대리인으로 간주되고(민법 제 1103조제1항), 유언 목적물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집행이라는 임무를 가진 유언집행자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 8345 판결 참조)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유언 공정증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에 유언의 본지에 따라 예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유언이 최종 유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은 당해 유언이 최종 유언인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6. 유언공증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은행의 지급거절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7. 다시 한 번 귀부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6**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추천  
(2019.6.17.자)



- 법무부가 협회에 추천 의뢰한 공증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웅 한기봉 법제교육위원회 위원, 임명공증인 박상진 법제교육위원회 위원을 2019.6.17. 각각 법무부에 추천함.

**7 몽골공증인회 주최 2019년도 CAAs (아시아지역위원회) 제9차 정기회의 참석(2019.6.27.~2019.6.28.)**

- 몽골공증인회 주최로 2019.6.27.(목)~28.(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2019년도 UINL(국제공증인협회) CAAs (아시아지역위원회)에 참석, 박중순 부협회장이 “한국 공증제도의 현황과 전망 (Yearly Report, future perspective)”를, 박형연 총무이사가 “취약계층 권리 보호와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공증인의 역할(The Role of notari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property rights of disabled person, minors and elderly persons and combating terrorism financing and money)”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 특히 이번 회의에서 2020년도 CAAs 위원장 국가로 대한공증인협회가 내정됨.

**● 2019년도 CAAs 정기총회 주요 일정**

- (1) 일시 : 2019.6.27.(목)~6.28.(금)
- (2) 장소 : 몽골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
- (3) 참석 : 남상우 협회장, 이춘희 부협회장,

박중순 부협회장, 박형연 총무(국제)이사, 김창호 사무국장 등 총 5명

- (4) 참가국 : 주최국인 몽골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CAAs 6개 회원국과 UINL 산하 CCNI 위원장,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의 공증인 80여 명이 참석
- (5) 회의결정사항 : 협회가 2020년도 차기 회의 개최국으로 선정

**● 개략적인 일정 및 발표 주제**

(1) 6.27.(목)

- 08:00~09:00 (국제심포지엄) 등록
- 09:00~09:30 (국제심포지엄) 개회식
- 09:30~12:00 국제심포지엄(주제: 장애인, 미성년자 및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증인 조직의 역할 [the Role of notary or organization in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of disabled person, minors and elderly persons])
  - \* 단, CAAs 회원국별 발표 계획은 알려진 바 없음
- 12:00~13:00 2019 CAAs 본회의 (사전미팅)

- ➔ 몽골공증인협회장 인사말
- UINL 회장 인사말
- CAAs 현황 보고

CAAs 재무 보고

2020년도 CAAs 위원장, 부위원장,  
재무 선정

- 13:00~14:00 점심 식사
- 14:00~18:30 자유 시간
- 18:30~21:00 환영만찬

(2) 6.28.(금)

▶ CAAs 등록 및 개회식

- 08:30~09:00 (CAAs) 등록
- 09:00~09:10 개회식(사회 : 몽골  
공증인협회 부협회장)
- 09:10~09:20 몽골 법무내무부장관  
축사
- 09:20~09:30 울란바토르 시장 겸  
주지사 축사
- 09:30~09:40 UINL 회장 인사말
- 09:40~09:50 몽골공증인협회장 겸  
CAAs 위원장 인사말
- 09:50~10:10 단체사진 촬영

▶ 제1주제 발표 : 각 국의 현황 및 향후 전망  
(각 15분씩 발표)

[Yearly Report, future perspective ]

- 10:10~10:25 몽골
- 10:25~10:40 일본
- 10:40~10:55 인도네시아
- 10:55~11:15 휴식(커피 브레이크)
- 11:15~11:30 중국
- 11:30~11:45 한국
- 11:45~12:00 베트남

▶ 12:00~14:00 점심 식사

▶ 제2주제 발표 : 취약계층 권리 보호와 테러  
자금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공증인  
의 역할(각 15분씩 발표)

[The Role of notari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property rights of disabled  
person, minors and elderly persons and  
combating terrorism financing and money]

- 14:00~14:15 몽골
- 14:15~14:30 일본
- 14:30~14:45 인도네시아
- 14:45~15:00 중국
- 15:00~15:15 한국
- 15:15~15:30 베트남
- 15:30~15:55 휴식

▶ CAAs 폐회식 (각 회원국 대표자 폐회사 5  
분씩 발표)

- 15:55~16:00 일본공증인협회장
- 16:00~16:05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장
- 16:05~16:10 중국공증인협회장
- 16:10~16:15 대한공증인협회장
- 16:15~16:20 베트남공증인협회장
- 16:20~16:30 몽골공증인협회장 겸  
CAAs 위원장
- 16:30~16:50 2019 CAAs 결의문  
(회의록) 채택 및 서명
- 16:50~17:00 폐회

▶ (환송) 만찬

- 17:00~19:30 휴식 및 만찬 장소 이동  
(ASIM villa, 차량으로)

40분 이동)

- 19:30~21:30 (환송) 만찬

**8** 인가공증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가 신청 안내(2019.9.23.)

○ 전국의 모든 인가공증인의 유효기간이 「공증인법」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에 따라 2020.2.6.(목)자로 종기될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협회는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 회원들은 「공증인법 시행령」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에 근거하여 신원조회를 포함 제반 서류가 각 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효력 종기일 3개월 전인 2019.11.6.(수)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도달되도록 신청(각 지방검찰청에서 따로 요청한 시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고려하되, 가급적 10.18.(금)까지 신청)하도록, 2019.9.23. 및 2019.10.7. 각 인가공증인 회원에게 안내함.

● 참고 : 인가공증인 재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 (1) 인가공증인 재인가신청서 1부.
- (2) 인가공증인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 (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사진 첨부)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관련

공증담당변호사님의 법조경력(10년 이상)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판사 경력은 법원(법원행정처)에서,  
검사 경력은 법무부에서,  
변호사 경력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가입 회원은 온라인 로그인 후 자격등록증명원(상세사항) 발급을 신청한 후 출력하거나, 변호사 신분증 지참 후 대한변호사협회(회원팀)를 직접 내방하여 신청)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서를 각 첨부

-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사진 첨부)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관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인바,

종합병원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회원사무소 인근 의원 내지 병원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첨부. 단, 2019.2.7. 이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 공증담당 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불요.

\* 만일,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등의 판정이 난 경우, 공증인으로서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한 의사의 확인서를 추가 제출.

-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편집자 주 : 상기 서식 중 (1)과 (5)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www.koreanotary.or.kr) 서식자료실에서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9** 제13회 공증주간(2019.9.23.~2019.9.27.) 설정 및 공증인 사무직원 연수교육(2019.9.25.) 시행

- 협회는 법무부와 공동 주최로, 공증제도가 사인 간 거래 시 증거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하며,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수단임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하여 2019.9.23.(월)~27.(금)까지를 “제13회 공증주간”으로 설정함.
- 제13회 공증주간 행사는 제3회 공증주간 때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대내외 행사 격년제 간소화 방침에 따라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 일체의 대내외 행사를 시행하지 않음.
- 다만, 제13회 공증주간을 기념하고 공증인법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규정에 따라 공증인 보조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2019년도 공증인 사무직원 연수교육”을 2019.9.25.(수) 14:00~18:00까지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① 공증제도 개관(강사: 법무부 신현석 사무관), ② 공증감사 시 주요 지도사항(강사: 법무부 손주근 검찰사무관), ③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내용 설명(강사: 협회 박중욱 법제이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동 교육에 전국 총 226개 회원 사무소의 공증인 사무직원 229명(각 사무소별 1명. 단, 3개소는 2명씩 참석)이 참석함.

**10** 제3차 권역별(광주지방검찰청 관할 내) 회원 간담회 개최(2019.10.1.)

- 협회와 회원의 공증업무 처리 고충과 실무적 애로사항을 직접 회원들을 찾아가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며,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권역별 회원 간담회를 추진, 2019.10.1. 광주지방검찰청 관할 내 회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임원과 참여 회원 간 공증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 간담회 일정 및 내용

- (1) 일시·장소 : 2019.10.1.(화) 18:30~21:30, 광주 서구 소재 일식당
- (2) 참석회원 : 방영철(법인 광주로펌) 변호사 등 총 7명
- (3) 협회참석 : 협회장, 사무국장
- (4) 간담회내용 : 협회 업무보고 및 회원 의견 청취
  - 공정증서 경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 의사록 인증 등 일부 불합리한 공증 수수료의 개선 추진
  - 보증기간 또는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한

제도 개선 검토

- 법인 발행의 약속어음 공증 제도의 개선

### 11 UINL 아시아지역위원회 임기 3년 위원장에 선임(2019.11.27.)

- 2019년 6월 몽골에서 개최된 UINL 산하 CAAs 회의에서는 대한공증인협회 남상우 협회장이 2020년도 1년에 국한하여 CAAs 위원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정되었으나, 2019.11.2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UINL 2019년도 정기총회 겸 제29차 국제공증인대회에서 UINL 다른 기구조직과 동일하게 임기 3년의 위원장으로 변경되어 선출되었음.
- 임기는 2020.1.1.부터 2022.12.31.까지로, CAAs 정기 회의는 2020년 한국, 2021년 베트남, 2022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임.

### 12 외국 공증단체와의 교류

- 몽골공증인회가 2019.11.2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UINL 2019년도 정기총회 겸 제29차 국제공증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는 중에 2019.11.22. 공증인 안경재 사무소와 협회를 각각 내방하고, 협회 임원진과 함께 한국 공증제도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짐.

- 러시아연방공증인연합회 대표단이 2019.12.10. 협회를 내방하고, 협회 임원진과 함께 양국의 공증제도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짐.

### 13 협회 사무국 임대차계약 갱신 및 이전 준비 추진

- 협회 사무국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2019.8.19.)에 따라 임대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측과 임대기간을 2년(2019.8.20.~2021.8.19.) 더 연장하되, 추후 재계약 없이 만료되는 것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기존 약 2억 원에서 약 3억 원 증액을 요구하여, 총 5억 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함.
- 협회는 변호사회관에서의 사무국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회관 건물을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 사무국 이전 등 준비를 담당할 TF를 구성함.

**VI. 2019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 2019.1.4. : 2018년도 연수교육 상황 및 실적 보고 / 법무부
- 2019.1.4. : 질의(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실효 조건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19.1.4. : 질의(확인서 및 합의각서 수수료 관련) 회신 / 일반인 ○○○
- 2019.1.7. : 2019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인증서의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수정안) 논의 ② 2019년도 사업계획 논의 ③ 법무부와의 합동감독 시행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수당 지급 논의 ④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 출석 수당 증액 논의 ⑤ 감사 출석 수당 증액 논의 ⑥ 임원에 대한 업무수행 초과수당 지급 논의 ⑦ 공증실무상시자문위원회에 대한 상담수행 초과수당 지급 논의 ⑧ 2019년도 사무국 지원 연봉(급여) 책정 논의 ⑨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⑩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⑪ 기타 논의
- 2019.1.10.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법무부
- 2019.1.11. : 2019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
- 2019.1.17.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106호) 관련 의견 제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9.2.11. : 2019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대행 등 공증인법 제87조 위반 불법광고 근절 방안 논의 ② 공증 수수료 제도 개선 추진 TF 구성 논의 ③ 공증인 증 제작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지침 개정 ④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검토 ⑤ 실적회비 변경 책정 논의 ⑥ 선거관리위원회규칙안 논의 ⑦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논의 ⑧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논의 ⑨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⑩ 기타 논의
- 2019.2.15. : 2019년도 제1차이사회 겸 제4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통지 / 이사회 구성원
- 2019.2.17. : 2019년도 제1차 조사위원회 개최 통지 / 조사위원회 구성원
- 2019.2.26. :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송부 / 법무부
- 2019.2.27. : 2019년도 제1차 조사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무부·협회 합동 특별감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논의 ② 공증인법 제87조 위반 불법광고 근절 방안 논의 ③ 기타 논의
- 2019.3.4. : 2019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상임이사 추가 선임 논의 ② 합동특별감사 후속조치 등 관련 조사위원회 건의 사항 논의 ③ 공증인 업무 광고에 대한 질의 논의 ④ 실적회비 변경 책정 논의 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 논의 ⑥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⑦ 기타 논의
- 2019.3.6. : 공정증서 정본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업무처리 방법 안내 / 회원
- 2019.3.6. :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겸 제4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의안 자료 추가 송부 / 이사회 구성원
- 2019.3.11. :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겸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9년도 사업계획 승인 (원안 의결) ②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③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안 승인 (원안 의결) ④ 실적회비 변경 책정안 승인 (원안 의결) 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안 승인 (원안 의결) ⑥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승인 (원안 의결) ⑦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 공증실무 질의에 대한 답변 검토 논의 (원안 의결) ⑧ 기타
- 2019.3.14. : 질의(주주총회 감사 선임 시 의결권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19.3.19. : 공증인법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 법무부
- 2019.3.19. : 2019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관련 법무부 검토 의견 논의 ② 기타 논의
- 2019.3.20. :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통지 / 회원
- 2019.3.22. : 대한공증인협회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보고 / 법무부
- 2019.3.22. :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시행 안내 / 회원
- 2019.3.25. : 징계처분 결과에 따른 주의 촉구 안내 / 회원
- 2019.3.27. :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시행

안내 / 법무부

- 2019.3.27. : 장부(증서원부) 파쇄에 따른 재인증 교부 보고 / 법무부
- 2019.3.31. :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상임이사 추가 선임(원안 의결) ②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정(원안 의결) ③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원안 의결) ④ 실적회비 변경 책정(원안 의결) 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 승인(원안 의결) ⑥ 기타

※ 2019년도 정기총회 회의 자료집 및 의사록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중 '서식 및 문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 2019.4.4. : 대한공증인협회 임원 중 상임이사 선임 통보 / 공증인 안경재
- 2019.4.5. : 2019년도 정기총회 결과 안내 및 보고 / 회원 및 법무부
- 2019.4.5. : 실적회비 변경 책정 시행 안내 / 회원
- 2019.4.5. :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관련 추가 안내 / 회원
- 2019.4.5. : 2019년도 『공증과신뢰』(통권 제

12호) 게재 원고 모집 안내 / 회원 및 법원행정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민사판례연구회

- 2019.4.8. : 2019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몽골공증인회 주최 2019년도 CAAs 제9차 회의 참석자 및 주제발표자 선정 등 제반 논의 ② 협회장 및 부협회장, 상임이사 임원에 대한 업무수당 변경 논의 ③ 감사 출석수당 변경 논의 ④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 출석수당 변경 논의 ⑤ 공증실무상시자문위원회에 대한 상담수당 변경 논의 ⑥ 상임 임원 및 공증실무상시자문단 특별수당 지급 논의 ⑦ 법무부와의 합동감독 시행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수당 검토 논의 ⑧ 사무국장 직무수당 지급 논의 ⑨ 2019년도 사무국 직원 연봉(월급) 책정 ⑩ 공증인법 제87조 위반 형사고발 관련 협회장 무고죄 피소에 따른 대처 방안 논의 ⑪ 유증된 예금의 지급거절에 대한 대책 검토 ⑫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⑬ (추가 의안) 공증인 업무 광고에 대한 질의 재논의 ⑭ (추가 의안) 합동특별감독 후속조치 등 관련 조사위원회 건의 사항 시행 논의 ⑮ 기타 논의
- 2019.4.25. : 공증인가 취소된 법무법인 ○○의 과년도 증서원부 교부신청 관련 검토 요청 / 법무부



- 2019.5.3. : 장부(증서원부) 분실에 따른  
재인증 교부 보고 / 법무부
  
- 2019.5.13. :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회장 재선  
출에 따른 축하인사 서한(이메일) 발송 / 인도네  
시아공증인협회
  
- 2019.5.14. : 2019년도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문서관리프로  
그램 보급 사업 추진 논의 ② 국제공증인  
대회 참석 여부 결정 논의 ③ 합동특별감  
독 후속조치 건의 논의 ④ 공증인 업무 광  
고 허용 기준 논의 ⑤ 유증된 예금의 지급  
거절에 따른 대책 논의 ⑥ 등기수수료 덤  
핑행위 풍문 관련 건의 및 대책 논의 ⑦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제출 논의 ⑧ 『공증과신뢰』  
발간 논의 ⑨ 사무국 직원 처우 조정 논의  
⑩ 법제교육위원회 위원 보강 및 특별수  
당 지급 논의 ⑪ 서식의 문구 변경 사용  
가능 여부 질의 논의 ⑫ 후견계약공정증  
서 수수료 산정기준 질의 논의 ⑬ 조합원  
총회 등 참석인증 수수료 질의 논의 ⑭ 전  
자어음 발행의무 사업자의 촉탁에 의한  
어음공정증서 작성 관련 질의 논의 ⑮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⑯ 기타 논의
  
- 2019.5.20. : 합동특별감독 후속조치 건의 /  
법무부
  
- 2019.5.22.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의견 제출 / 법무부
  
- 2019.5.24. : 질의(유증된 예금의 지급 거절  
사례 관련) 회신 / 공증인 ○○○
  
- 2019.5.24. : 유증된 예금의 지급 거절 사례  
관련 시정요구 요청 / 법무부
  
- 2019.5.24. : 공증인 업무 광고 관련 지침 제정  
건의 / 법무부
  
- 2019.5.29. : 법제교육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안내 / 회원
  
- 2019.6.3. : 2019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실무 질의(서  
식의 문구 변경 사용 가능 여부, 후견계약  
공정증서 수수료 산정기준, 조합원 총회  
등 참석인증 수수료, 사실조회 등) 회신  
논의 ② 공증문서관리프로그램 보급 사  
업 추진 논의 ③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  
정안 건의 논의 ④ 국제자금세탁방지기  
구 상호평가 관련 수검자 수련회 참석 요  
청 논의 ⑤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  
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⑥ 기타 논의
  
- 2019.6.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  
호평가 현지실사 대비 수검자 수련회 참석 요청  
회신 / 금융위원회

- 2019.6.5. : 질의(서식의 문구 변경 가능 여부 관련) 회신 / 공증인 ○○○
- 2019.6.5. : 질의(조합원 총회 등 참석인증 수수료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
- 2019.6.5.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노○○ 유가증권위조등” 사실조회 회신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과
- 2019.6.12. : 일본공증인연합회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축하인사 서한(이메일) 발송 / 일본공증인연합회
- 2019.6.17.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추천 / 법무부
- 2019.6.21. :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시행 / 회원
- 2019.7.9. : 2019년도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상임이사 업무분장 변경 및 업무수당 조정 ② 법제교육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③ 합동특별감독 시행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수장 지급 논의 ④ 제13회 공증주간 기념 공증 사무직원 교육 시행 논의 ⑤ 모범 공증 사무직원 표창 시행 논의 ⑥ 인증서사본 수수료 지침 위반 제보에 대한 처리방향 논의 ⑦ 초청장 관련 인증업무 수수료 지침 마련 건의 논의 ⑧ 사무국 임대차 관련 논의 ⑨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안 건의 (계속)논
- 의 ⑩ 공증인 징계 관련 제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향 논의 ⑪ 공증실무 질의(후견 계약공정증서 수수료 산정기준, 자기신탁 공정증서 작성) 회신 논의 ⑫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⑬ 기타 논의
- 2019.7.11. :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 개정안 제시 / 법무부
- 2019.7.15. : 제13회 공증주간 설정 협조 요청 / 법무부
- 2019.7.15. : 2019년도 공증인 사무직원 연수 교육 시행 교육장소 및 강사 협조 요청 / 법무부
- 2019.7.15.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92호) 관련 의견 제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9.7.16. : 사무실 임대차 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계약 기간 연장(재계약) 요청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19.7.24. : 진정서(민원) 이첩 및 이첩 안내 / 법무부 및 민원인 ○○○
- 2019.7.24. :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철저 준수 안내 / 회원
- 2019.8.9. : 법제교육위원회 위원 모집 (추가)

선임 통지 / 선임 위원

- ▶ 법제교육위원회 추가 선임 위원(가나다순. 선임일부터 2020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박형섭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 최성진 [공증인가 법무법인 통일]
  - 최직렬 [임명공증인]
  - 한기봉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웅]

□ 2019.8.12. : 2019년도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합동특별감독 결과 미징계 회원에 대한 징계 등 요청 논의 ② 초청장 관련 인증업무 수수료 징수 업무 처리방법 등 제정안 논의 ③ 제3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 개최 논의 ④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논의 ⑤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논의 ⑥ 공증실무 질의(후견계약공정증서 수수료 산정기준, 자기신탁 공정증서 작성) 회신 논의 ⑦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⑧ 기타 논의

□ 2019.8.16. : 2019년도 공증 사무직원 연수교육 시행 및 참가 등록 안내 / 회원

□ 2019.9.9. : 2019년도 제1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사무국 임대차 계약 갱신 등 논의 ② 합동특별감독 결과 미징계 회원에 대한 징계 등 요청 (재)논의 ③ 인증정보의 서면증명서

- 발급 업무처리지침 제정 요청 논의 ④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변경 논의 ⑤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안 변경 논의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및 위원장 내정 논의 ⑦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논의 ⑧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의 ⑨ 국제세미나 참석에 따른 상임이사회 출석 인정 논의 ⑩ UINL 총회 및 제29차 국제공증인대회 참석 범위 등 (재)논의 ⑪ 제3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 개최 논의 ⑫ 공증실무Q&A 자료 검토 및 분류 작업에 따른 업무수당 책정 논의 ⑬ 공증실무 질의(후견계약공정증서 수수료 산정기준, 자기신탁 공정증서 작성) 회신 논의 ⑭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⑮ 기타 논의

□ 2019.9.16. : 임대차 계약 조건 재검토 협조 요청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19.9.17. :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겸 제12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통지 / 이사회 구성원

□ 2019.9.17. : 제3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 개최 안내 / 광주지방검찰청 관할 내 회원

□ 2019.9.19. : 화상공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정보 서면증명서 발급 업무지침 제정 요청 / 법무부

- 2019.9.20. : UINL 산하 CAAs 2020년도 위원장 후보 신청(이메일) 발송 / UINL
- 2019.9.20. : UINL 이사회 이사 후보 재신청(이메일) 발송 / UINL
- 2019.9.23. : 인가공증인 유효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재인가 신청 안내 / 인가공증인 회원
- 2019.10.8. :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겸 제1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승인 (원안 의결) ②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③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④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승인 (원안 의결) ⑤ 각종 국제교류 관련 논의 (상임이사회에 위임 의결) ⑥ 기타
- 2019.10.15. :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통지 / 회원
- 2019.10.16. : 대한공증인협회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보고 / 법무부
- 2019.10.25. : 초청장 발송 / 몽골공증인회
- 2019.11.2. :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원안 의결) ②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 (원안 의결) ③ 재정규칙 일부개정 (원안 의결) ④ 기타

※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회의 자료집 및 의사록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중 '서식 및 문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 2019.11.5. : 초청장 발송 / 러시아연방공증인연합회
- 2019.11.5. : 대한공증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임명 통보 / 신임 위원장 및 위원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기 선임일부터 2020.10.7.까지)
    - 김진환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가나다순. 임기 선임일부터 2020.10.7.까지)
    - 김중환 [공증인가 대전종합 법무법인]
    - 양재환 [임명공증인]
    - 이남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성]
    - 이선희 [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
- 2019.11.6. : 대한공증인협회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결과 보고 / 법무부
- 2019.11.6. :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변경 인가 신청 / 법무부
- 2019.11.8. : 대한공증인협회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결과 안내 / 회원
- 2018.11.8. : 2020년도 장부 조제·인증 신청 안내 / 회원

- 2019.11.12. : 2019년도 제13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UINL 총회 및 제 29차 국제공증인대회 참석 범위 (재)논 의 ② 금융소비자뉴스 칼럼 정정보도 요 청 논의 ③ 초청장 인증업무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방법 제정 논의 ④ 법인이 발행 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업무 처리방법 제정 논의 ⑤ 2022년도 달력(3 단) 제작 및 배포 논의 ⑥ 공증사무에 관 한 유튜브 채널 홍보 논의 ⑦ 특별업무수 당 지급기준 제정 논의 ⑧ 2019년도 일 반회계 예산 중 상임이사회비 항목 금액 변경 승인 ⑨ 공증실무 질의(약속어음 대 리발행인 기재방법, 서울고등법원 사실 조회, 후견계약공정증서 수수료 산정기 준, 자기신탁 공정증서 작성) 회신 논의 ⑩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 도 개선 방안 연구 ⑪ 제3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 개최 논의 ⑫ 공증실무Q&A 자료 검토 및 분류 작업에 따른 업무수당 책정 논의 ⑬ 공증실무 질의(후견계약공정증 서 수수료 산정기준, 자기신탁 공정증서 작성) 회신 논의 ⑭ (계속 논의사항) 공증 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⑮ 기타 (공증문서 관리 프로그램 무상 증여 계약 체결 관련 보고사항 후속 논의 등) 논의
- 2019.11.12. : 인도네시아에서의 미팅 협조요 청 서한 / 이탈리아공증인회
- 2019.11.13. : 2020년도 공증 장부 제공 / 공증업무대행청
- 2019.11.15. : 가칭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지침」 제정 건의 / 법무부
- 2019.11.15. : 질의(약속어음 대리발행인 기재 방법 관련) 회신 / 공증인 ○○○
- 2019.11.15. : 질의(자기신탁 공정증서 작성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19.11.21. : 초청장 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건의 / 법무부
- 2019.11.22. : 몽골공증인회 방문단 협회 내방
- 2019.11.24.~11.30. : UINL 2019년도 정 기총회 겸 제29차 국제공증인대회 참석 / 남상 우 협회장, 이춘희 부협회장, 박형연 국제이사, 안경재 공보이사 등
- 2019.12.4. :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 / 민원인 ○○○
- 2019.12.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 나○○○○○○ 추심금” 사실조회 회신 / 서울 고등법원
- 2019.12.9. : 자카르타에서의 CAAs 운영 합의 사항 CAAs 회원국 전달(Jakarta Agreement CAAs) / CAAs 회원국

- 2019.12.10. : 러시아연방공증인연합회 대표 단 협회 내방
- 2019.12.10. : 2019년도 제14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연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2020년도 장부 제공 여부 논의 ② 국제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논의(안건 철회) ③ 공증실무 질의(후견계약공정증서 수수료 산정기준, 협동조합 총회 의사정족수) 회신 논의 ④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⑤ 기타 논의
- 2019.12.13. : 2020년도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통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2019.12.27. : 질의(후견계약공정증서 수수료 산정기준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

## VII. 2019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 1. 회원 입회 (공증인 임명 및 인가)

- ❖ 공증인 양승원 - 소속 서울서부지검
  - 임명일 : 2019. 1. 1.
  - 임 기 : 2023. 12. 31.까지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2, 201호(공덕동, 삼문빌딩) ☎ 04210
  - 전 화 : 02-701-6060
  - 팩 스 : 02-716-1035
  - 입회일 : 2019. 1. 2.
- ❖ 공증인 이강남 - 소속 부산지검
  - 임명일 : 2019. 1. 1.
  - 임 기 : 2023. 12. 31.까지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3층 (거제동, 위너스빌딩) ☎ 47511
  - 전 화 : 051-507-3331, 502-3331
  - 팩 스 : 051-507-3332
  - 입회일 : 2019. 1. 2.
- ❖ 공증인 진영진 - 소속 제주지검
  - 임명일 : 2019. 1. 1.
  - 임 기 : 2023. 12. 31.까지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남광북5길 6, 2층 (이도2동, 현곡빌딩) ☎ 63223
  - 전 화 : 064-753-0057, 722-1347
  - 팩 스 : 064-721-9596
  - 입회일 : 2019. 1. 2.

❖ 공증인 이승식 - 소속 서울서부지검

- 임명일 : 2019. 1. 1.
- 임 기 : 2023. 12. 31.까지
- 소재지 : 서울 은평구 통일로 827, 202호  
(대조동, 마에스트로빌딩) ☎ 03385
- 전 화 : 02-356-7630
- 팩 스 : 02-356-7631
- 입회일 : 2019. 1. 17.

❖ 공증인 김은호 - 소속 인천지검

- 임명일 : 2019. 2. 1.
- 임 기 : 2024. 1. 31.까지
- 소재지 :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5, 202호  
(구월동, 인텍스빌딩) ☎ 21577
- 전 화 : 032-258-1001
- 팩 스 : 032-258-1007
- 입회일 : 2019. 2. 1.

❖ 공증인 류혜민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9. 2. 1.
- 임 기 : 2024. 1. 31.까지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4길 6, 2  
층 (양재동, 서우빌딩) ☎ 06743
- 전 화 : 02-579-9900
- 팩 스 : 02-579-9901
- 입회일 : 2019. 3. 6.

❖ 공증인 박승욱 - 소속 광주지검

- 임명일 : 2019. 5. 7.
- 임 기 : 2024. 5. 6.까지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정의로 16 (옥암동)  
☎ 58671

- 전 화 : 061-277-5955~6
- 팩 스 : 061-277-5957
- 입회일 : 2019. 6. 17.

❖ 공증인 한수복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9. 7. 29.
- 임 기 : 2024. 7. 28.까지
- 소재지 : 서울 중구 무교로 13, 8층 (무교  
동, 휘닉스빌딩) ☎ 04520
- 전 화 : 02-756-3300
- 팩 스 : 02-756-4300
- 입회일 : 2019. 7. 29.

❖ 공증인 김태계 - 소속 대구지검

- 임명일 : 2019. 7. 29.
- 임 기 : 2024. 7. 28.까지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 17, 201호  
(사동, 세경빌딩) ☎ 38583
- 사무소 : 대구공증인합동사무소
- 전 화 : 053-817-3007
- 팩 스 : 053-817-5008
- 입회일 : 2019. 8. 19.

## 2. 회원 탈회

(공증인 면직 및 인가취소)

❖ 공증인 박종철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2층  
206-1호 (건지동, 대성스카이렉스)

- 탈퇴일 : 2019. 1. 31. 사임원 제출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먼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박영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10층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 탈퇴일 : 2019. 2. 28. 인가취소 신청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황치오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6층 (서초동, 서초프라자)
  - 탈퇴일 : 2019. 5. 1. 인가취소 신청
- ❖ 공증인 이진호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중구 무교로 13, 801호 (무교동, 휘닉스빌딩)
  - 탈퇴일 : 2019. 6. 30. 임기만료(정년)
-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영진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박준오 · 박형수 · 송시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12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탈퇴일 : 2019. 8. 2. 인가취소 신청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양현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김수창 · 최경준 · 최성준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20층 (태평로2가, 부영태평빌딩)
- 탈퇴일 : 2019. 10. 30. 인가취소 신청
- ❖ 공증인 백정현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18길 16, 303호 (북창동, 우성빌딩)
  - 탈퇴일 : 2019. 12. 31. 임기만료(정년)

### 3. 공증사무소 이전

-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웅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1, 2층 (양재동, 양재역환승주차장빌딩) (구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4, 13층 (역삼동, 현죽빌딩)
  - 이전일 : 2019. 2. 18.
- ❖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화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7, 3층 (반포동, 수암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39, 5층 (서초동, 유화빌딩)
  - 이전일 : 2019. 2. 21.
- ❖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신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 7층 (서초동, 정보통신공제조합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5층 (서초동, 양진빌딩)
- 이전일: 2019. 3. 22.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 소 속: 서울동부지검
  - 소재지: (신 주소)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104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구 주소)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108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이전일: 2019. 3. 22.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호
  - 소 속: 서울서부지검
  - 소재지: (신 주소)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7, 609호~619호 (한강로2가, 용산토투밸리)  
(구 주소)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3, 3층 (한강로2가, 석우빌딩)
  - 이전일: 2019. 3. 29.
- ❖ 공증인 황순현 사무소
  - 소 속: 수원지검
  - 소재지: (신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9번길 221 (하동)  
(구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7번길 78, 1층 (원천동)
  - 이전일: 2019. 3. 29.
- ❖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양
  - 소 속: 의정부지검
  - 소재지: (신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8, 202호 (화정동, 장원프라자)  
(구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 701호 (화정동, 새롭프라자)
  - 이전일: 2019. 4. 4.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현
  - 소 속: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신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6층 (서초동, 금화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7층 (서초동, 금화빌딩)
  - 이전일: 2019. 6. 24.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양재
  - 소 속: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신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0, 5층 (역삼동, 상경빌딩)  
(구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8층 (삼성동, 현대타워)
  - 이전일: 2019. 7. 5.
-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이현
  - 소 속: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신 주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2, 7층 (서초동, 재우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04, 3층 (서초동, 코랜드빌딩)
  - 이전일: 2019. 7. 29.

❖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2층 (서초동, 법조타워)  
(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201호 (서초동, 서울빌딩)
- 이전일 : 2019. 8. 30.

❖ 공증인 한수복 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8, 4층 403호 (청진동, 진학회관)  
(구 주소) 서울 중구 무교로 13, 8층 (무교동, 휘닉스빌딩)
- 이전일 : 2019. 8. 31.

❖ 공증인 안경재 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609, 401호 (도곡동, 하늘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4, 206호 (양재동, 양재한신휴플러스)
- 이전일 : 2019. 11. 4.

## 공증과신티 (2020 통권 제13호)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발행인 남 상 우  
발행처 대한공증인협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4, 4층 401호  
(서초동, 서일빌딩)  
전 화 : (02)3477-5007  
팩 스 : (02)3476-5551  
전자우편 : koreanotary@naver.com

디자인 후디자인  
편집 전 화 : (02)2016-9044  
전자우편 : hood6@naver.com

## Notary and Public Faith (Vol. 13. 2020)

Published October 31. 2022  
Publisher NAM Sang-Woo  
Published by Korean Notaries Association  
Address (Seocho-dong, Seo-il Building)  
#401, 104, Banpo-daero, Seocho-gu,  
Seoul, Rep. of Korea  
Tel: +82-2-3477-5007  
Fax: +82-2-3476-5551  
E-mail. koreanotary@naver.com